2019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

2020. 2

대전문화재단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2019 대전예술인복지정책 수립」연구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박 재 묵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7

2절 연구 방법 10
1. 연구 대상 : '예술인 복지'의 개념 10
2. 연구 방법과 절차 16

제2장 국내외 예술인 복지 정책 사례

1절 국내 정책 수립 및 추진 사례 25
1. 중앙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25
2. 지방정부 예술인 복지 정책 50

2절 해외의 예술인 복지 정책 주요 사례 63
1. UNESCO의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 63
2. 국가별 예술인 복지정책 65

제3장 대전지역 예술인의 실태

1절 대전지역 예술인 설문 결과 75
1. 대전지역 예술인 실태 75
2. 대전지역 예비예술인 실태 105

2절 대전 예술인의 정책 요구 120
1. 예술활동과 생활 120
2. 정책에 관한 인식과 요구 123

제4장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1절 대전의 예술인 복지 정책 추진 여건 127

1. 대전의 문화예술활동 조직과 인력 127
2.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한 기반 133
3. SWOT 분석을 통한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 여건 요약 139

2절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 체계 141

1. 예술인 복지 담론의 흐름 141
2. 예술인 권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 143
3. 대전 예술인복지 정책이 가야할 방향 149
4.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152

제5장 예술인 복지 정책 목표별 전략과제

1절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생활 안전망 확보 159

□ 핵심과제 1. 대전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159
□ 핵심과제 2. 대전 예술인의 주거 안정 162
□ 핵심과제 3. 대전 예술인의 건강한 생활 165
□ 핵심과제 4. 대전 예술인의 금융 부담 경감 168
□ 핵심과제 5. 대전 예술인의 자녀 안심 돌봄 172
□ 핵심과제 6. 대전형 예술인 기본소득제 174

2절 예술인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예술복지 증진 176

□ 핵심과제 1. 대전 예술인 연결망 촉진 176
□ 핵심과제 2. 대전 예술인의 문화 복지 증대 180
□ 핵심과제 3. 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지원 184
□ 핵심과제 4. 대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성 지원 186
□ 핵심과제 5. 예술인 공동체의 자구 노력 지원 189
□ 핵심과제 6. 「대전 예술인 권리 장전」 선포 192

제6장 정책 실행 방안

1절 정책 추진의 선결 과제 195

1. 정책 대상의 설정 195

2. 추진체계 200

2절 추진 단계와 투자계획 206

1. 사업별 추진 단계 206

2. 투자 계획 209

부 록

예술인 복지관련 법규 213

□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213

□ 예술인 복지법 215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26

참고문헌 235

표 차례

표 1-1. 예술인 복지법 3
표 1-2.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7
표 1-3. 서베이 설문조사 16
표 1-4. 예술인 심층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19
표 1-5. 예술인 심층인터뷰 응답자 19
표 2-1.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주요 예술인 복지정책 29
표 2-2, 재단의 비전 및 목표 32
표 2-3.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 34
표 2-4. 지역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35
표 2-5. 지역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36
표 2-6.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37
표 2-7. 2019년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지역별 현황 38
표 2-8. 예술인 복지법안 비교 41
표 2-9. 지역 예술인복지 조례 제정현황 50
표 2-10. 광역단위 지자체 문화재단 현황 52
표 2-11. 2020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56
표 2-12. 부산광역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57
표 3-1. 수입에 대한 만족도 83
표 4-1. 대전 지역 문화예술단체 현황자료 127
표 4-2. 시립예술단 및 국악연주단 현황 128
표 4-3. 시립예술단 연도별 공연 활동 현황 128
표 4-4. 특 · 광역시 예술활동 조직 129
표 4-5. 대전시 소재 일반대학 · 전문대학 문화예술관련 학과 현황 129
표 4-6.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131
표 4-7.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132
표 4-8. 연령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132
표 4-9.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담당업무 135
표 4-10. 대전문화재단의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인 창작권 · 활동권 보장 사업 137
표 4-11.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분석 139
표 4-12. Cross-Swot 분석을 통한 주요 추진전략 도출 140
표 4-13. 문화예술 부문 노동단체 현황 145

표 6-1. 분야별 예술인 인정 기준 197
표 6-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연계 협력 제안 내용 202
표 6-3. 사업별 추진 주체 204
표 6-4. 사업별 · 단계별 추진전략 207
표 6-5. 사업별 예상 소요 예산 210

그림 차례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 절차 21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안전망 예산 추이 31
그림 2-2, 창작안전망 예산의 구성 (2019년) 31
그림 2-3. 연도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예산 추이 33
그림 2-4. 예술인 복지재단 2018년 총수입 현황 33
그림 2-5. 예술인 복지재단 2018년 총지출 현황 33
그림 2-6.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누적 추이 34
그림 2-7. 예술인 산재보험 신청절차 37
그림 2-8. 예술인 복지지원 체계 51
그림 2-9. 광역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비중(2014) 53
그림 2-10. 광역문화재단 자체 예산(자립도) 비중(2018) 53
그림 2-11. 서울예술인플랜 54
그림 2-12.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조직 편성 58
그림 2-13.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좌)와 경남예술인복지센터(우) 내부 모습 58
그림 2-14.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조직 편성 59
그림 2-15. 전북예술인특례보증지원사업 60
그림 2-16. 문화예술 창작융자 지원사업 61
그림 2-17.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61
그림 2-18. 스톡홀름현대미술관의 지역예술대학 협력 전시전 68
그림 2-19. 핀란드 예술지원센터 조직 구성 69
그림 2-20. 핀란드의 문화예술 지원구조 70
그림 3-1. 현재 활동 예술 분야 75
그림 3-2. 주로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유형 76
그림 3-3. 2018년 주 활동분야 참여 횟수 76
그림 3-4. 2018년 주활동분야 참여 일수 77
그림 3-5. 소속단체 77
그림 3-6. 2018년 기준 활동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경험여부 78
그림 3-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국가공인) 취득 여부 78
그림 3-8.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여부 79
그림 3-9. 개인 창작공간(작업실) 보유여부 79
그림 3-10. 거주자 유형 80

그림 3-11. 거주 유형 80
그림 3-12. 거주 조건 81
그림 3-13. 월평균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 비교 81
그림 3-14. 월 개인소득에서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82
그림 3-15. (2018년 기준)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 82
그림 3-16.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 충당 경로 83
그림 3-17. 부채 여부 84
그림 3-18. 부채의 주요 원인 84
그림 3-19. 소비생활 중 부담이 큰 항목 85
그림 3-20. 4대 보험 가입자 비율 86
그림 3-21. 실업, 상해, 경력단절의 경험 87
그림 3-22. 업무상 상해 경험시 처리방식 87
그림 3-23. 경력단절경험의 주된 요인 88
그림 3-2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88
그림 3-25.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89
그림 3-26. 요즘 느끼는 걱정거리 90
그림 3-27. 문화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 90
그림 3-28.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91
그림 3-29. 현재 건강상태 91
그림 3-30.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 92
그림 3-31. 건강 악화로 작업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 92
그림 3-32. 미방문 또는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시 이유 93
그림 3-33. (2018년 기준) 의료기관 지출 의료비 부담 정도 93
그림 3-34. 전업 예술인으로 예술분야 종사여부 94
그림 3-35.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 94
그림 3-36.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경우)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 95
그림 3-37. 예술활동 외 다른 일 경험여부 95
그림 3-38. (2018년 기준)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여부 96
그림 3-39. 문체부 개발/권장 표준계약서양식인지여부 96
그림 3-4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인지여부 97
그림 3-41. 예술활동 과정에서 부당대우 경험 97

그림 3-42.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98
그림 3-43. 국내 예술계의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 조치를 위한 제도 평가 98
그림 3-44.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 실태 99
그림 3-45. 예술계 내부의 여성차별 실태 99
그림 3-46.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100
그림 3-4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 인지여부 100
그림 3-48. 예술활동증명 신청여부 101
그림 3-49. 예술활동증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101
그림 3-50. 예술인복지지원사업 신청/수혜 비율 102
그림 3-51. 지원사업 미참여 이유 103
그림 3-52.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103
그림 3-53.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시 역점 정책 104
그림 3-54. 예술활동지원사업 진행기관 인지 여부 104
그림 3-55. 전공 관련 교과목 수강학점 105
그림 3-56.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수강여부 105
그림 3-57.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개설필요성 106
그림 3-58.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수강목적 106
그림 3-59. 향후 진로 · 취업 관련 교과목의 필요정도 107
그림 3-60.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 지속 의사 107
그림 3-61. 거주자 유형 108
그림 3-62. 거주 유형 108
그림 3-63. 거주 조건 109
그림 3-64. 부채(빚) 여부 109
그림 3-65. 부채의 주요 원인 110
그림 3-66. 전반적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 110
그림 3-67. 여가활동 비교 111
그림 3-68.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112
그림 3-69. 현재 건강상태 113
그림 3-70.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 113
그림 3-71. 최근 1년 사이 건강 악화로 학업에 차질을 받은 경험 114
그림 3-72.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 요건 114
그림 3-73. 예술활동증명 신청여부 115

그림 3-74.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115
그림 3-75. 예술계 내부 성폭력 문제 평가 116
그림 3-76. 예술계 내부 여성차별 문제 평가 116
그림 3-7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피해신고/상담 지원센터 인지여부 117
그림 3-78.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117
그림 3-79.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118
그림 3-80.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시 역점정책 118
그림 3-81.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사업 119
그림 4-1.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130
그림 4-2.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131
그림 4-3. 문화예술노동연대 기자회견 모습 145
그림 4-4. 예대넷(예술대학생 네트워크) 로고 146
그림 4-5. 부천 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위원회 147
그림 4-6.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리스트 규탄 집회 148
그림 4-7. 예술인생활안전망의 핵심요소 153
그림 4-8. 예술인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요소 153
그림 4-9. 2019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비전 체계 155
그림 5-1. 2015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161
그림 5-2. 서울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막큡 163
그림 5-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166
그림 5-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소개 169
그림 5-5. 운영사례 : 반디돌봄센터(좌),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우) 173
그림 5-6. '국민기본소득제' 손익계산기(LAB2050 제안) 174
그림 5-7. 예술인 공동체 활성화의 개념도 176
그림 5-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패스카드 180
그림 5-9. 경기도 일산의 아르코(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력개발원 182
그림 5-10. 대구시의 게스트하우스 '공감' 182
그림 5-11.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 190
그림 5-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사업 191
그림 5-13. 건설근로자공제회 192
그림 6-1. 예술인복지사업의 정책 실행 단위 200
그림 6-2. 대전예술인복지협의체 구성 방안 205

제1장

연구 개요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절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1) 예술인 복지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의 확산

(1)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 시행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됨

-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은 예술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예술인 복지정책들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어 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 예술인 사회보장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 법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적으로 예술인복지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

표 1-1. 예술인 복지법

법령명	예술인복지법
제4조 (기본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 새 예술정책(2018-2022)의 예술인 복지 강조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과 함께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발표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사과하면서 새롭게 제안된 '새 예술정책'은 ①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②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③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④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⑤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 ⑥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⑦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⑧예술의 미래 가치 확장이라는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에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 기조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하고 있음

① 예술인 직업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

- 예술인 직업환경 및 복지 실태조사 강화 : 실제 정책대상으로서의 예술인 직업 · 직무 조사, 직업으로서의 객관적 지위 확보

- 예술인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인문 · 노동 교육

- 현장 예술인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 협 · 단체를 통한 현장예술인 맞춤형 교육지원,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 예술인 파견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재구조화 : 공유가치 생산 플랫폼 기능 강화, 사업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관리 체계, 예술인-공공서비스 간 파트너십 확대, 지역 · 분야별 자발적 결연과 협업 지원 시스템

②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 : 프로젝트 단위 활동 프리랜서 예술인 특성 반영

- 산재 · 사회보험 가입률 향상 및 실효성 제고 : 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대상 높은 수준의 보험료 지원

-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접근성 강화 : 사회보험가입, 직업교육, 예술금융, 권리구제 등 원스톱 지원

③ 예술인 생활 지원 확대

(1)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으로 예술인 생활 지원 : 긴급생활자금 대출 실시, 안정화단계 후 주택자금 대출로 확대, 금고운영 인적 · 물적기반 구축

(2) 문화예술인 패스 개편으로 맞춤형 혜택 제공

(3) 창작활동 스트레스 완화 및 창작의욕 고취

(4) 경력단절 방지 및 지속적 창작환경 조성

(5) 예술인 의료비 부담 경감

(6) 예술인의 창작 · 주거 연계 확산을 지원

2) 지역의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 대두

-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전국 단위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현실이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탓에 지역 예술가의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은 원천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님

- 지역 예술인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작은 규모의 문화예술생태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술활동의 기회도 적고 예술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입도 낮아 생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사회 곳곳에서 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전문 직업군에 대한 복지 증진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들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예술인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정책방안이 추진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대전광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전의 문화예술 현장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단기 · 중기 정책 사업의 기획이 절실히 필요

-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2018년 대전문화예술정책토론광장에서는 대전예술인들의 실태에 관한 모둠토론이 펼쳐졌으며, 이 과정에서 〈새 예술정책〉에서 제안한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을 검토됨
  - 모둠 토의 결과 대전예술인 실태조사와 대전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이 우선 과제로 강하게 요청되었고, 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광역시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대전문화재단과 함께 2019 대전예술인 실태조사와 2019 대전예술인복지정책 수립 연구 발주를 추진하게 됨

※ 제4회 문화예술정책토론광장(2018.07.27.) 모둠토론 도출 내용

•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제안된 사항

- 강의교육기관 통합운영
- 예술장르별 맞춤형 산재보험제도 도입
- 예술인복지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 맞춤형 어플(키워드검색기능)
- 생계지원 및 기본수당 지급
- 예술인 복지카드 도입
- 패스카드 지원범위 확대(주차비, 입장료 등)
- 예술인 복지카드 기능 결합
- 예술인 건강돌봄(건강검진 등)

•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포괄적 제안

-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필요
- 예술인 특별 주택공급제도 도입
- 예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적 사안에 대한 자문 및 도움
- 문화예술인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법적 강제성 부여
- 예술인복지정책을 전문기관에서 전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술인복지예산 확대

• 토론광장 참여자가 느끼는 정책 중요도

- 1순위: 예술인 직업 환경 및 복지 실태조사 강화
- 2순위: 생계지원 및 기본수당 지급
- 3순위: (가칭)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접근성 강화

2. 연구 목적

1) 연구의 법적 근거

-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에서는 제3조, 제4조, 제9조에서 예술인 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 추진과 실태조사, 복지증진 사업의 전개를 위한 수요 파악 등을 명시하고 있음

표 1-2.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명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3년마다 전국 단위의 예술인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단위로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대전지역 예술인들의 현실을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1)]
  - 따라서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거한 자체적인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큼

1)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실태조사는 2015년과 2018년에 이뤄졌는데 전체 표본은 5,000여 명으로, 2018년의 경우 대전에 215명의 표본이 할당되어 본 조사와 규모상 큰 차이가 있음. 또한 조사된 자료의 분석에서도 강원과 충청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합산했기 때문에 대전지역 예술인만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2) 연구의 목적

-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지속성과 수준 향상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과업의 중요한 목적임
  - 아울러 대전 예술인들의 복지 및 활동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전형 예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적임

3)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전역(5개 구 79개 행정동) 〈면적: 539.35㎢〉
  - 대전 근교(세종특별자치시와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충북 옥천군)에 거주하되 주요 문화예술활동 지역이 대전인 경우도 연구 대상에 포함

(2) 시간적 범위

- 과업수행기간 : 7개월(2019.8.1.~2020.2.28)
- 조사범위 : 2019년 연구 진행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 정책범위 : 2019년 연구 진행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4) 주요 연구 내용

(1)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여건과 사례 분석

-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국내 예술인 복지정책 동향 분석
- 국내 · 외 예술인 복지정책 선진 사례 제시 및 동향 분석
- 국내 주요 지자체별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조사 · 분석

(2) 대전시 예술인 실태조사

- 대전지역 예술인들의 활동과 생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대전지역 예술인들의 실태에 관한 심층면담 결과 분석
- 대전지역 예비예술인들의 실태 조사 결과 분석

(3)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체계와 전략과제 제안

- 예술인복지 정책 사례와 실태 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의 미션과 비전 도출
- 대전형 예술인 복지 정책의 모델과 세부실천과제 개발

(4)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세부 실행 방안 제안

- 수립된 정책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제시
-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실행 로드맵 제시

제2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 '예술인 복지'의 개념

1) 예술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전통적 규정

(1) 학술적 · 일반적 정의

- 핀란드에서 오랫동안 예술가 지위에 대해 연구해 온 사리 카투넨(Sari Karttunen)도 예술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소개한 글에서 예술가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보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예술가를 정의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심지어는 정치적이기조차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선택된 정의가 가져올 치우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뿐임(Sari Karttunen, 1998:16-17; 박영정, 2012에서 재인용)
  -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통해 예술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자기 정의와 타인의 정의, 질적 기준과 양적 기준, 직업 기준과 산업 기준 등이 활용되고 있음(양종회, 2005; 박영정, 2012에서 재인용)

- "예술인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예술인의 지위는 사회적이다. 예술인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그 지위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이동연, 2018)"라는 서술은 이처럼 가변적이고 맥락적인 '예술인 지위' 규정을 보여줌

- 실질적으로 본 연구를 비롯한 예술인의 복지에 관한 논의 속에서 예술인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술인의 지위에 대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권리와 처우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문제임

(2) '예술인'에 관한 법적 · 제도적 · 정책적 정의

- 예술인 복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대부분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서의 "예술인"에 관한 정의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문화예술"의 범위를 따르고 있음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정의) 제2항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6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호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2013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에서도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예술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문화 예술의 범위가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최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극, 영화, 연예 등의 분야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이는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 예술의 정의는 시대와 해당사회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국내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예술인 복지법의 정의를 선택하고 있으며, 지역의 조례나 정책 제정 과정에서도 대부분 예술인 복지법의 정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예술인복지'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부산광역시는 정책보고서에서 예술인복지를 "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 특별히 규정함

• 국제기구 및 국제법상의 정의

- 1980년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이파카(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and Culture Agencies)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예술 정책 보고서 「세금 및 급여관련 예술인 정의」에서는 전문 예술인에 대한 실용적 정의로서 국제 공통의 접근방식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안(박영정, 2012에서 재인용)

① 멤버십을 통한 정의(Definition through membership)

공인된 예술인 협회(예, 전문예술가협회)의 멤버십을 통해 예술인을 정의하는 경우. 1992년 발효된 캐나다의 '예술인 지위 법'(제18조)에서 독립 예술인의 직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예술인협회에의 가입 여부이다.

② 위원회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committee)

전문가나 동료 예술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예술인으로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경우.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예술인의 소득 규정에 관한 법'을 적용 받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에 관해 결정하며, 멕시코에서는 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현금 대신 예술 작품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제도에 적용되는 예술인의 자격을 결정하고 있다.

③ 당국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authority)

세무 당국이 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아일랜드의 예술인 면세 제도에서는 세무당국이 예술인의 자격을 결정한다.

④ 예술적 산출물(작품)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association with artistic output)

예술 작품, 저작물 등 예술적 활동의 산출물에 의해 예술인을 정의하는 경우. 이 경우 예술인이란 예술(예술작품, 저작물 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의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연예술인보다는 창작예술인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⑤ 예술 활동의 본성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the nature of arts activity)

예술인에 의해 수행되는 예술적 활동이 '비즈니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되었을 때, 직업적인 예술가로 간주하는 경우. 이 경우 중요한 판단은 예술 활동의 목적이 영리 획득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었는지 하는 것들이다

(3) '예술인 복지'에 관한 법적 · 제도적 · 정책적 정의

- 예술인 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예술인 복지법' 제3조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정하고 있음

- 예술인이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예술인복지법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 · 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한편 2019년 김영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보다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음

>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 ①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 ③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
> ④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통적 개념 규정의 난점

(1) 주요 쟁점

• 예술인의 개념과 범위 설정을 위한 쟁점사항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전업 예술인과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생활 예술인의 구분 기준이 모호함. 생활 예술은 비전문가의 문화 예술활동으로 최근 그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건축 등 장르의 특성이 다름. 이에 따른 편차를 어떻게 고려할 것이며, 각기 다른 장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술인들의 장르, 환경이 다양하고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책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어느 범위까지를 예술인의 예술활동으로 볼 것인지 또한 쟁점 사항임

(2) 예술인 복지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입법 목적과 대상 및 법률 명칭에 관한 문제

- 현재의 예술인 복지법상의 정의는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범주를 한정시켜, 예술교육분야나 예비예술인 등의 법의 테두리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예술인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두고 예술인 복지법 제정 시에도 많은 논쟁이 존재하였음
- 관련하여 현재 계류 중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서는 예술인의 범주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예술인의 범주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음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2항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단체(이하 "예술 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예술인으로부터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다. 예술 활동을 위하여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창작물의 발표 또는 실연활동의 기회를 찾는 사람

• 예술의 특수성과 가치에 대한 고려 부족

- 한편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가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가가 지닌 사회적 특수성에 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예술가에 대한 복지가 단순히 특정 집단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법제상에서 규정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세계 최초로 법률을 통해 예술과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앞서 거론되었던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3)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

• 예술활동의 노동으로서의 재해석

- 근대 이후 시장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사회경제구조의 근간이 되면서, 임금노동을 통한 가치의 생산과 생계의 유지가 일반화되었고, 자연히 사회보장시스템 역시, 임금노동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왔음
- 반면 예술노동은 이러한 흐름과 궤적을 달리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은 창조적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창작활동 과정에 투여되는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차적으로 치부되어 왔음. 그 결과 많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사회보장제도의 권리로부터 소외되어 왔음
- 최근 예술계 내외부적으로 예술노동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과 논쟁이 전개 중에 있으며, 이는 예술활동의 노동으로서의 인정과 노동자성은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에 긴밀하게 관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예술활동에 주목하고 이를 강조하고자 함

• 수혜에서 권리로

- 오랜 기간 복지는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수혜의 개념으로 여겨져 왔음. 그러나 오늘날 복지는 인간으로서 당위적으로 누려야할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새롭게 이해되고 있음
- 예술인 복지 역시 가난한 예술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수혜가 아닌 예술인과 예술인의 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 이해되어야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 복지를 단순히 예술인에 대한 수혜가 아닌 예술과 예술인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지위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예술인복지 개념에 접근하고자 함

• 문화예술지원정책 또는 문화 복지 정책과 예술인 복지의 구분

그간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에 대부분의 무게가 실려 있었으며, 예술인 창작지원과 예술인복지개념이 혼재되어 집행되어 왔음. 그러나 예술인복지는 자연인으로서 예술인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며, 따라서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예술인복지정책은 구분되어야 함

또한 문화 복지 정책 개념과도 용어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엄밀히 문화 복지 정책은 문화의 수요층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공급자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복지정책과 다른 개념임. 문화 복지 정책이 저소득층, 노년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문화향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이라면, 예술인복지정책은 일반적인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고위험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임(부산문화재단, 2018)

2.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 방법

(1) 서베이 설문 조사

- 통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적의 표본설계방법 수행
  - 표본 설계 방법의 대표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계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참여 수행
  - 17개 분야를 균등하게 배분하려 노력

표 1-3. 서베이 설문조사

구분	내용
조사방법	예술인: 조사표(설문지)를 통한 1:1 개별 면접조사 *사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 섭외 후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음 예비예술인: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함
조사지역	대전광역시
조사대상	- (예술인)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예비예술인) 문화예술분야 관련 대학 또는 학과 졸업예정자
표본크기	유효표본 총 922명 (예술인 572명, 예비예술인 350명)
모집단 층화	장르별 비례층화(안)
표본추출	다단계 층화추출법과 눈덩이 표집을 혼합 적용(안)

① 조사 설계

- 조사지역과 대상 설정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접지역 거주자로서, 대전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 예비예술인
  - 전문예술인 :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예비예술인 : 문화예술분야 관련 대학 또는 학과 졸업예정자
- 예술인의 범위 : 생활예술인 배제,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 표본크기 설정 : 유효표본 총 1,000명 내외를 목표로 하였음
- 설문지 작성 : 한 달 동안 문화재단, 시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설문문항 하나하나 검토하였음. 예술인 복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시계열 자료 구축이 가능하며,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반영 가능한 설문지 설계 및 작성

② 표본 확보

- 대전지역 예술협회의 협조를 얻어 예술분야별로 모집단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표본 추출
- 예술장르별 다단계 층화추출법과 눈덩이 표집을 혼합 적용

③ 설문조사 진행

- 조사원 교육
- 파일럿조사(사전테스트) : 예술인과 예비예술인 분야별 할당하여 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설문과정에서 파생하는 변수들을 고려
- 본조사
  - 예술인 : 인쇄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 면접조사*

* 사전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 섭외 후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음

  - 예비예술인 : 온라인 조사를 기본으로 함

④ 결과 분석

- 922명의 유효표본 확보
- 기초데이터 코딩
- 데이터 가공(데이터 클리닝 등) 후 통계프로그램에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
-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모수 추정 후 데이터 분석
- 시정운영 방향을 따르고 정책의 구체적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해당 국, 부서, 해당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침
- 공청회 성격의 해커톤 등 지역 문화예술인 및 시민 의견 수렴
- 정부 예술인 복지 정책의 방향과 조사결과를 통한 대전의 예술인 복지 실태를 반영하여 대전형 예술인 복지정책 제안

※ 서베이 설문조사의 특성

서베이(survey)란 미리 구조화되어 있는 설문지나 면접을 통하여 사회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임. 서베이의 목적은 어떤 모집단을 대표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대규모 응답자들을 통하여 정보를 구하는데 있음

서베이 설문조사는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고, 많은 양의 자료를 비교적 손쉽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많은 변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다양한 통계방법을 이용해 분석이 가능

다만, 서베이 설문조사는 독립변인의 변화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가 인과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엄밀하게 확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님. 따라서 통계적 결과에 매몰되어 모든 원인과 결과를 환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심층 인터뷰

- 면담기간 : 2019년 10월 ~ 12월

- 면담대상 : 예술 분야별 2명 이상으로 면담 대상을 선정하여 예술인 16명, 예비예술인 4명에게 면담 완료

- 면담방법 : 조사원들이 최소한의 질문들로 면접을 진행하되, 응답자의 생각을 깊고 풍부하게 알 수 있도록 면접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연구 문제와 일관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질문하는 형태인 반 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활용

- 면담내용 : 예술인 복지 정책 사업에 대한 의식 및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질문

※ 심층 인터뷰의 특성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는 면접자가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나 순서는 사전에 정한 바가 없는 면접자와 응답자 간의 상호작용적인 대화임(Holland & Ramazanoglu, 1994)

심층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을 이용하지만 긴 시간을 소요하여 응답자가 왜 그런 답변을 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배경까지도 알 수 있으며, 상세한 대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나아가 전통적인 서베이 방법과는 달리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더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음

그러나 심층 인터뷰는 표집이 무작위로 이뤄지지도 않고 적은 수의 표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따르며 자료 분석의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목적이 대전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는 심층 인터뷰 방법을 도입하였음

표 1-4. 예술인 심층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주요 질문 내용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공통	• 예술활동 · 경력단절과 관련한 경험과 인식 • 예술 작업과 일자리, 생계유지에 대한 경험과 관점 • 예술활동 외의 일자리를 위한 계획과 경험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공통	•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 • 예술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감에 대한 인식 • 예술계 내부 인맥 중심 관행 경험 여부와 관련 문제 인식 • 예술 분야 계약 문제 관련 경험과 계약서 개선사항
		예비 예술인	• 교내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
예술인 복지 및 지원 사업		공통	• 예술활동 작업공간 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문제점 • 대전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제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활동증명 관련 인식
예술 대학 교육과정		예비 예술인	• 예술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제언 • 예술 대학 내 교외 현장 활동과 관련한 경험과 인식
지역 문화예술계 인식 전반	예술관과 자기 인식	공통	• 예술가로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 예술가로서의 고민 •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화 및 활동 지속 의지 • 예술가로서의 향후 계획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인식	공통	• 지역 문화예술계와 관련한 경험 및 인식 • 지역 예술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험 및 관점

표 1-5. 예술인 심층인터뷰 응답자

구분	이름	분야	성별
예술인	○혜○	무용	여
	○순○	문학	여
	○나○	평면	여
	○진○	음악	여
	○지○	만화	여
	○한○	문학	여
	○다○	영상	여
	○연○	문학	남
	○○혜	설치	여
	○채○	연극	여
	○강○	대중음악	남
	○정○	평면	남
	○중○	문학	남
	○영○	디자인	남
	○○재	만화	남
	○남○	디자인	남
예비 예술인	○재○	디자인	여
	○민○	문학	여
	○소○	음악	여
	○규○	평면	남

(3)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 본 연구에서는 이 밖에도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다른 지역의 예술인복지정책 현황을 살펴봄

• 기존에 진행된 예술인복지 정책 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계획을 검토
  – 중앙정부의 예술인 복지 정책 흐름을 정리하고, 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담론의 추이를 분석 정리

• 온라인 조사와 현지 탐방을 통해 국내와 국외의 예술인 복지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여건 분석
  – 대전의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 사업 추진 조직 체계를 검토하고,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 현황 파악

※ 사례 연구

사례연구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유사한 상황이나 사례를 찾아 심층분석"하는 조사방법이다(채서일, 2002).

– 사례연구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과 사전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유추를 하는 데 도움을 줌(채서일, 2002). 특히, 연구하는 시점에 연구 대상의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사례연구는 매우 유용한 방법임
– 사례연구자는 조사 중인 특정 사례에 대한 '사례기술적(idiographic)' 이해를 추구할 수 있으며,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인반적이면서 '법칙정립적(nomothetic)'이론을 개발할 수 있음(Earl Babbie, 2014).
– 다만, 사례조사는 규명과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 결과가 결정적이지는 않으며 시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임.
– 사례 기술적인 이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 · 외 예술인 복지정책'의 우수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4) 전문가 워킹그룹 및 자문회의

• 문화 예술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차례의 자문회의 진행

• 형식적 문답이 오고가는 일반적 자문회의에서 탈피하고, 연속된 형태로 점차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워킹그룹 형태로 진행

• 서베이 설문과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비전체계와 전략사업 도출

• 복지정책의 전 세계 최고 선진지라 할 수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정책 관계자를 면담하여 그 나라의 예술인 지원 정책에 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와 대전의 상황을 설명하며 현실적인 맥락에서의 정책 조언을 청취

핀란드 예술지원센터 자문

스웨덴 한국연구재단 사무소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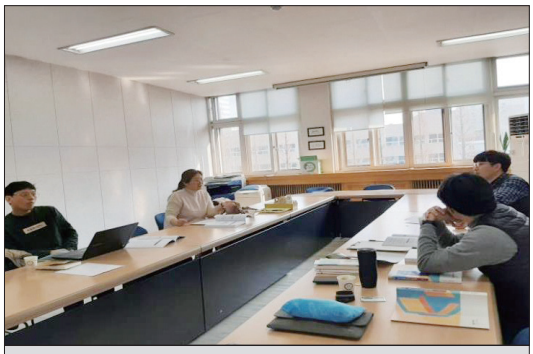

워킹그룹 자문회의

발주처-연구진 실무회의

2) 연구 절차

• 본 연구는 대전문화재단, 대전광역시 예술인복지정책 관련자들과 상호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전체적인 과업수행은 환류체계(Feedback system)를 구축하여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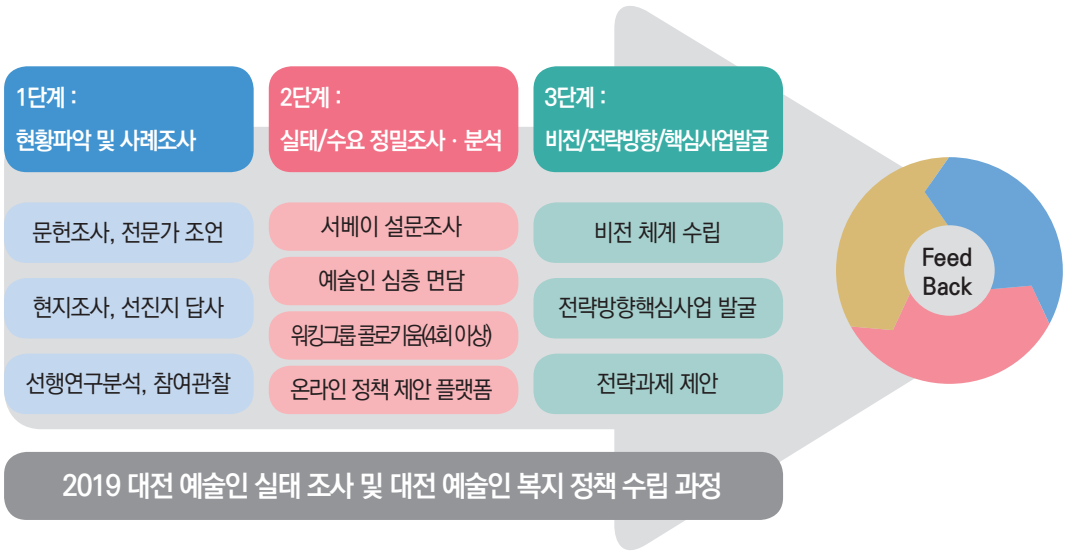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 절차

• (1단계) 현황파악과 사례조사 : 예술인 복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론 검토(문헌조사, 전문가 조언),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사례 분석(현지조사, 선진지 답사), 예술인 복지 정책 사업 성과분석(범주별 유목화한 자료분석, 참여관찰), 선행 연구 자료를 통한 예술인 실태의 일반적 경향 조사

• (2단계) 대전시 예술인 복지 실태와 수요에 대한 정밀 조사 · 분석 : 예술인 복지 실태에 관한 서베이 설문조사, 예술인 심층면담, 예술인 복지에 관련된 영역을 세분화하여 전문가들(4~6인)을 초빙해 이슈분야별 집중화된 워킹그룹회의 형식의 콜로키움 개최(4회), 대전광역시 온라인 시민소통 창구 '대전시소' 등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의 의견 수렴

• (3단계) 비전체계 수립과 전략방향 · 핵심사업 발굴 · 실행방안 제시 : 현황조사와 서베이 실태조사, 예술인 심층면담, 전문가 콜로키움 결과를 바탕으로 SWOT분석과 비전체계 설정, 전략방향과 전략과제 제안

착수보고회(2019.7.29.)

1차 중간보고(2019.11.8.)

2차 중간보고(2020.2.4.)

최종보고회(2020.2.26.)

제2장

국내외 예술인 복지 정책 사례

1절 국내 정책 수립 및 추진 사례
2절 해외의 예술인 복지 정책 주요 사례

제1절

국내 정책 수립 및 추진 사례

1. 중앙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1) 중앙 정부 예술인 복지정책

(1) 해방 이후부터 군사정권 시기(1945-1991)

-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같은 근대사의 굴곡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음
  - 이승만 정부 시기, 1952년 문화보호법이 제정되고, 1954년 예술원 개원 등의 활동이 있었음
  - 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 및 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혜택이 소수의 예술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지난 역사 속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여준 바 있음

- 국내에서 예술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년 문화예술정책을 관장하는 문화공보부의 발족 및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문화예술은 사회통합의 매개로서 그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전담 부처인 문화공보부가 만들어지고,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설치되고, 이를 지원하는 기구로서 문화예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신)이 설립되었음
  - 이후 2차에 걸쳐 '문예진흥계획'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전통문화 및 문화재 등의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었음

- 이 시기엔 창작진흥형 사업이 비중이 높았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예술 소비에 대한 대중적 수요나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여건과 기반의 부족과 연계되어 해석할 수 있음

- 전두환 및 노태우 군사정부 시기 역시 문화예술을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박정희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박정희 정부가 전통문화계승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의 확대를 우선적 과제로 삼았음

-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문화시설들이 조성되었으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
-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예술관련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1990년에는 문화공보부가 공보처와 문화부로 분리되면서 최초로 문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부처가 탄생하였음

(2) 김영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 시기(1992-2002)

-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지원정책은 과거의 통제와 검열 중심에서 벗어나 기초예술진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술의 산업화라는 화두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음
  - 한편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하였고, 관광 분야의 업무 또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는 개편이 이뤄짐

- 이어진 김대중 정부 역시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복지의 강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음
  - 문화체육부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부를 신설하였으며, 2000년 이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처음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문화예산은 증대되었음[2)]
  -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문화산업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한편 2002년 순수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은 순수예술에 대한 국고지원비중 강화,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 스튜디오 등 창작 여건 조성, 문화유통체계 활성화 및 지원 육성 등의 내용과 더불어 문화예술인의 문화생산비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적 과제로서 문화예술인의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와 같은 예술인 복지 논의를 포함하고 있음

- 김대중 정부 문화예술 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문화행정의 초점은 국가가 주도 관리하던 구조에서 시장의 자율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에 맞춰져 있었음
  - 이는 문화영역의 민주화와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휘몰아친 신자유주의적 시장체제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줌

2) 예산대비 1%를 문화 선진국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평가하지만,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예술진흥을 중심으로 예산이 구성된 반면, 한국의 경우는 해당 예산을 문화,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서 나눠 사용해야 하기에 선진국들의 예술진흥부문(예술인 복지를 포함한)의 예산에 비해 여전히 예산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노무현 정부(2003-2007)

• 2004년 발표된 정책보고서인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예술의 힘〉은 14대 과제 중 하나로 "예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고, 예술인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에 노력한다"라는 슬로건 하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및 '예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추진' 내용을 포함하면서 예술인 복지를 예술정책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공식화하게 됨

• 그동안 문화예술정책에서 예술인의 복지는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혹은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차적 요소로서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이뤄져 왔다면, "예술인 복지" 자체를 정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시점은 노무현 정부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관련하여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제도적 실천으로 예술인 복지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참여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자율과 참여는 정부의 문화 정책의 중요한 가치였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임
  - 이는 예술지원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니며, 이에 따라 예술지원의 결정 과정에 현장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하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2004년부터 모금이 중지되었고, 이에 따른 기금 확보의 문제가 대두

• 한편 문화예술교육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위해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함
  - 이를 통해 발생된 예술강사는 예술인들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는 맥락에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복지의 역할과 더불어 공급자인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복지와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이며, 그 처우 수준과 안정성을 둘러싸고 문제와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

• 이외에도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장하는 위원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영향평가제와 같은 문화적 가치를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가 추진되기도 하였음

(4) 이명박 정부 (2008-2012)

• '창조적 실용주의'를 규범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비전 2008-2012'를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삼고 있음. 예술지원정책은 이전의 노무현 정부와 상반되는 변화를 보여줌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정규모의 다액소건의 지원, 단체중심, 사후지원,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직접적

인 창작지원보다는 예술공간운영지원이나 임차 보증금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등의 정책 전환을 보여줌

• 한편 생활 속 예술 지원을 강조하면서, 수요자가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을 구축하고, 지역과의 협력 사업을 보다 확장하고, 지역재단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현지밀착형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음

• 예술인 복지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려는 방안이 추진되었음
  - 일련의 연구를 통해 공제회의 설립 방안 및 세부 운영사업 등이 설계되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진행되었으나 타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예술인들의 근로자 지위부여 문제, 공제회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이견 등 부처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무산됨

• 한편 2011년 국회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되었고, 12년 시행령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음
  -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은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치 등의 구체적인 실행은 다음 정부에서 진행되었음

(5) 박근혜 정부 (2013-2016)

•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문화융성'을 국정 전면에 내세웠으며, 문화재정 2%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는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선언했었음. 국정과제의 문화부문 추진전략으로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을 제시하면서 세부 국정과제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중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비롯한 예술인 창작망 구축,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조성, 문화예술진흥기금 마련, 비영리 문화법인제도 도입,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이 있음

• 예술인 복지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고, 관련하여 사회보장체계로서 예술인 복지정책은 예술인들을 만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진척을 보이지 않았음
  - 더욱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사태는 정부에 대한 예술인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고, 예술정책 및 문체부 등의 주요 기구의 신뢰상실로 이어짐

• 한편 문화융성 사업의 일환으로 문예진흥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위기를 초래함

(6) 문재인 정부 (2017~)

• 박근혜 정부의 탄핵 이후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를 통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국정운영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예술인 권익보장,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표준

계약서 의무화 및 개발보급,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시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한편 2018년 중장기 문화정책으로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였음. 내용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기치로 3대 방향과 9대 의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번째 의제인 '문화예술인 · 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은 통해 예술인 복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을 목표로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제도와 의료지원정책 마련, 예술인고용보험 도입과 예술인복지센터 개소, 범정부 차원의 예술인복지 정책 활성화, 예술인 창작주거 연계 복지 확산, (가칭)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 개선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

• 이런 다양한 정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문제의 미흡,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미실현 등은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음

2) 문화예술관광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집행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복지금고,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의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음

표 2-1.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주요 예술인 복지정책

연도	정책내용
2012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설계 및 도입,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적용확대, 저작권 보호 강화 - 창작활동 지원(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
2013	**사회보험 가입 지원하고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특수고용직 대상 고용 보험 설계 시 반영 추진 -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30% 지원 - 창작지원금 및 교육훈련 지원(창작지원금 월 60만원, 5개월/ 교육훈련 강 좌형 · 맞춤형 · 바우처) **예술인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장르별, 활동별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 예술인의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 예술인이 활동하는 장르의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예술인할인(패스)' 시범 시행

연도	정책내용
2014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확대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예술인 산재보험료 국고 보조 비율 확대('13년 30% ⇒ '14년 50%) 예술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 예술인 패스 도입, 예술인 대상 국공립 문화시설문화예술 관람 시 입장료 할인혜택(30% 이상)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 사업' 추진(연령, 활동기간에 따라 3~8개월까지 월 1백만 원 지원) - 예술인의 지역 · 기업 파견 지원, 교육비 지원(최대 1백만원), 예술인 잡페어 개최 등 - 예술인 신문고 구축 - 문예지 발간 시 보조액의 50% 이상을 작가 원고료로 지급 의무화
2015	저소득 · 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 - 무술연기자, 무용수와 같이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의 예술인들을 위해 산재보험료 가입등급 기준으로 확대 ('14년 최저등급 기준 50%(월 6,875원) → '15년 최고등급 기준 50%(월 29,850원))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립예술단체 · 공공기관 · 문예기금 지원단체 대상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50%) 지원)
2016	저소득 · 고위험 예술인 복지 확대 - (창작준비금)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 기간 중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3백만원) 수시 지원(4000명) - (산재보험) 무술연기자 · 무용수 등 상해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에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및 홍보 확대 (최대 6000명) - (국민연금보험 · 고용보험)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50% 지원(최대 2000명 지원) -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추진(고용노동부 협의)
2017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 (예술인신문고) 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상담에서 신고, 사실조사, 조정, 소송(최대 2백만원), 시정조치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 예술인 복지 정책 협력 확대 - (국토부)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국토부, 임대료 20~30% 저렴)' 입주요건에 '예술인' 추가 ('17.2월), 예술인의 주거복지 확충 - (복지부)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17년 4,000명, 300만원 지원/120억) 신청 시 소득 · 재산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청 편의 증진
2018	최소한의 생활안전망 구축 -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19),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18.상/ 고용보험법, 고용 · 산재보험료징수법,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복지금고) '19년부터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관리위원회 구성(5명), 다각적 재원조성 방안 마련(기부금, 예술인 자부담 등) - (근로여건) 문예기금 지원사업 투입 공연예술 인력 단가 조사 · 검토, 공공디자인 · 시각예술 용역대가 기준 등 고시 마련, 대중문화 산업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 · 상담 등 실시 -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인상('17년 월 2,134천원 → '18년 월 2,234천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계약기간 11개월 →12개월) - 예술인 창작준비금(4,500명) 지원제도 개선(절차, 선정 기준 등)

• 예산 항목들 중 직접적으로 예술인 복지에 활용되는 예산은 창작안전망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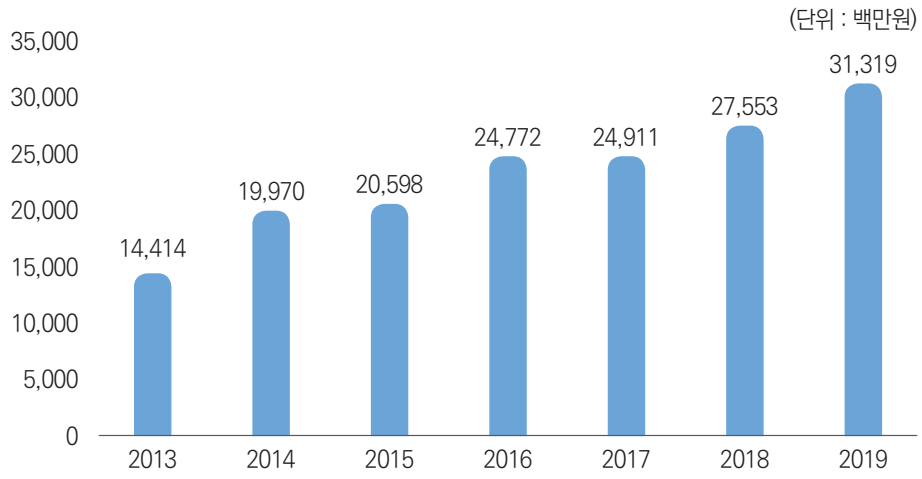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안전망 예산 추이

• 한편 2019년 기준 창작안전망 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예술 창작준비금 지원 등 창작역량강화가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인 파견 지원, 시간제 보육 등 직업역량강화 26%, 예술인복지재단 운영비 8%, 불공정행위 상담, 소송지원 등 불공정관행 개선 사업 5%, 사회보험 가입 지원 4%로 구성되어 있음

– 연도에 따라 그 비율은 차이가 있으나, 구성 항목은 대체로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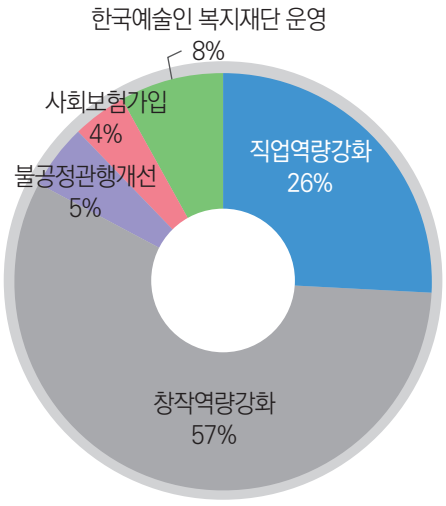

그림 2-2, 창작안전망 예산의 구성 (2019년)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정책

(1) 단체 현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설립되었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대부분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위탁 수행되고 있음

>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9년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의 슬로건은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며, 이에 따른 4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 집행에 동조하여 특정성향 단체와 개인의 지원 배제를 위해 심사결과 지체, 해당 사업 폐지, 대체사업으로 집행 등의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재단은 예술인들로부터 비판과 신뢰의 상실 가져온 바 있음

표 2-2, 재단의 비전 및 목표

	내용
Mission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지원으로 예술인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예술인복지법 1조)
Vision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
슬로건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전략목표	예술인의 권익제고 예술인의 생활안전망 지원 예술인의 가치 확산 재단 경영의 내실화

- 재단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전년대비 10.64% 증액된 27,463백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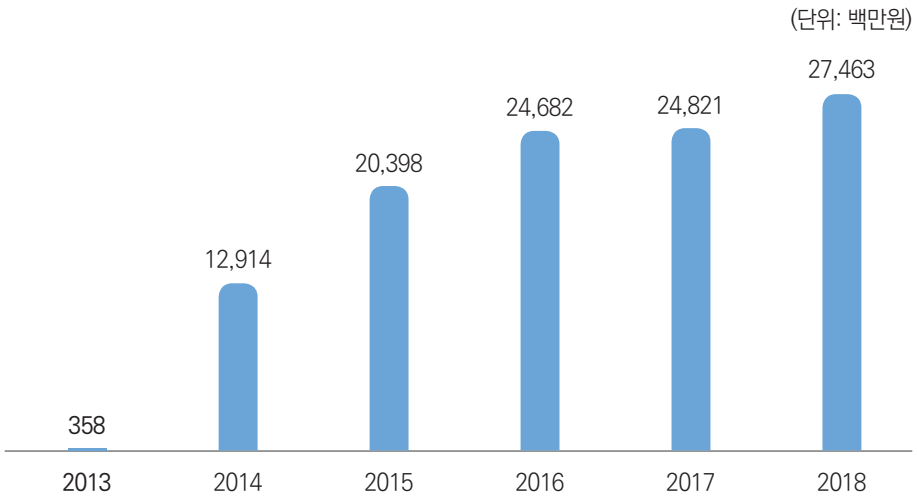

그림 2-3. 연도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예산 추이

• 복지재단의 예산의 대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며, 여기에 체육진흥기금 및 대행 수입 등이 추가되지만 그 비중은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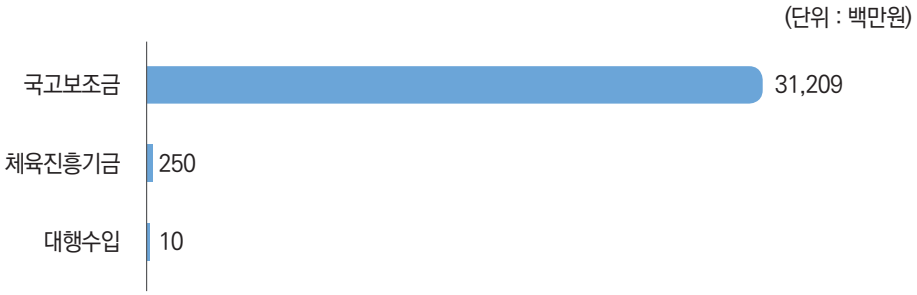

그림 2-4. 예술인 복지재단 2018년 총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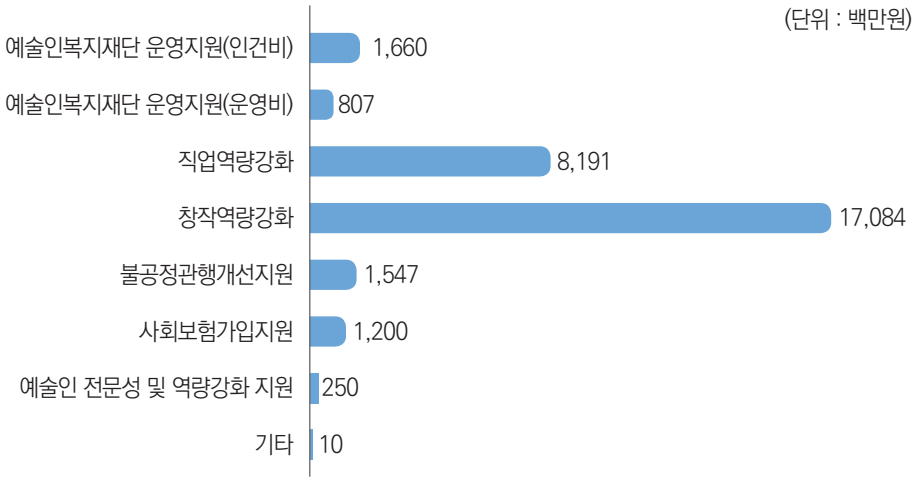

그림 2-5. 예술인 복지재단 2018년 총지출 현황

(2) 재단의 주요 활동

•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은 크게 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예술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구분되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해당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2-3.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시간제 보육 지원
예술환경 개선	예술인 신문고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지원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예술인 심리상담
사회안전망 구축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①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임

• 2013년 시작 이후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누적은 2018년 기준 57,4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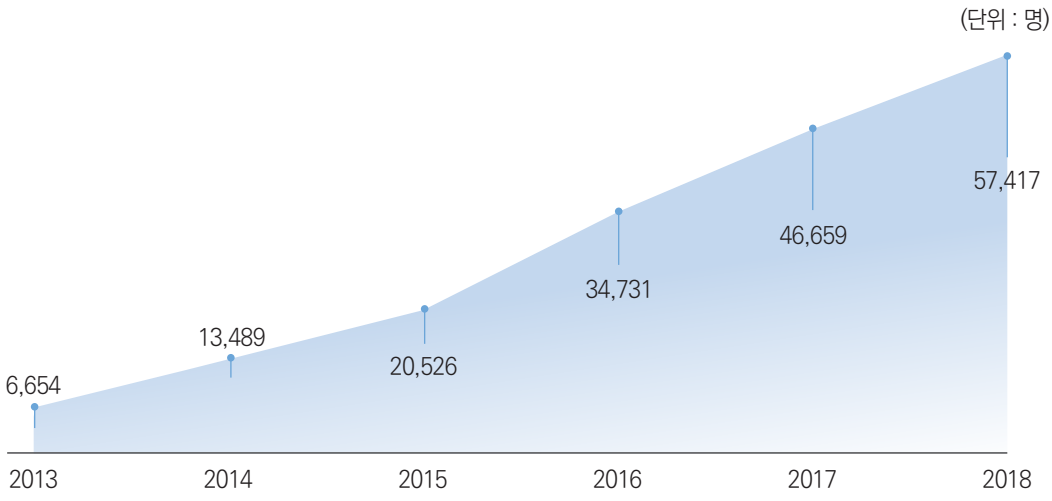

그림 2-6.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누적 추이

• 앞서 예술인복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예술인의 범위는 무엇인가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며, 선정과정 및 기준에 대한 공정성 혹은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

– 관련하여 재단은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현장 예술인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② 예술인패스(Art Pass)

•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일종의 멤버십 카드로 이를 통해 공연, 전시, 의료, 시설대관, 카페이용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음

③ 창작준비금 지원–창작디딤돌

• 예술인들이 경제적 문제와 같은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현업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단 격년제로 사업에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함

• 2018년 현재 누적인원 16,038명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표 2–4. 지역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7	2,073	200	87	152	55	81	22	8	890
2018	2,211	227	106	182	66	90	17	6	1034
2019(상)	1,353	135	61	100	36	63	25	4	605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7	45	39	60	87	39	55	96	25	4,014
2018	69	68	53	107	42	74	105	44	4,501
2019(상)	48	32	38	69	35	36	81	27	2,748

④ 예술인 파견지원–예술路(로)

• 예술인의 창조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지역 등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예술인의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표방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이 대상이며, 참여 예술가는 매칭된 기업 혹은 단체의 프로젝트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 또는 프로젝트를 기획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월 12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다만, 참여 예술가는 매칭기업(기관)과의 프로젝트 수행에 월 10일/30시간 이상 활동했음을 증빙해야 하며, 월 1회 활동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다만 이러한 행정적 기준이 예술활동의 특성과 맞지 않아 파견지원 활동을 수행했으나 행정적 조건 미비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역으로 활동내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음

• 2014년 337명으로 시작하여, 이후 대체로 연간 1,000명의 예술인이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8년 역시 총 1,00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표 2-5. 지역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7	579	17	21	31	16	13	10	2	225
2018	615	11	18	44	8	13	13	1	209
2019	594	15	15	37	12	9	10	3	21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7	21	14	1	21	2	6	9	12	1,000
2018	16	13	1	16	2	3	7	10	1,000
2019	23	19	6	11	0	6	9	13	1,001

⑤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공연단체와 극장이 밀집한 대학로의 반디돌봄센터와 마포 망원동에 위치한 예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24개월~10세 사이의 자녀를 이용 대상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의 돌봄을 맡길 수 있음
  - 본래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 전 분야의 예술인으로 이용대상이 확대됨

• 2018년에는 4,104명이 이용했으며, 지금까지 누적인원은 12,824명임

⑥ 예술인 산재보험

- 일반 근로자 등과 달리 예술인들은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산재보험료의 50~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사업주와 분담하는 형식이지만 예술안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 개인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임

- 지원대상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며, 선납입 후 환급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2018년까지 산재보험 누적 가입자는 1,553명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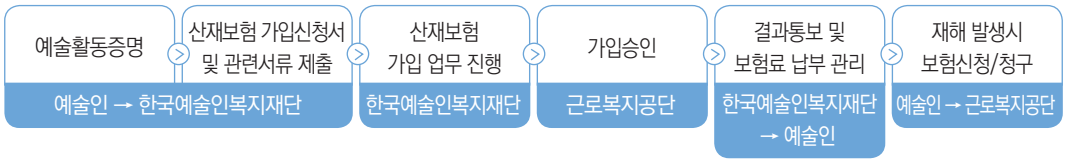

그림 2-7. 예술인 산재보험 신청절차

⑦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

- 2018년 현재, 총 4,194건 / 210개의 사업자가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음

표 2-6.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구분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지원항목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50% 지원 (사업장 가입)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50% 지원 (지역, 임의가입)
지원금상한액 (1인, 1개월)	합계	44,390원		47,11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43,650원
	세부 내역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39,260원	5,670원	39,260원	7,850원	43,650원
지원금 상한액 기준		'19년 최저임금 월 1,745,150원 기준 납부보험료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⑧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일반적인 금융제도를 통해 대출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3년 상환 2.2%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8,000만원 이내에서 2년 상환 1.7%의 금리로 대출 지원

표 2-7. 2019년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22	25	15	38	12	21	4	5	18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1	8	10	15	5	8	19	5	625

⑨ 예술인 의료비 지원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은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중증질환자를 우선지원하고 있음.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함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8명의 예술인을 지원

⑩ 표준계약서 보급

- 표준계약서 보급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예술계에 진입할 예비 예술인이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업 및 예비예술인 8,1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⑪ 예술인 상담 지원

- 상담 · 컨설팅 :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

• 예술인신문고 : 예술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

• 예술인 심리상담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상담 서비스이며, 본 사업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예술인이 신고상담이 가능

4) 예술인 복지 관련 제도 및 사업 검토

(1) 예술인복지법

① 예술인복지법 제정(2011)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예술인의 정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보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예술인복지법은 2009년 10월 정병국 의원과 서갑원 의원이 각각 예술인복지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식화되었으며, 이들 법안은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편입 방안, 예술인복지기금 설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을 담고 있었음
  - 그러나 법무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에서 법체계, 재정적 문제 등으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음

• 이후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비롯하여 예술인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 제정에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고, 2011년 전병헌 의원의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과 최종원 의원의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발의되었음
  - 이후 발의된 네 개의 법안을 수정하여 2011년 10월 28일 최종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본회를 통과함

• 특히 2011년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고, 정치권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당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 예술인 복지법은 2011년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7일 공포되었으며,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어 법 시행 다음 날인 2012년 11월 19일 법에 따라 예술인 복지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예술인 복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음

• 당위성에 기반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술인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부재함
  - 예술인의 4대 보험가입 등이 제도화되지 못하였으며, 상징적인 조항과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내용만을 담은 채로 법제화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함

• 2013년과 2016년 2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지고,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예술인 복지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시작
  -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예술인에 대한 상담 컨설팅 등 예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신설되고, 지원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음

• 이 법은 '예술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92년 캐나다의 '예술인 지위법'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임
  - 물론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요소가 존재하지만,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법으로서 규정하고, 복지에 대한 제도화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② 예술인복지법 제정 과정의 쟁점

• 첫 번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술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설정 문제가 있었음
  - 즉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 설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것임. 그 결과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조항 및 고용보험 조항이 삭제되고 산재보험 조항만 남게 됨

• 두 번째, '예술인복지기금' 설치 관련 조항으로 발의자는 복지기금을 통해 예술인 복지 관련 재원을 충당하고자 했으나, 정부 정책이 공적 기금을 가능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가 있었고, 결국 예술인복지기금 대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음

• 마지막으로 법 제정 과정에서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 결정 여부임
  -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음

표 2-8. 예술인 복지법안 비교

구분	예술인 근로자의제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가입 특례	국민건강 보험법 적용 특례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예술인 공제회
제정 예술인 복지법			O			
정병국의원 발의안	O	O	O			
전병헌 의원 발의안		O		O		O
최종원 의원 발의안	O	O	O	O	O	

출처 : 하장호 (201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복지

③ 예술인복지법 1차 개정(2013)

• 개정이유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 ·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
-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및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및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 예술인복지재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신설)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 예술인복지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제2항 신설)

④ 예술인복지법 2차 개정(2016)

• 개정이유

- 영화, 연예,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2014년 7월 29일)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이에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를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4조의2)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함(제4조의3 신설)
-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 ·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제10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⑤ 예술인복지법 3차 개정(2018)

•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할 때 예술인들의 신청편의를 위하여 서류를 받는 대신 국가 전산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예술인 또는 가구원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게함(제10조의3 신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에게 예술인 또는 가구원의 관련 자료 요청 및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목적외 이용할 경우 벌칙(제17조)

⑥ 예술인복지법 4차 개정(2018)

• 개정이유

-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 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 · 축소되고, 예술인 개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
- 따라서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 · 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가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열악한 환경의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더욱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4항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제4조제3항 신설)
- 현행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함(제6조의2제1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제10조제1항제10호 신설)

⑦ 5차 개정(2019)

• 개정이유

- 예술인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된 계약의 서면 체결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계약서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 제4항 신설)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4 신설).

(2) 예술인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목적 및 필요성

• 예술인들의 사회보험을 통한 보호망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이에 따라 2013년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2014년에는 사회보험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어 예술인 사회보험의 행정절차 대행과 보험료 50% 지원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되었으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이 심사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은 예술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크고 임의가입방식이기 때문에 보험가입률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의 한계 발생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라는 목표 달성에 미흡한 예술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의 재설정과 함께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고, 예술노동에 대한 규정과 예술노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도입이 필요

② 추진과정

•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예술인복지법 제정시기부터 화두 중 하나였으나 당시 정부 부처의 회의적인 대응으로 복지법안에서는 다뤄지지 못하였음

- 이후 박근혜 정부시기에 들어서 다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문체부와 고용부의 연구용역이 진행된바 있음
- 또한 2016년 9월 28일 장석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탄핵 국면 및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의가 새로이 진행되었음

• 정부는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산하 예술인 복지분과에서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이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구성되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음

•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 2030에서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제시할 만큼 정부의 의지가 높았으며, 예술계 역시 최근의 예술노동담론의 확산과 더불어 예술인의 근로자성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 결과 2018년 11월 6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안)이 한정애 의원 대표로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돼있는 상태이며,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임

③ 쟁점

• 임의가입 VS 의무가입
  - 법률 개정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는 가입방식을 의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임의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였음
  - 2016년이 장석춘 의원이 내놓았던 개정안에서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의하였으나 이후 한정애 의원 안에서는 의무가입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의무가입으로의 변경에는 예술인들의 요구, 특히 예술노동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임의가입 형태로 추진된 예술인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율 자체가 저조하며, 가입 유지율도 하락하는 추세임. 소득이 불안정하고 낮은 예술인들로서는 임의가입일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다만 의무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예술계의 창작 위축이나 당장의 보험료에 대한 예술가들의 부담 등은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음

• 예술인의 범위
  - 개정안의 제8조 3항에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을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용역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그동안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던 고용보험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예술인의 근로자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 하지만 예술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새로운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현재는 예술인복지법 2조에서 예술인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인복지재단의 실제 복지지원 수행과정에서는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형태임

- 이 경우, 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예술인이나 예술 분야 지망생 등은 제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생활예술이 활성화되는 상황 속에서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 관계에 처우에 대한 지점 역시 장기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음

•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 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고려되는데, 저낮는 급여 신청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의미하며, 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기로 규정된 날만을 의미함
-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구직급여의 수혜가능성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상에서 일반근로자는 18개월 기간 중 180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예술인들은 특성상 활동 기록의 인정의 어려움으로 기준기간과 단위기간을 적용하기가 어렵기에 일반근로자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들이 있었고, 개정안에서는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직전 24개월 중 9개월로 수급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④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안)

• 제안이유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 · 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 ·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주요내용
-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 · 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3호 · 제5호 · 제6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8조제1항 신설, 제9조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 · 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

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 제8호,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8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 ·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피보험 자격확인 등을 위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08조,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제118조)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54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9조의3제1호, 제69조의6,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제87조, 제105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2제4항, 제116조)

(3)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① 목적 및 필요성

-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법(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박근혜 정부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예술계의 성폭력 및 권위주의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임

- 이 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성희롱 · 성폭력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과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하고 있음

② 추진과정

- 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운동 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 과정에서 예술계, 국회, 정부가 함께 입법추진 특별 TF를 만들고 논의를 진행하였음

-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에는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여성문화예술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문체부 성희롱 ·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등 정부를 비롯 현장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

•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19일 대표발의되었며, 11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법안 상정이 됐음. 그러나 여야 간의 정쟁으로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음

③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안)

•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예술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 그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직 · 간접적 피해를 본바,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따라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예술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안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야 하며, 예술을 검열하거나(안 제5조),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안 제7조), 예술지원에 있어 투명성 · 공정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안 제11조),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5조)
-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안 제1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안 제17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안 제18조)하는 한편, 2년마다 성희롱 ·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안 제19조)
- 예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안 제20조)와 예술인 성희롱 · 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안 제28조), 예술인 보호관을 통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 · 성폭력행위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다(안 제30조)
-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 · 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

다(안 제3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보호관을 통해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고, 권리보장위원회 · 피해구제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 · 성폭력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재정지원의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1조)

(4) 예술인 복지금고

①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경과

- 예술인은 불규칙[3]하고 낮은 수입으로 인해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며, 그로 인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의 활용에 문턱이 높음. 예술인 복지금고는 이러한 예술인들의 경제적 필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 이 정책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정책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가칭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백지화되었음. 또한 예술인복지법의 발의시, 예술인기금의 설치 논의가 포함되었으나 이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외된 바 있음

②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사업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시 예술인복지금고 설립 시도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년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사업'이란 명칭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이 사업은 복권기금 80억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며,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 예술저작담보부대출,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되어 운영중임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으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출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300만원)이며, 3년 상환 2.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음

-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필요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8,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이내를 지원하며, 기본 2년 만기 일시상환에 3회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1.7%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음

- 예술저작담보부대출은 시행 예정으로 예술저작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

3)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0%임.

2. 지방정부 예술인 복지 정책

•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국내 예술인 복지정책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예술인들 스스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그 생산 주체인 예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예술인 복지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현재 충남북과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도 조례제정이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표 2-9. 지역 예술인복지 조례 제정현황

구분	지역	법규명	제정시기
광역	경상북도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2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4
	경기도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
	전라북도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
	전라남도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8
	경상남도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
기초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3
	경남 창원시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4
	경기 안양시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4
	전북 전주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
	전북 군산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5
	경기 구리시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
	경남 경산시	경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경기 가평	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7

구분	지역	법규명	제정시기
기초	경기 여주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7
	전남 완도군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7
	강원 춘천시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8
	경기 하남시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 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지원정책은 지역문화재단에 수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예술인복지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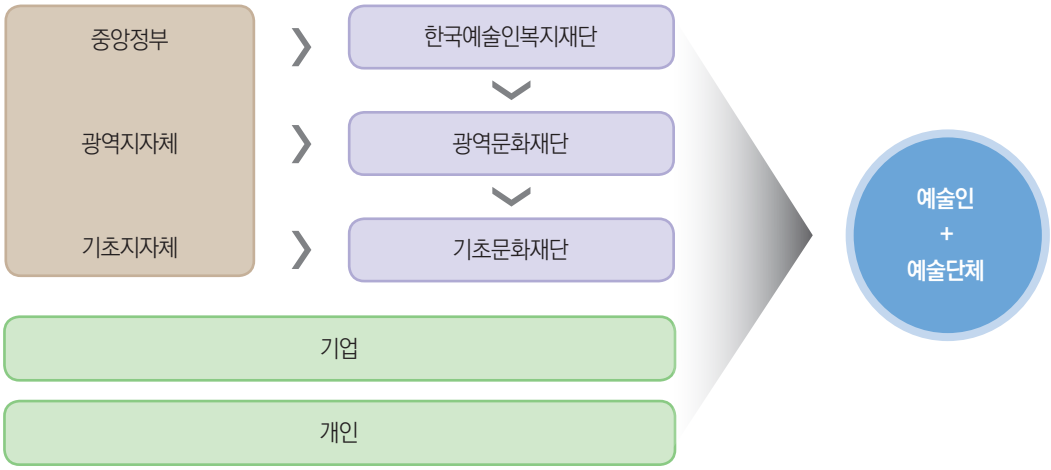

그림 2-8. 예술인 복지지원 체계

• 실질적으로 예술인 복지 지원은 창작 지원 차원에서 머물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최근에는 부산, 전북, 경남 등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술인 복지를 전담하는 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광역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남

1) 광역문화재단 현황

• 최근 경북이 문화재단 설립을 확정하면서 현재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에는 광역문화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초창기에 설립된 서울, 경기, 강원,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

표 2-10. 광역단위 지자체 문화재단 현황

재단명	출범시기	이사장
서울문화재단	2004년	민간
부산문화재단	2009년	부산광역시장
대구문화재단	2009년	대구광역시장
인천문화재단	2004년	인천광역시장
광주문화재단	2011년	광주광역시장
대전문화재단	2009년	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
울산문화재단	2016년	울산광역시장
경기문화재단	1997년	민간
강원문화재단	1999년	민간
충남문화재단	2013년	충남도지사
충북문화재단	2011년	충북도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2015년	전북도지사
전남문화관광재단	2009년	전남도지사
경북문화재단	2020년(출범예정)	민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0년	경남도지사
제주문화예술재단	2001년	민간
세종시문화재단	2016년	세종시장

- 대체로 광역문화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사업, 창작지원금사업 등을 수탁하거나 협조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 자체적인 예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로는 복지사업이라기보다는 창작지원사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업은 지역예술인 혹은 신진(청년)예술인의 창작지원 및 상담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부산, 전북, 경남에서는 예술인 복지를 전담하는 예술인 복지센터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광역복지재단에서 수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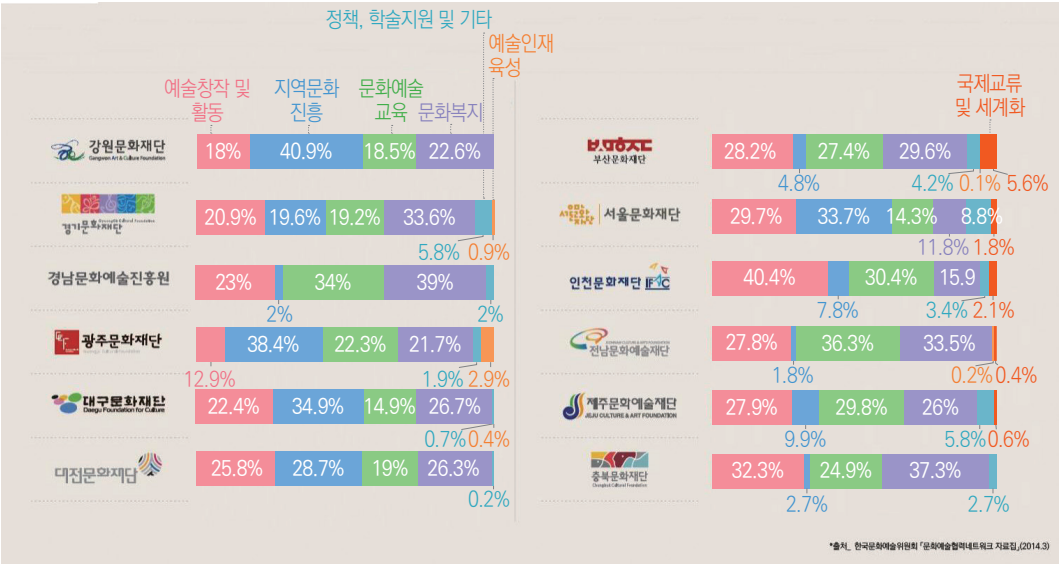

그림 2-9. 광역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비중(2014)

• 광역문화재단들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자체자금의 투여 비중이 한 자릿수로 나타났고, 대부분 지자체 및 국고보조금이 주 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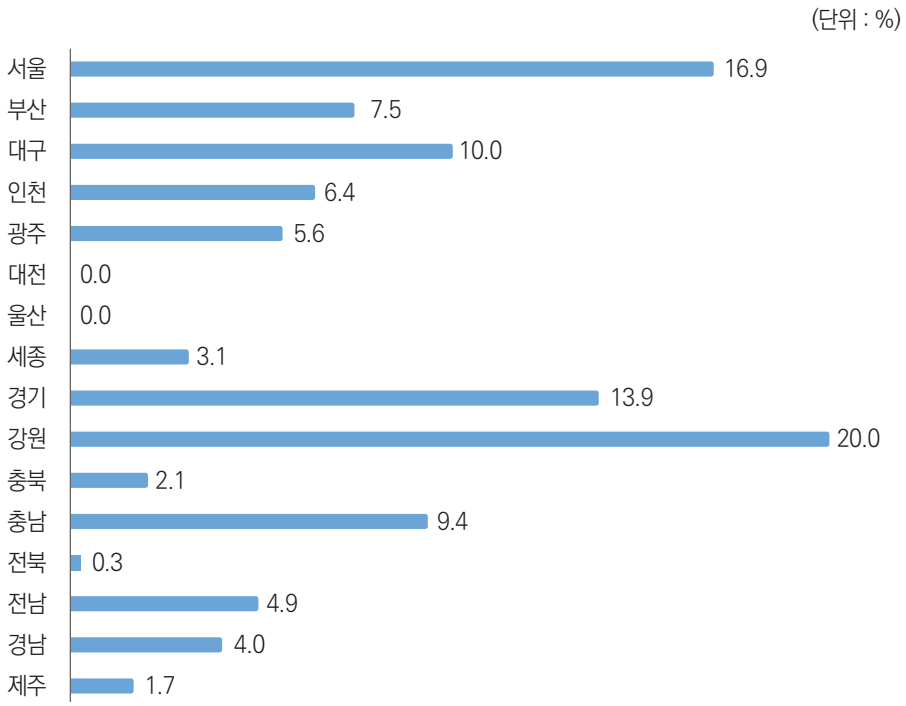

그림 2-10. 광역문화재단 자체 예산(자립도) 비중(2018)

2) 지자체의 종합계획수립 사례

(1) 서울특별시 : 서울예술인플랜

- 서울시는 국내 어떤 도시보다 예술인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은 추진하지 못하였음. 2015년 8월 TFT를 구성한 이후 1년여 간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과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16년 8월 17일 '서울예술인플랜'을 발표

- '서울예술인플랜'을 통해 5대 희망의제와 43개 지원 사업(신규 30개, 기존 13개)을 2020년까지 추진. 5대 희망(HOPES)의제는 Housing(예술인주거 · 창작공간), Opportunity(예술인 활동기회), Promotion(장애 없는 창작활동 촉진), Education&Exchange(예술인 성장과 발전), Sustainability(지속가능한 예술 환경)으로 구성

그림 2-11. 서울예술인플랜

- Housing 예술인 주거 · 창작공간
  -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예술인협동조합형의 막큡(M.A.Coop, Mallidong Artists Cooperative) 29호, 연극인맞춤형임대주택 11호, 민간임대 형식의 '배우의집' 10호(성북구 삼선교로 18가길 4) 등 총 50호가 공급된 상태임. 앞으로 2020년까지 다가구, 원룸을 매입해 충정로, 정릉 등 예술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조성하고, 창작복합형, 주거전용형, 협동조합형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1,000호의 주거공간을 추가로 공급예정
  - 예술인이 운영하는 민간 공동 창작 공간 300개소에 최대 6개월간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공유형 창작공간을 조성할 경우 자치구당 1개소씩 총 25개소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문래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 등 서울시 창작 공간 11개소 중 약 30%를 모든 예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 Opportunity 예술인 활동 기회

- 예술강사 지원사업 외에 공공예술해설사, 거리예술단 등 공공영역에서 예술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미술 600개, 거리예술 · 축제 7,000개, 예술교육 6,000개, 예술치유 500개, 생활예술 200개, 공공참여 1,000개 등 1만 5,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계획
- 예술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사업, 2018년까지는 공공분야 민간사업 참여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또한 2017년에는 연구를 거쳐 분야별로 경력단계와 활동유형 등에 따른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서울형 예술인 표준 보수지침'을 적용

• Promotion 창작활동 촉진

-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신진 예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6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시작한 '최초예술지원'사업은 올해 50건에서 내년에는 10배 규모인 500건, 2020년에는 1,000건으로 대폭 확대. 만 35세 미만 청년예술인과 예술대학 졸업 후 활동 경력이 3년 이내인 예술인으로 유형을 나누어 지원한다.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창작 지원금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 홍보 · 마케팅, 작품 발표 기회까지 종합적으로 제공
- 예술 작품 발표와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연극창작지원시설, 사진미술관, 서울아레나, 서울공예박물관 등 예술 장르별로 특화된 공공문화예술시설 13개소를 건립. 판로 개척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생활예술시장과 민간 아트페어를 지원하고, 시 · 구청 로비 등 공공 공간과 온라인을 활용한 'Art Wall'도 조성. 청년 · 신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하는 '영아티스트 페스티벌'도 장르별 페스티벌(연 4회), 통합 페스티벌(연 2회) 형식으로 개최.

• Education&Exchange 예술인 성장과 발전

- 예술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예술인 대상의 교육과 해외 교류 기회도 확대. 지원 사업 정보뿐 아니라 사회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창작 공간, 주거 공간, 공공사업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술인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근로계약 체결 등의 권리교육과 직업역량 강화,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300명 이상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
- '10+100 예술인 해외교류 지원'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예술가에게 1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서울시의 52개 자매 · 우호도시들과의 국제교류사업, 해외문화예술기관과의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진행. 해외 예술인이 일정 기간 서울에 머물면서 시 또는 국내 작가와 협업하는 예술인 국제교류 프로젝트 'Air Seoul'을 통해서는 매년 50명을 지원 예정

•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예술 환경

–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교류할 수 있는 '예술청' 조성. '예술청'은 현재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자리에 약 4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500㎡ 규모로 들어서며, 정보자료실, 가변형 작품 발표 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을 구비. 예술지원사업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및 노동권리 관련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2) 부산광역시 : 2020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 202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은 '예술인들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 구현'이라는 정책비전 하에,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직업권익 신장, 예술인 생활 협력이라는 3가지 정책목표와 1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

•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는 5개 추진과제에 실행예산 2,750백만 원, 예술인 직업권익 신장은 8개 과제에 예산 7,020백만 원, 예술인 생활 활력 증진은 6개 고제, 1,410백만 원으로 총 추진예산은 11,180백만 원

표 2-11. 2020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

목표	추진과제	사업비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 예술인 행복코디네이터 운영 –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 예술인 100인 라운드테이블 실시	2,750백만원
예술인 직업권익 신장	– 표준계약서 정착 – 청년예술과 인턴지원 – 우리동네 예술가 양성 및 지원 – 청년예술가 일자리 박람회 – 빈집을 Art Space로, '반딧불이' 사업 – 예술인 예장곳간 운영 – 예술인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7,020백만원
예술인 생활 활력	– 예술인자녀교육 지원 –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 휴 안심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법률자문단 운영 – 부산예술인 명예의 전당 추진 – 예술인 패스 확대	1,410백만원

•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복지지원 전담을 위한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예술인활동증명 및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율 제고 및 홍보 강화, 현장 소통형 프로그램 추진 및 정책화.

• 예술인 직업 권익 신장

– 부산 예술인의 직업권익 신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

• 예술인 생활 활력

–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창작환경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제공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3) 예술인복지센터 운영사례

(1) 부산광역시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부산광역시는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원하였음. 이는 2020 부산 예술인복지 증진계획의 일환으로 예술인복지센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 · 협력해 정부의 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

•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예술인활동증명 등 기존 예술인복지재단의 위탁업무와 더불어 자체적인 지역 예술인 상담 및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2. 부산광역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 예술인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수 : 3,901명(2019년 8월 기준) – 예술인 패스 누적 완료자 수 : 3,022명(2019년 8월 기준)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사업	– 2019 참여 기업 · 기관 : 20곳 – 2019 참여 예술인: 20명
[굿모닝 예술인] 매칭데이	– 참여기업 20곳(기관 관계자 40여명), 참여예술인 101명 – 매칭기업 · 기관 총20곳, 매칭예술인 20명
반딧불이(빈집활용) 사업	– 11곳 개소, 42명 예술인 입주 (사하구 4개소, 남구 1개소, 진구 2개소, 서구 1개소, 북구 3개소)
휴-안심 프로젝트 운영	– 심리상담, 힐링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 예정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 2019년 법률상담 · 신문고 분기별 4회차 운영 예정 – 1회차 : 저작권교육(36명), 법률상담(5명) – 2회차 : 저작권교육(26명)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 복지 만족도 조사	– 대상 : 부산지역 예술인 약 2,000명(2018년 7~12월)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센터 1개소 운영(3~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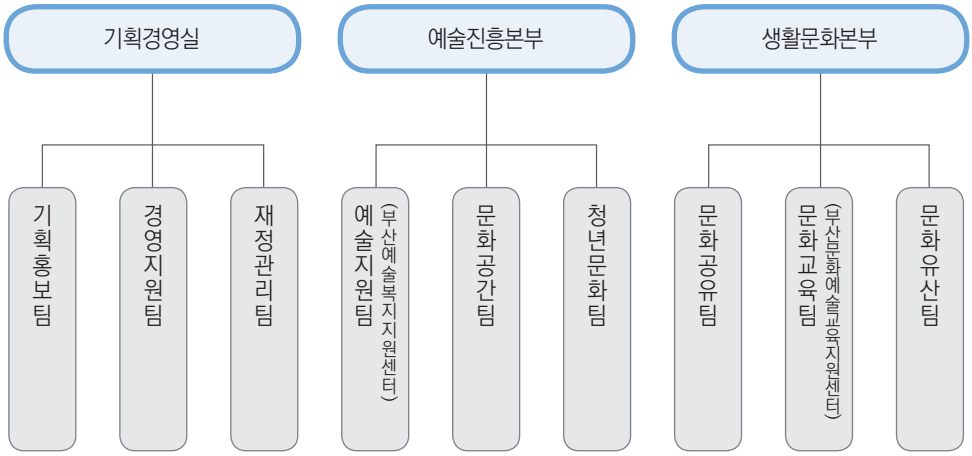

그림 2-12.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조직 편성

(2) 경상남도 : 경남예술인복지센터

- 경남예술인복지센터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센터와 서부권센터(진주) 2개소로 운영되고 있음. 창원센터는 2019년 8월 경남은행 마산지점에 개소되었으며, 서부권센터는 2019년 10월 28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 개소되었음

- 창원센터의 경우, BNK경남은행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체결한 '경남예술인 복지를 위한 문화공간 나눔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 신마산지점의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되며, 카페형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주요 업무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해오던 예술인복지업무를 수행하여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창작자금대출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의료비지원, 예술인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업무를 대행 또는 협력하는 사업을 진행

그림 2-13.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좌)와 경남예술인복지센터(우) 내부 모습

(3) 전라북도 :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 전라북도의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2016년「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7년 수립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역예술인의 권리향상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예술인복지증진사업의 전담조직으로 2018년 설립되었으며, 이는 부산에 이어 두번째임

- 센터는 전라북도문화관광문화재단이 수탁하여 운영하며, 주요 업무는 예술인활동증명, 창작준비금지원 등의 기존 예술인복지재단의 위탁업무와 더불어 전라북도예술인특례보증지원, 찾아가는 사업안내 서비스 등의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전시지원, 교육, 자문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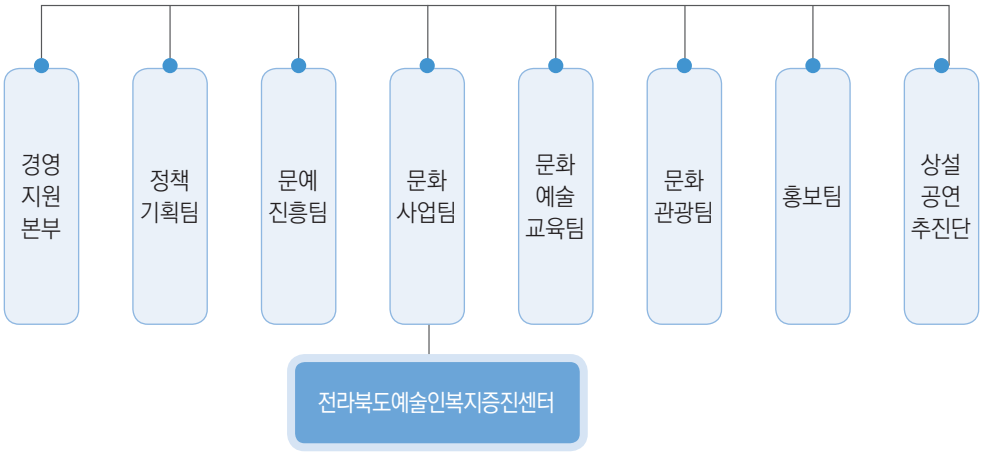

그림 2-14.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조직 편성

4) 예술인 복지 연관 정책 주요 사례

(1) 전라북도 : 예술인특례보증지원사업

- 전라북도는 도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인특례보증지원사업'을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과 협업하여 진행 중에 있음. 국내 최초로 출시된 예술인 대상 저금리(4% 미만) 대출상품으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자 가운데 창작자와 실연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3개월이 경과된 예술인이 지원 대상으로 연중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50억 원으로 예술창작 재료비와 창작 공간 마련 등에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음

- 2017년 2건(3500만원), 2018년 3건(7000만원)으로 실적은 미미한 편이나 보완 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

그림 2-15. 전북예술인특례보증지원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예술 창작융자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도내 예술인들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창작활동 여건 개선과 예술 활성화 기반을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 실시

-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오는 8월초 융자기관인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와 신용보증서 발급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서 발급과 이자차액 보전을 담당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작업실과 연습실, 발표공간, 교육장 등 공간 매입비와 임차료 등의 공간자금, 전시와 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며, 개인별 담보능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자차액은 부동산 담보 2.8%, 신용보증 1.85%가 보전

- 해당 조건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 자격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이거나 문화예술기관과 단체의 예술인 증명이 가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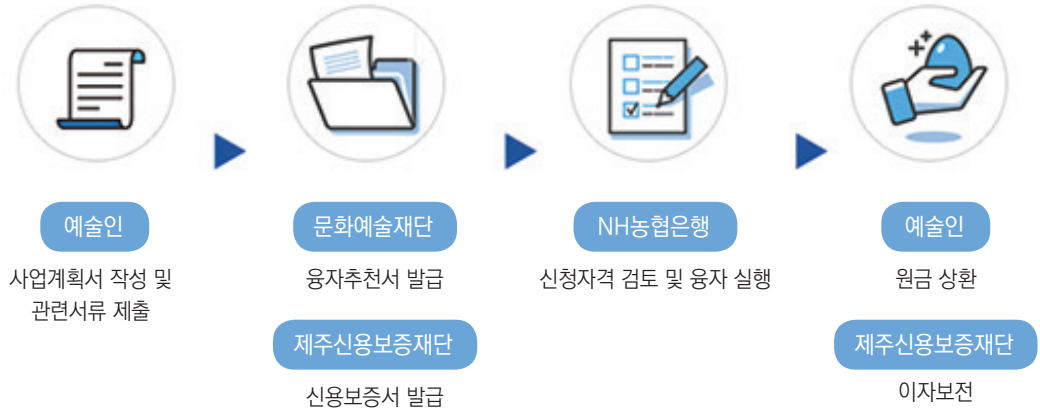

그림 2-16. 문화예술 창작융자 지원사업

(3) 경상남도 :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 경남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활동 재료비 및 창작공간 조성 목적의 자금의 대출을 지원
- 자금 대출시 연자차액 2.5%를 보전 지원
- 지원자격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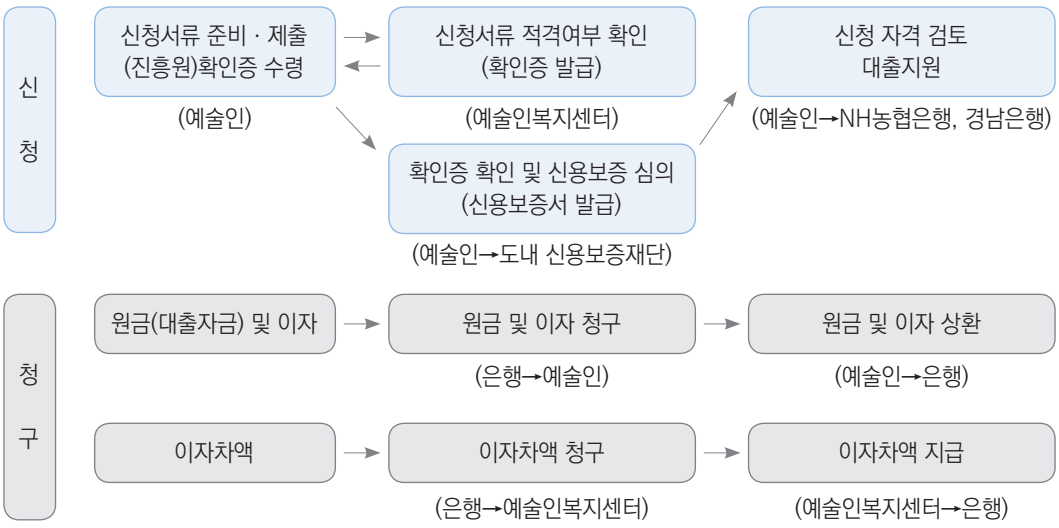

그림 2-17.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

5) 시사점

-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흐름은 '창작활동지원'에서 '생계지원 혹은 보장'이라는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음. 예술활동이 예술인 개인의 선택이자, 자기실현으로 간주되어 왔던 인식에서, 예술활동이 사회적 발전과 풍요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가에 대한 지위의 재해석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예술인 복지법'은 그 출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및 보장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

-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노동으로서 재해석하려는 시도 역시 이어지고 있음. 예술활동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으로의 편입은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으며, 표준계약서 및 고용관계상의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등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고 있음

- 지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예술가들의 복지를 위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문화재단을 통한 예술활동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부산과 서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등의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복지증진 조례를 세우고 그 안에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서울, 전북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한정된 지자체의 예산을 고려할 때, 지역의 기업들과 연계한 복지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경남과 경남은행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간 대여나, 전북, 제주 등의 지역금융기관과 연계한 예술인 금융지원은 의미 있음

- 다만 여전히 창작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 생계지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2절

해외의 예술인 복지 정책 주요 사례

1. UNESCO의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

- 국제사회 차원에서 예술인의 권리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는 1972년 유네스코(UNESCO)의 '현대사회에서 예술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1980년 제21차 정치총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itists)'가 채택되면서 본격화되었음

- 이 권고는 예술가들의 권리장전으로서, 전문과 9개의 장[4]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이 예술인의 사회권적 권리 보장에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음

- 권고에 따르면,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되고 있음

- 예술인의 지위에 대해 "한 사회에서 예술가에게 요청되는 역할에 따르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존중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제 권리를 포함하여, 특히 예술가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소득과 사회보장과 관계되는 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라고 규정

- 이후 권고의 내용을 국제사회 확산시키기 위한 후속사업으로 국제회의를 6차례 개최하였으며, 이중 아태지역에서 열린 회의는 91년 서울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음. 이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예술가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항 및, 교육훈련, 예술작업 환경개선, 경제혜택, 고용, 세금 등 국가들의 노력을 강조

- 세계예술가지위 정보망(World Observatory on theSocial Status of the Artist)을 구축하여, 세계의 정책 자료와 정보를 교류하고 있음

4) 장의 구성은 1.정의, 2.적용범위, 3.총칙, 4.예술가의 사명과 훈련, 5.사회적 지위, 6.예술가의 고용 · 작업 · 생활여건, 7.문화정책과 참여, 8.본권고의 활용과 이행, 9.기존혜택의 유지

• 한편 1997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예술가지위회의에서는 각국의 예술가 및 정부기관, 국제 NGO 관계자들 참여하여 ①예술가와 사회 ②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③ 21세기를 위한 예술 이란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언문이 작성되었으며, 선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Funding of the arts
   - 정부공적재정의 1%를 예술의 창작, 표현, 보급사업에 투자
   - 재정지원정책에 예술가를 참여시킴
   - 혁신적 창작사업에 치중하는 예술단체 혹은 소규모 문화사업체 지원

2. Support for artistic creation
   - 예술관련정보의 수집과 보급
   - 성별 · 인종 · 종교에 구분없는 평등 참여정책

3. Artistic education and training
   - 학교제도 속에서 예술관련 과목이 타과목과 통일한 비중유지
   - 예술자체 교육과 예술을 이용한 타과목 교육방법 권고
   - 예술의 다양성 유지 및 특정표현의 독주 금지 (hierarchy)
   - 예술 평생교육
   - 예술가 전문교육 강화 및 성공사례 successful experiment의 보급

4. The arts and the new technology
   - 예술가 창작을 진흥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보급 및 적용 권고
   - 예술창작 정보의 보편적 보급

5.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of performing artists
   - 예술 저작권 보호 경책 강화

6. The working conditions, taxation and health of artists
   - 예술인 생활과 고용을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
   - 세금, 사회신분보장, 결사, 고용,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등 차별없는 적용

• 2015년에는 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1980년 '유네스코 권고안 시행 현황 보고서'[5]라는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도 권고의 목표를 "예술인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예술인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반영한 정책개발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합당한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 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권고와 활동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함으로써 예술가들에 대한 복지의 당위성을 보장해주고 있음

5) 정식 명칭은 "Full Analytic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2. 국가별 예술인 복지정책

1) 프랑스

(1) 예술가-작가를 위한 특별 사회보장제도

- 프랑스는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인사회보험제도는 예술인의 종사 지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하나는 저작권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고용주가 없는 독립예술가들을 대상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고용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

- 저작료를 받는 예술인(일종의 자영업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문학, 음악 관련 예술인을 담당하는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와 미술인들이 속해 있는 예술가의 집(Maison des Artistes)이 담당하며, 저작권료 지불시 기업에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며, 계약을 통해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은 사회보장 국민연금 연맹(URSSAF)에서 관리

-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와 예술가의 집(Maison des Artistes)은 정부 공인 비영리단체로 이들의 기관의 주된 임무는 예술가-작가들의 사회보장 가입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사회보장기금 지사로 전달하는 사회보험가입 업무와 가입된 예술인 및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납부금과 기여금을 징수하는 업무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을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에 주소지가 있고, 작품 판매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한 수익을 매년 세무서에 소득 신고해야 하며, 전문예술가-작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액이 8,784유로(2017년 기준)이상이 되어야 함

- 지원내용으로는 예술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로 할인 혹은 매출액이 41,700유로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작업상 필요한 필요경비 소득공제, 창작활동장소 거주세 면제 혹은 할인, 자기소유 작업장에 대한 부동산세, 대출이자 소득공제, 임대일 경우, 임대료, 관리비 등을 작업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 소득이 없을 경우, 고용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특별연대보조금을 최대 1년간 수령할 수 있으며, 급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술가에게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이 존재함

- 보험료는 예술가와 배급자 등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배급자는 원천징수 형태로 예술가들에게 지급하는 총 보수액의 9%를 납부하며, 예술가는 소득신고 후 납부하는 소득세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

(2) 실업보험제도 : Intermittent du duspectacle

- 프랑스는 예술인의 복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국가이며, 그들이 운영하는 복지제도인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은 매우 유명하고도 상징적인 사례임. 사전적인 의미로 간헐적, 불연속적, 불규칙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할 시, 단기간의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활용됨. 따라서 공연이나 영화, 방송 등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종사하는 직업군을 '공연예술 앵테르미탕(Intermittent du duspectacle)'이라 일컬으며, 사실상 공연, 영화, 방송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단계 계약직 예술가들에게 계약이 없을 때,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실업보험제도의 명칭으로서 사용되고 있음

- 해당 실험보험의 적용대상은 단기 비정규직 공연기술자 및 공연예술가에 한정되며, 지난 10개월 간 507시간 이상 일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함

- 수급기간은 최대 8개월로 노동시간과 급여비율에 따라 실업보상금이 결정. 단, 수령액의 최저급여액과 상한액이 존재

- 재원은 노사 양자 간 분담하되,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 7:3 비율로 부담하며, 이 금액은 전체 지불임금의 12.8%(사용자 7%+근로자 4.8%)를 차지함

2) 독일

- 독일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예술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1983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 KSVG)을 제정하여 시행. 예술인 사회보험은 자영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의무보험으로서의 역할

- 사회보험의 집행기관은 예술인사회기금(Kunstlersozialkasse: KSK)로 연방노동사회부 산하에 설치되어, 사회보험의 재원을 각각의 분담 주체로부터 모으는 역할 및 예술가의 자격확인, 보험료 산정, 납부상황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함

- 가입자격은 예술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연간 3,900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전업 자영형태의 예술가이어야 함. 다만 대신 신진 예술가의 경우 가입 후 최초 3년간은 기준소득 3,900유로에 못 미치더라도 자격유지가 가능하며, 6년간 2회까지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KSK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에서 일반국민들보다 50% 낮은 분담금을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 역시 제공하지 않음

- 운영 재원의 확보는 예술인 본인, 연방정부, 사용자가 분담하는 방식이며, 보험료 중 50%는 본인이 부담, 정부보조가 20%, 사용자 측이 30%를 분담하는 예술인사회분담금으로 구성. 이 때 사용자는 기획사, 갤러리, 음반회사, 출판회사와 같이 예술가의 예술활동 및 작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주체를 의미

- 예술인만을 위한 보험은 아니지만,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예술가들의 경우, 리스터연금제도(Riester Forderung)라는 저소득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소득의 기복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연금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뤼룹(Rurup)연금제도 역시 활용 가능

3) 네덜란드

- 네덜란드 예술인 최저생활보장제도(Wet Werk en Inkomen Kunstenaars: WWIK)로, 이 제도는 예술가들에게 법정최저임금의 70% 가량의 기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개정 이후 2012년 폐지되었음.

- 매년 예술가의 작품 활동이 향상됐다는 입증을 받아야 하며, 그 근거로 연차별로 예술가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예술인이 법정 최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수당 지급은 중지됨

- 제도관련 법안의 폐지 당시, 근거는 예술가를 다른 사업가와 노동자들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

4) 스웨덴

- 스웨덴의 경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예술인들 역시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연금의 경우, 공적기초연금보험, 직업연금보험, 사적연금보험으로 구성되며, 소득이 없거나 낮은 예술인의 경우, 공적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공적 기초 연금 역시 소득비례연금, 완전적립식 개인연금, 최저보증연금으로 구분되며, 이 중 최저보증연금은 사실상 공공부조 형식으로 운영되며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연금으로 기본생활 유지비용 정도가 지원됨. 즉 별도의 예술인 연금제도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 고용보험 역시 기초보험과 소득손실보험으로 구분되며, 실업자는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손실보험의 혜택으로 소득비례실업급여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기초보험을 통해 기초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됨. 만약 소득이 낮거나 혹은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경우 소득손실보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시 기초실업급여를 통해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실업보험, 노령연금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법에 의거한 공공부조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스웨덴 지역 예술인의 작품들이 상설 기획 전시되어 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 활성화되고 있음
  – 스톡홀름현대미술관에서는 대학과 연계하여 특별기획으로 건축디자인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헬싱키시립미술관에서도 디자인 전시관을 특화해 운영 중

그림 2-18. 스톡홀름현대미술관의 지역예술대학 협력 전시전

5) 핀란드

• 핀란드에서 예술인 지원정책사업은 2013년 설립된 핀란드 예술지원센터(Arts Promotion Centre Finland; Taike라고 통칭됨)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함
  – Taike는 핀란드 교육문화부 산하의 국가 자금 지원, 예술 지원 및 서비스 기관으로서 중앙예술의회와 함께 교육문화부에 자문역할을 수행
  – 관리와 소통(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해 전문가 집단 풀(The Eepert Bodies) 운영 기금조성과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두 개의 핵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예술진흥은 1970년대부터 지역 예술가 시스템에 기반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되었고, 기금 조성 사업은 의회예산 배분과 개인 보조금 배분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기본 과제임

– 관리와 소통(Administration and communication)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해 전문가 집단 풀(The Eepert Bodies)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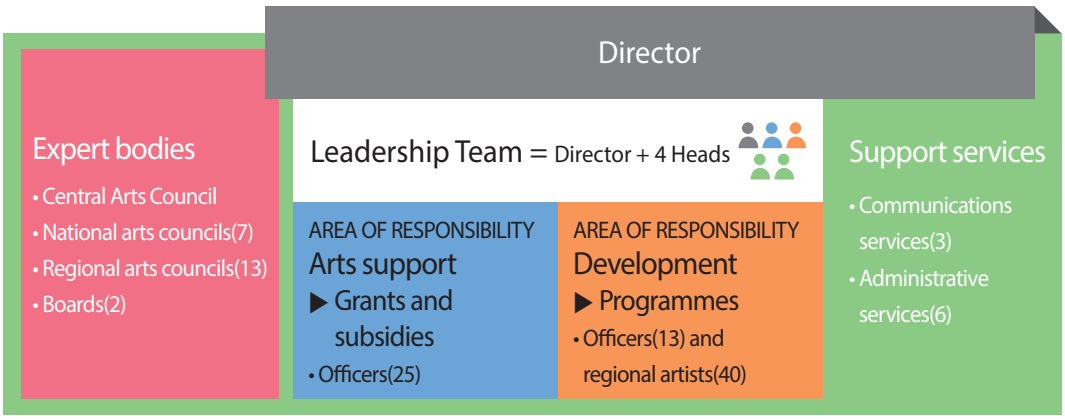

그림 2-19. 핀란드 예술지원센터(Arts Promotion Centre Finland) 조직 구성

• 핀란드의 지역 아티스트들도 전문 예술 영역에 종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부 기금은 정부 부처를 통해 Taike로 주어져 조성되고, 현재 지원금 제도에서 기본소득(월급) 지원으로 전환을 추진중
  – 지역예술가에게 5년간 창작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함

• 핀란드 역시 스웨덴과 유사한 노르딕 복지국가모델로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음

• 연금제도의 경우, 소득비례연금과 국가연금으로 구분되며, 소득비례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연금기여분에 대한 비례에 따라서 결정되는 연금으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함. 반면, 국가연금은 은퇴연령 이전에 근로기록이 없거나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연금기여분이 낮은 예술가들은 국가연금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비례실업수당, 기초실업수당, 노동시장보조금으로 구분되며, 보험료를 납부하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직할 경우, 납부액에 비례한 소득비례실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으며, 고용기록이 없거나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노동시장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급여, 자녀양육수당, 학업보조금, 질병으로 인해 근로소득을 상실한 경우 상병수당을 제공함

• 이러한 보편복지와 별도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예술가 보조금

법에 의해 창작활동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됨. 모든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선정시 최장 5년 동안 선정된 예술인에게 작품제작비가 아닌 예술활동에 대한 월급 개념으로 지원금을 지급함

- 한편 다른 북유럽국가들과 달리 예술가들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세혜택 주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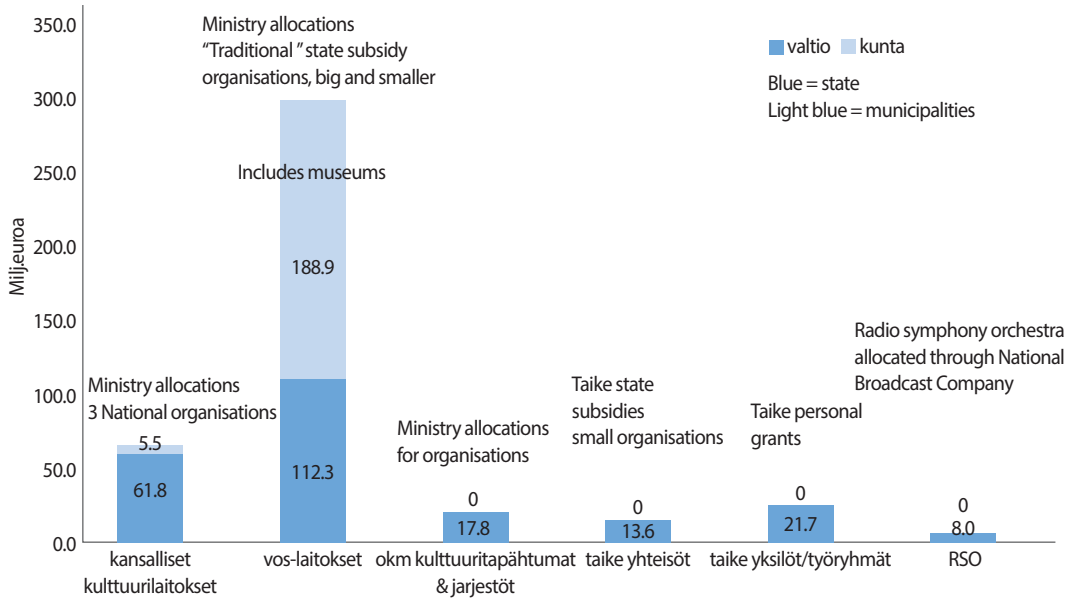

그림 2-20. 핀란드의 문화예술 지원구조(2017년 기준, 출처: TAIKE 직접 제공)

6) 미국

(1) 정부 정책

- 미국의 예술인에 대한 공적 지원은 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연방예술기금(NEA)이 관장하며, 보험, 연금 등은 예술가와 고용주들 사이의 사적 계약을 통해서 이뤄짐

- NEA의 주요 정책으로는 미국 내 예술단체들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와 지역별 예술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금의 일부를 이관하여 지역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외에는 예술 교육이나 국제 협력, 미국 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금 및 활동 지원 등이 있음

- NEA의 보조금 지원 방법은 예술가들 스스로 자신의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영역이나 학제를 선택하고,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여, 선정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추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

(2) 사적 지원 (노동조합 등)

- 미국에서 사적 영역에 기반한 복지는 복지 정책의 주요한 축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예술분야에서도 확인될 수 있음. 사실상 정부차원의 예술인 지원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길드(Guild)와 유사한 형태의 산별노동조합이 발달하였고, 노사가 만든 기금을 통해서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었음

- 미국에는 각 예술 분야 별로, 다양한 예술가 조합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미국배우-TV 라디오 연기자 조합(SAG-AFTRA), 미국작가노조(WGA), 미국음악인총동맹(AFM) 등이 있음

- 가입자격은 각 조합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해당분야에서 일정 기간 활동하고 그에 대한 수입을 얻는 예술인은 조합비를 내고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은 조합비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회보험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 맞는 특수한 보장보험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며, 이권 확대를 위한 로비활동에도 투자됨

7) 캐나다

- 캐나다의 예술가지원제도는 '예술가 지위법'(Status of the Artist Act)에 기반하고 있음. 이 법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술인 지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표현, 결사의 자유, 조합 결성의 권리 등), 다른 하나는 자영 예술인 협회와 연방 프로듀서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예술가 지위법(Status of the Artist Act)'은 1992년 세계 최초로 지정된 예술인을 위한 복지법이며, 자영예술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목적을 지님. 예술가지위법은 세계 최초로 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예술인과 제작자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기도 함

- 그러나 캐나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일반 직업군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연히 활동하고 소득이 있는 예술가들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즉 예술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정과 별개로 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8) 시사점

- 국가에 따라서 예술가에 대한 인식과 지원체계는 상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전업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미국과 같이 국가가 아닌 길드나 사적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례도 존재

- 예술인에 대한 지위 규정과 물적 지원은 해당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인식과 합의에 기반 해야 하며, 문화예술산업의 특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영역이 하나의 산업으로써 활성화되어 있고, 따라서 길드나 조합과 같은 사적 차원 중심의 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음

-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당위성만큼이나 이를 지탱할 수 있는 물적 기반 역시 고려되어야 함.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선진사례들에서도 상대적인 예산적 부담으로 그 지원 조건을 강화하거나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움직임이 존재하며,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예술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음

제3장

대전지역 예술인의 실태

1절 대전지역 예술인 설문 결과
2절 대전 예술인의 정책 요구

1절

대전지역 예술인 설문 결과

1. 대전지역 예술인 실태

1) 예술활동

• 현재 활동 예술 분야에서는 음악이 12.5%(10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무용 10.1%(81명), 연극 8.7%(70명) 문학(출판) 9.6%(77명)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다만, 건축과 영화 분야가 각각 0.5%(4명), 2.9%(23명)로 상대적으로 수가 적음[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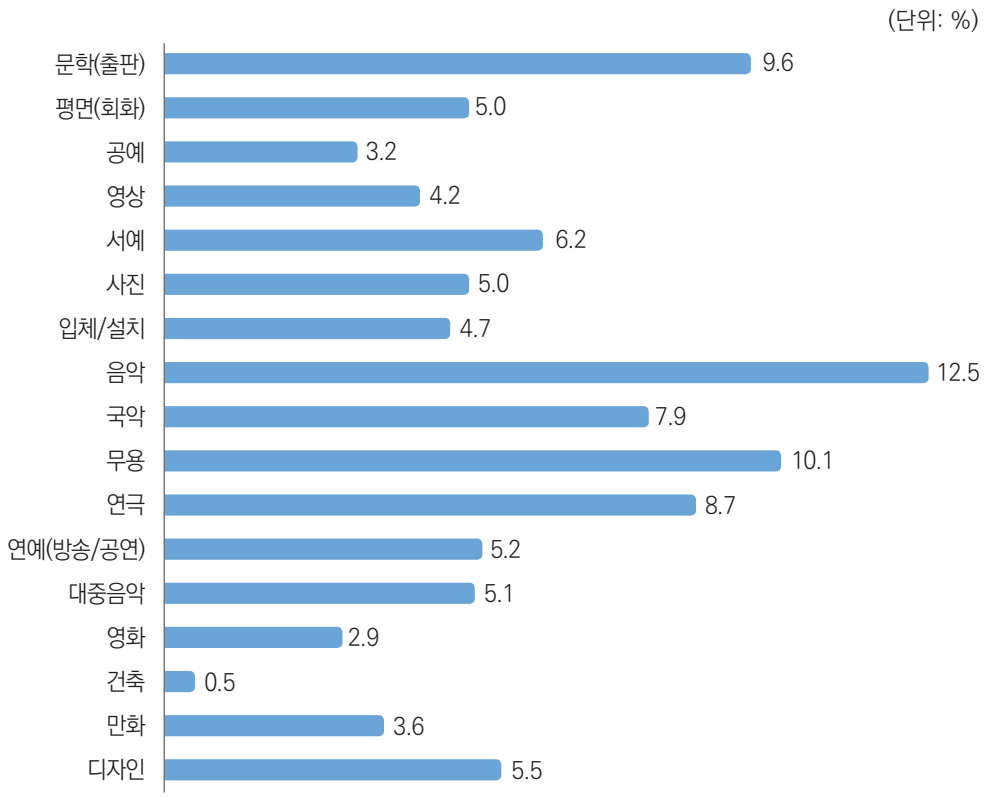

그림 3-1. 현재 활동 예술 분야

6)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평면, 입체, 영상, 디자인이 모두 미술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활동 예술 분야에서 미술(25.4%),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 국악, 음악, 사진, 방송연예, 영화, 무용, 공예, 건축, 만화, 기타의 순으로 나타남

• 주로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 분야는 창작예술가(작가, 화가, 작곡가, 공예가, 사진작가, 감독 등)가 34.1%(25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실연예술가(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모델)이 31.1%(237명), 예술강사(학교, 문화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가 17.2%(130명), 문화기획자(커뮤니티아트, 문화사업 기획자 등)가 5.2%(39명) 순이었으며, 무대예술 기술 종사자(촬영, 음향, 조명, 의상 등)는 3.0%(23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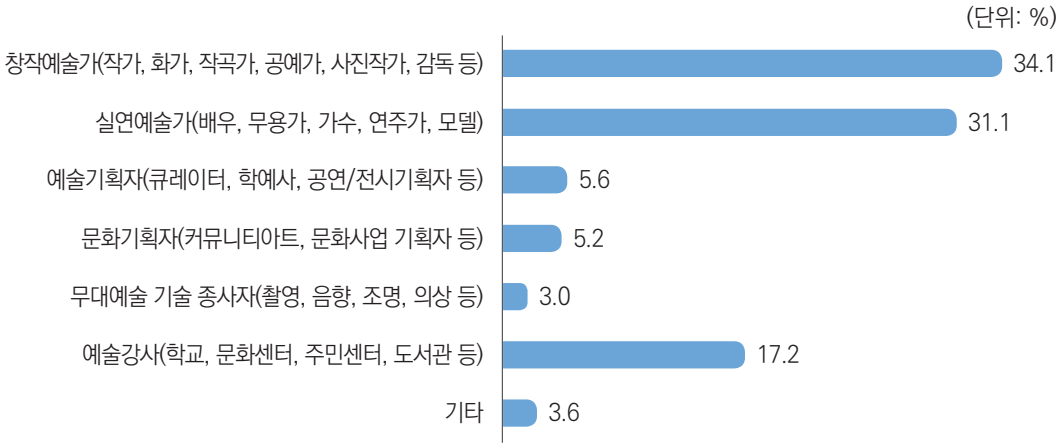

그림 3-2. 주로 종사하고 있는 예술활동유형

• 2018년 기준으로 주 활동분야 참여횟수는 1~5회가 41.8%(239명)로 가장 많고, 이어 16회 이상이 23.3%(133명), 6-10회가 17.3%(99명), 11-15회 9.8%(56명) 순이며, 참여횟수가 0회인 사람들의 비율은 7.9%(45명)로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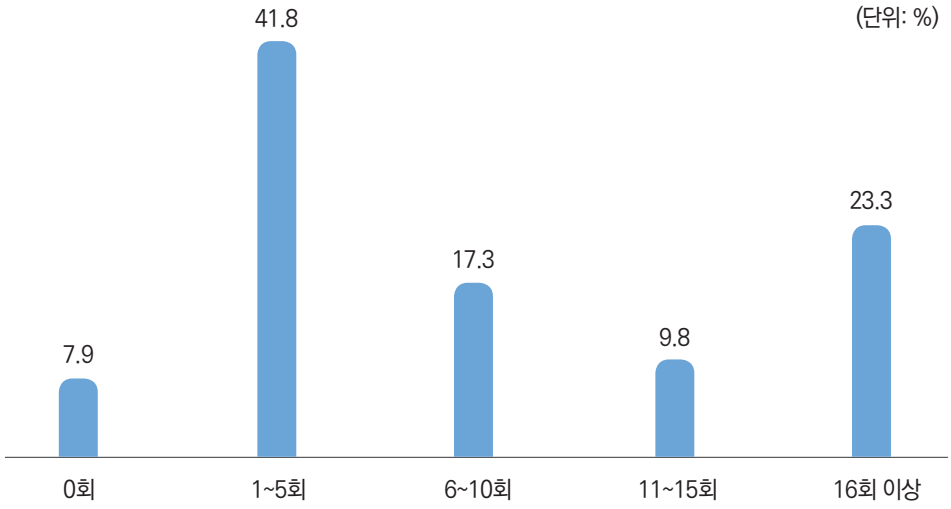

그림 3-3. 2018년 주 활동분야 참여 횟수

• 주 활동분야 참여일수(합계)는 30일 미만이 37.8%(216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90일 이상 27.6%(158명), 30-60일 미만 18.4%(105명) 순이었고 60~90일 미만이 16.3%(93명)로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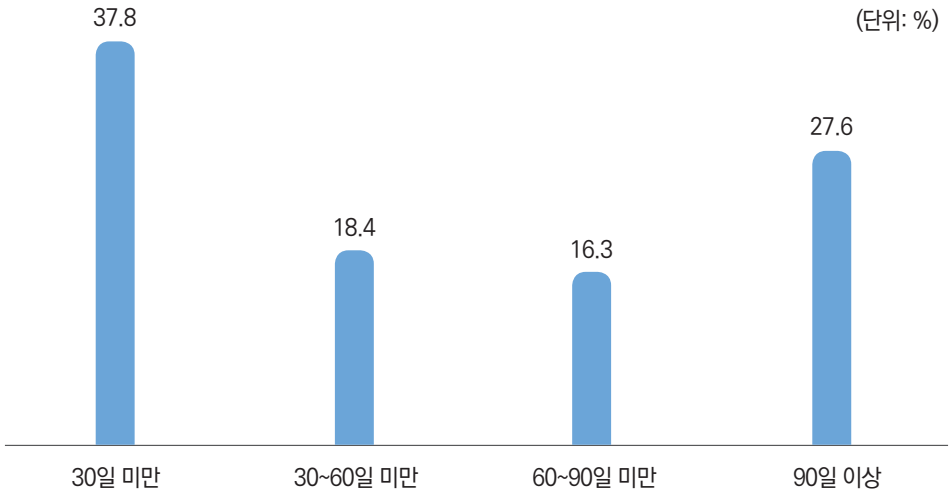

그림 3-4. 2018년 주활동분야 참여 일수

• 소속단체는 문화예술전문법인/단체가 26.4%(180명)로 제일 많고, 이어서 사단법인이 23.7%(162명)로 많았고, 소속단체가 없는 경우도 21.1%(144명)로 3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사회적기업이 2.6%(18명)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 협동조합이 3.5%(24명)로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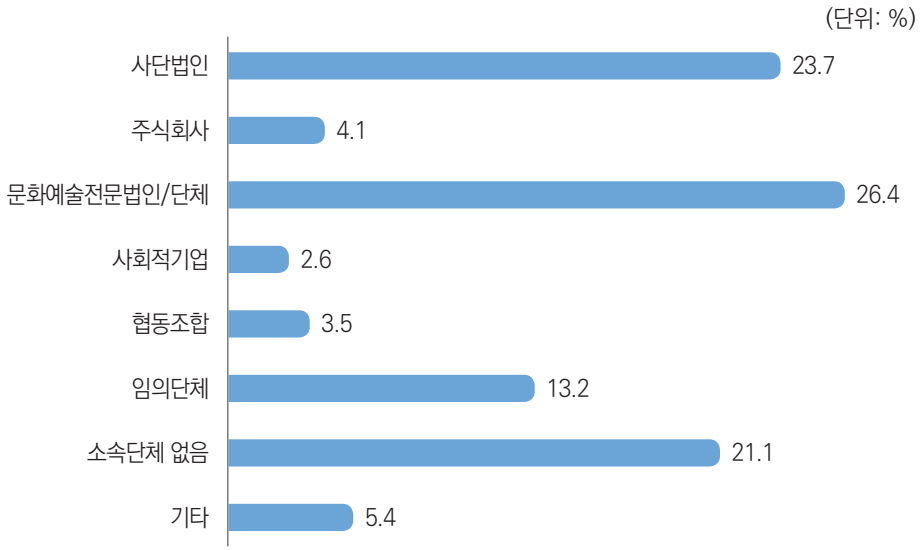

그림 3-5. 소속단체

• 2018년 기준 활동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경험여부는 있다는 응답이 46.2%(264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9.9%(171명)이었고, 지난 1년간은 없으나, 과거에 한 경험은 있다는 응답이 24.0%(137명)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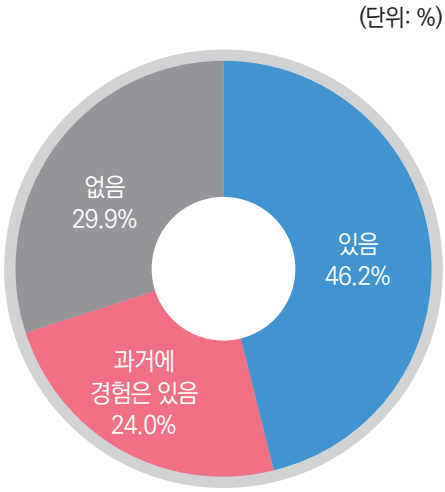

그림 3-6. 2018년 기준 활동예술분야 관련 자원봉사 경험여부

•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6.7%(496명)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13.3%(76명)보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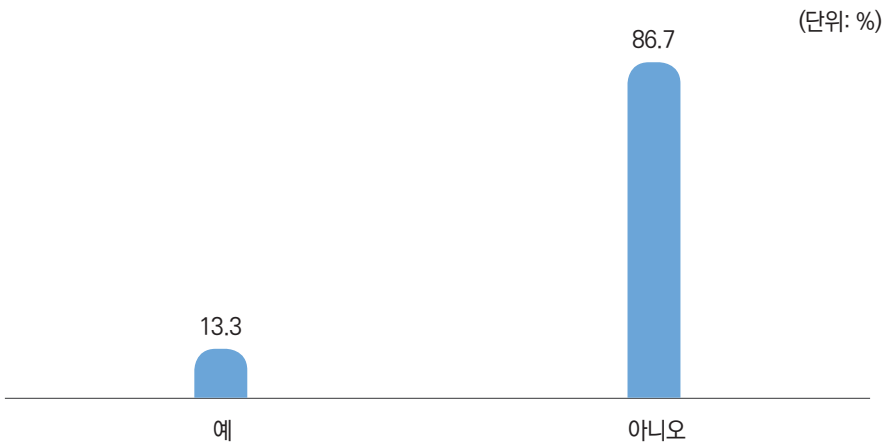

그림 3-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국가공인) 취득 여부

• 2018년 기준으로 문화예술 교육활동 종사여부는 '예'라는 응답이 51.9%(297명)로 '아니오'라는 응답 48.1%(275명)보다 3.8%(22명)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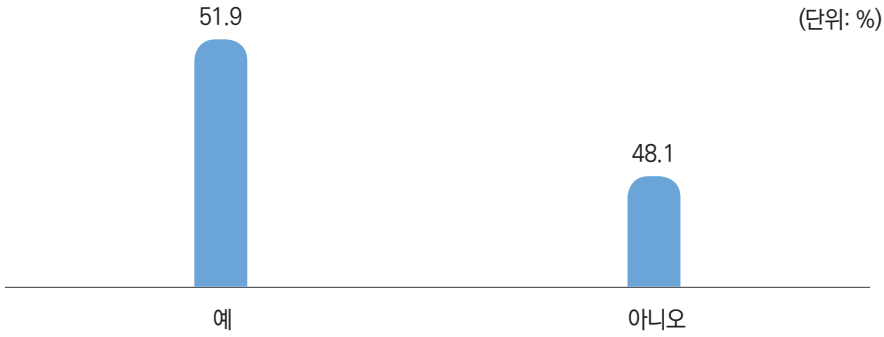

그림 3-8. 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여부

• 개인 창작공간(작업실) 보유여부에서는 창작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62.4%(357명)로 가장 많았으며, 있는 경우에도 거주공간에 별도공간이라고 한 응답이 23.1%(132명)로, 거주공간과 분리된 별도공간을 보유한 경우인 14.5%(83명) 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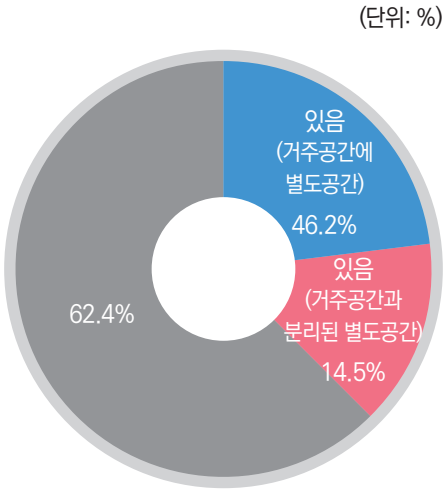

그림 3-9. 개인 창작공간(작업실) 보유여부

2) 생활복지

• 거주자 유형은 독립된 가정(본인+배우자/자녀)이 50.3%(288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혼자(1인 가구)가 25.0%(143명), 부모와 생활(본인+부모)하는 경우 19.6%(본인+부모), 동료와 생활(본인+동료)이라는 응답 3.8%(22명)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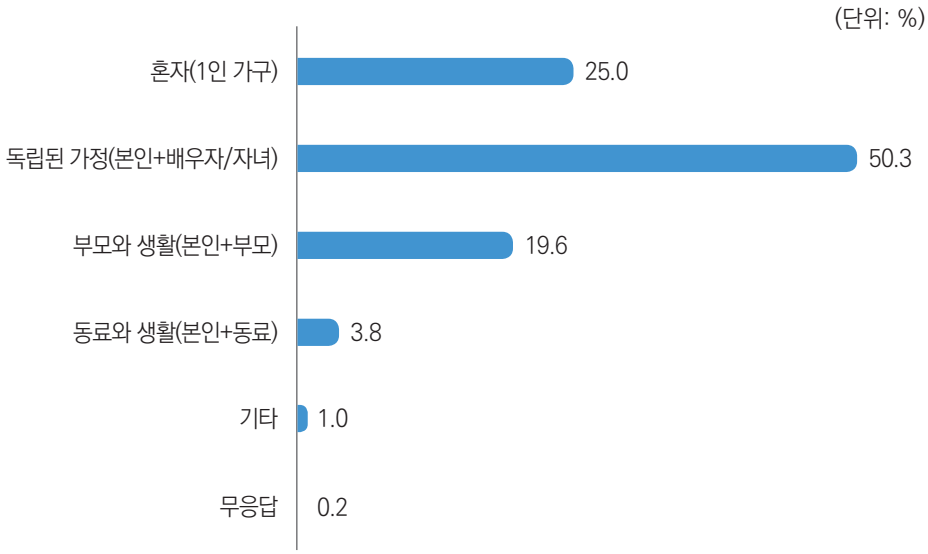

그림 3-10. 거주자 유형

• 거주 유형은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89.2%(510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공동체주택(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이 5.9%(34명), 작업실에 부속된 방 2.3%(1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시원/여관 등의 임시거처나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경우도 각각 0.9%(5명), 0.2%(1명)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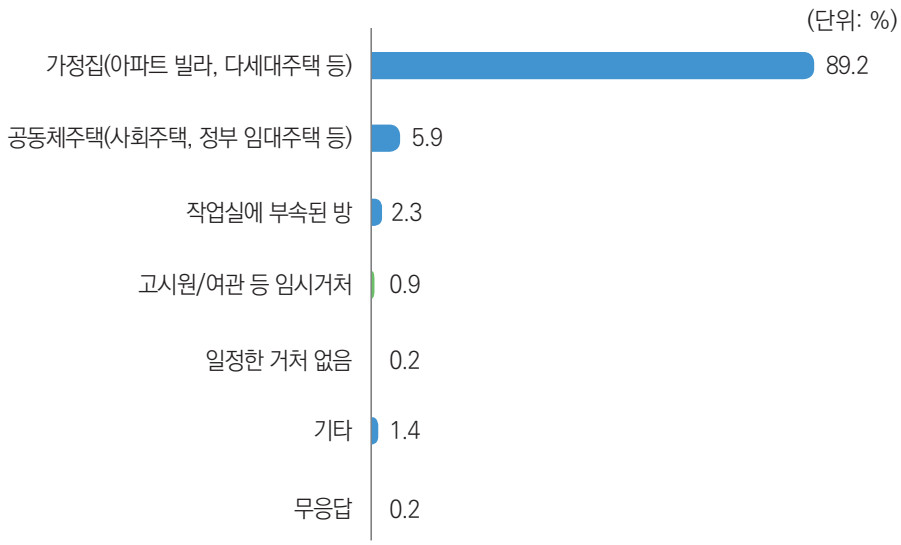

그림 3-11. 거주 유형

• 거주 조건에서는 자가가 55.1%(315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임대 월세가 25.7%(147명), 임대 전세가 17.7%(101명), 기타 응답자는 1.4%(8명)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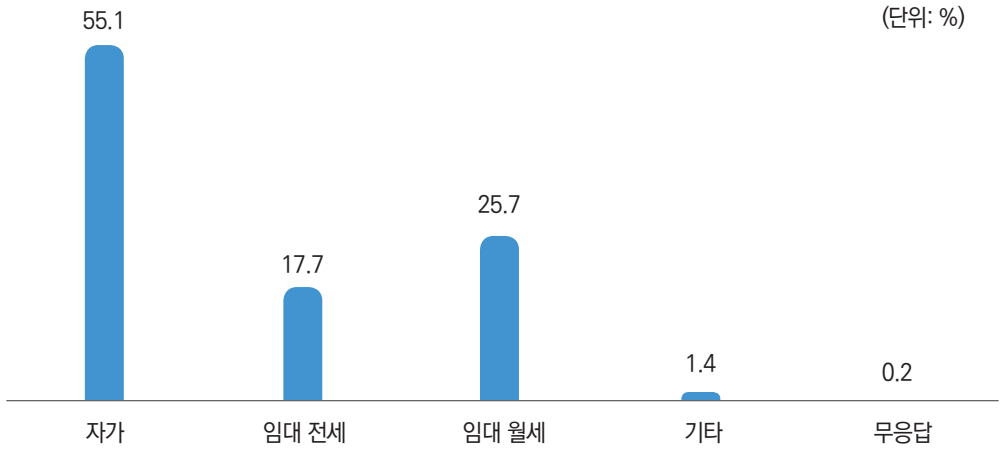

그림 3-12. 거주 조건

• 월평균 개인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28.8%(16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00만원 미만이 20.5%(117명), 200~300만원 미만이 19.1%(109명), 300-400만원 미만 12.6%(72명), 없음이 10.7%(61명) 순으로 많았고, 400만원 미만의 응답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함

• 월평균 가구소득(동거인과 합산기준)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이 18.0%(103명)로 가장 높으며 300~400만원 미만이 17.7%(101명), 200~300만원 미만 16.6%(95명), 400~500만원 미만 11.5%(66명)순 이였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1.9%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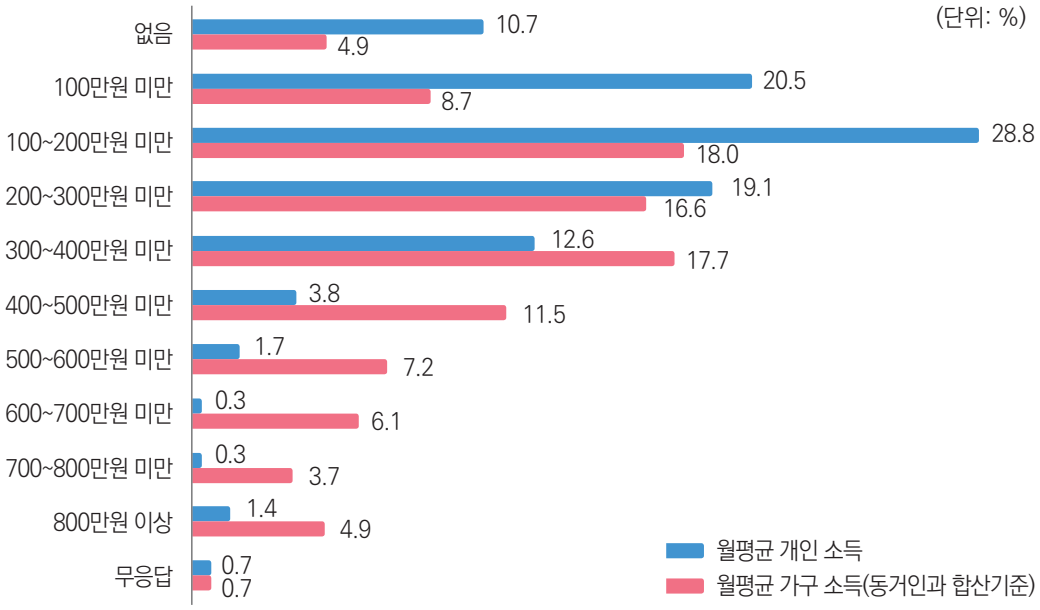

그림 3-13. 월평균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 비교

• 월 개인소득에서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는 30%미만이라는 응답이 29.7%(17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없음이 25.9%(148명)로 많았음. 반면 100%라는 응답도 18.9%(108명)로 3순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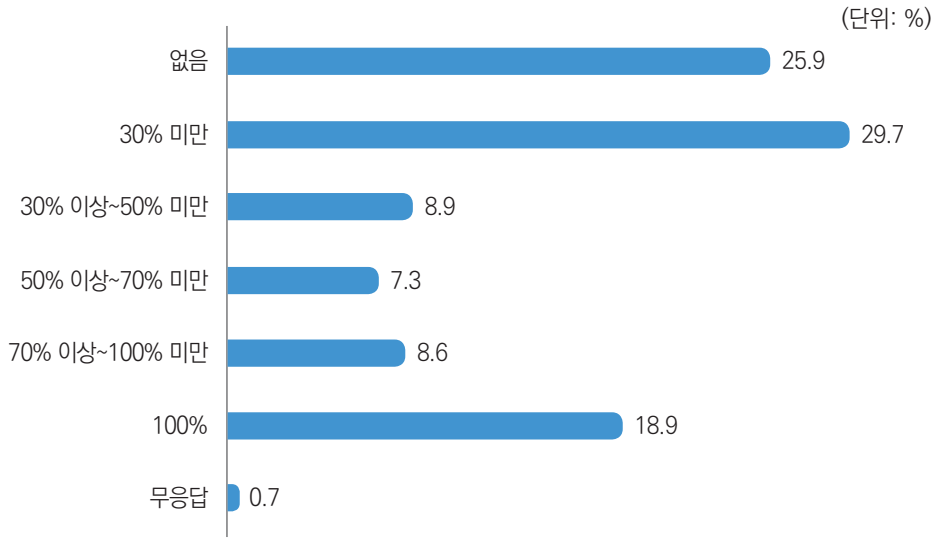

그림 3-14. 월 개인소득에서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2018년 기준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에서는 작품판매료와 창작료(전시참여비, 출연료, 작곡비, 연출료, 기획비 등) 그리고 고정 급여의 비중이 각각 22.6%(129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타 7.3%(42명), 원고료 6.3%(36명), 저작권 관련수입 4.9%(28명), 보조금 및 지원금이 4.7%(27명)으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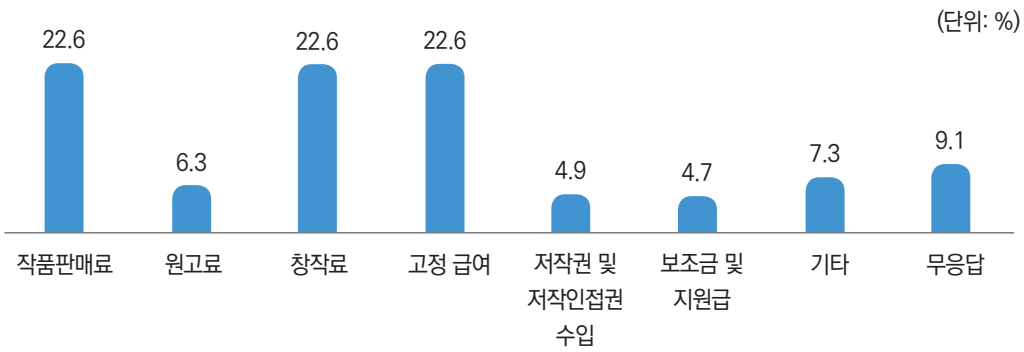

그림 3-15. (2018년 기준) 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원

•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기에 수입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서 예술 창작 활동은 2.01점(5점 만점), 생계 및 생활(경제)측면 에서는 1.91점(5점 만점)으로 예술 창작 활동 측면의 만족도가 다소 높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며, 두 항목 간에는 0.719의 강한 양적 상관관계가 존재함

표 3-1. 수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상관계수
예술 창작 활동 측면	2.01	0.719** (p<0.01)
생계 및 생활 (경제) 측면	1.91	

•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의 충당경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32.75(187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통한 수입이 30.6%(175명), 사설학원 및 개인레슨을 통한 수입이 22.2%(127명), 부채에 의존(은행, 친구, 동료 등)한다는 응답이 10.1%(58명), 기타 3.8%(22명)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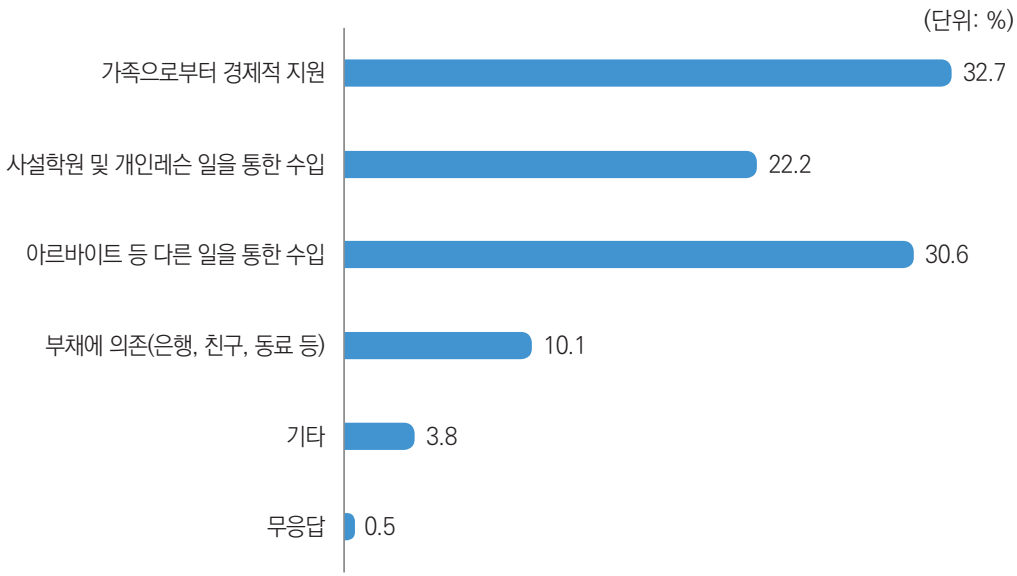

그림 3-16. 예술가 활동 시 부족비용 충당 경로

• 부채(빚) 여부는 없다는 응답이 50.7%(290명)로 있다는 응답인 48.8%(279명)보다 1.9%(11명)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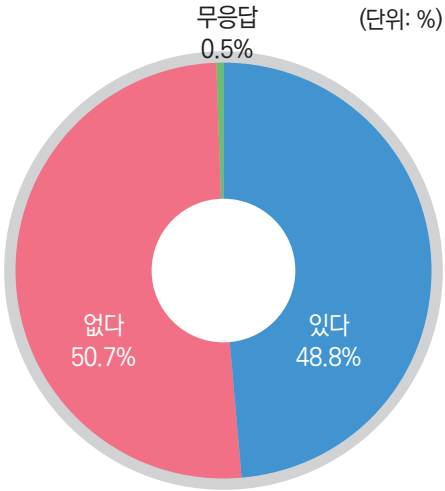

그림 3-17. 부채 여부

• 부채의 주된 원인에 대한 응답에서는 주거비가 25.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생활비 24.4%(68명), 교육비(본인) 15.1%(42명), 가족의 부채 11.8%(33명), 창업/사업비 11.1%(31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주거비 및 생활비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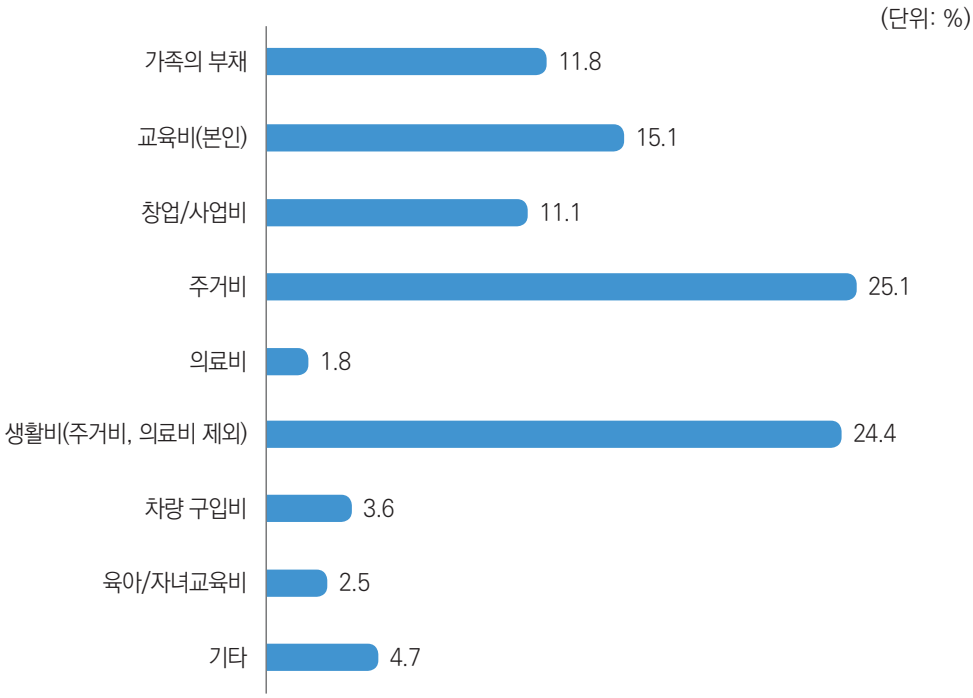

그림 3-18. 부채의 주요 원인

• 전반적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으로는 1, 2순위 합산 기준으로 42.9%(245명)의 응답자가 식료품비/외식비를 꼽았으며, 이이서 주거비가 42.5%(243명) 2순위, 교통비/차량유지비 17.9%(102명) 3순위로 생계와 밀접한 지출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예술활동비(작품창작비용)를 꼽은 응답은 1.0%(6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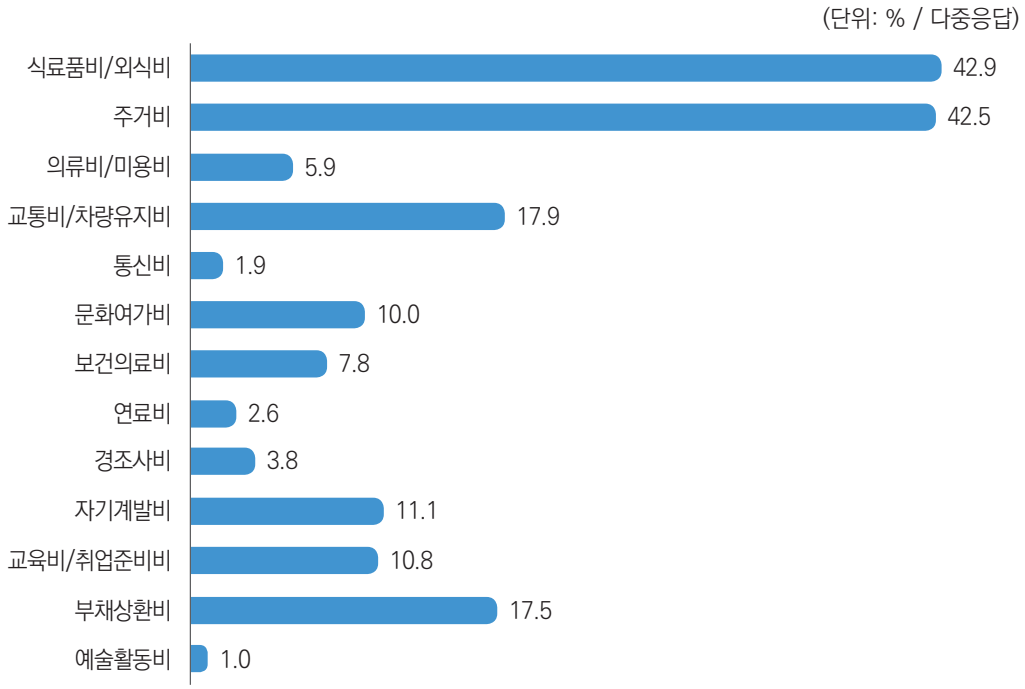

그림 3-19. 소비생활 중 부담이 큰 항목

• 4대 보험 가입여부 중 국민연금은 가입했다는 응답이 56.6%(324명)이었으며, 건강보험은 가입자 비율이 72.0%(412명) 고용보험은 31.5%(180명)이었음, 한편 산재보험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가입자가 10.0%(57명)인 반면 직장 산재보험은 26.2%(150명)으로 나타남[7)]

7)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공적연금 53.0%, 건강보험 93.5%, 산재보험 26.0%, 고용보험 25.1%로 나타나 대전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비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예술인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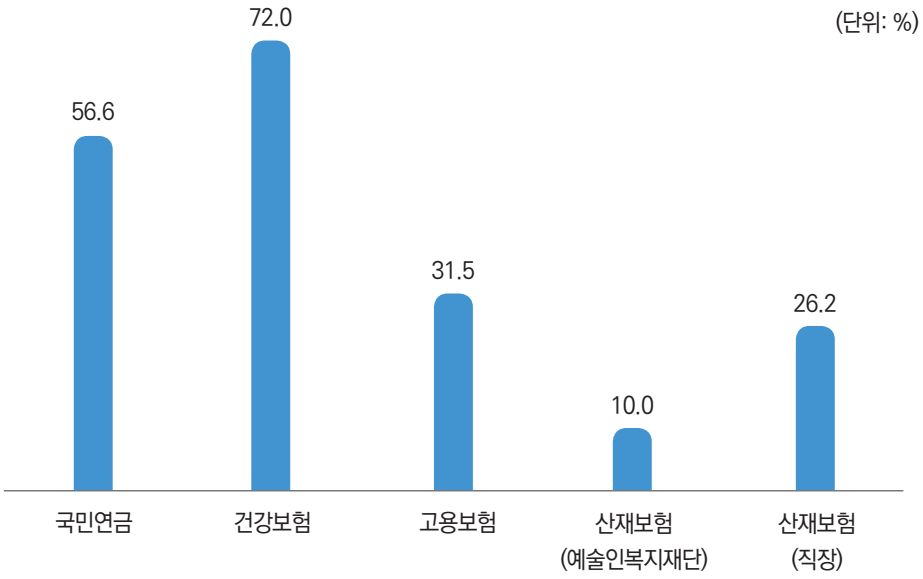

그림 3-20. 4대 보험 가입자 비율

• 실업급여 경험 여부에서는 18.4%(105명)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예술활동 과정 시 업무상 상해 경험 여부에서는 19.4%(111명)이 업무상 상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8)]

• 예술 경력 단절 여부에서 40.4%(231명)의 응답자가 예술 경력 단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9)]

8)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 경험'이 6.2%로 나타나 대전 지역 예술인들의 업무상 상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9)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예술 경력 단절 경험'이 23.92%로 나타나 대전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경력 단절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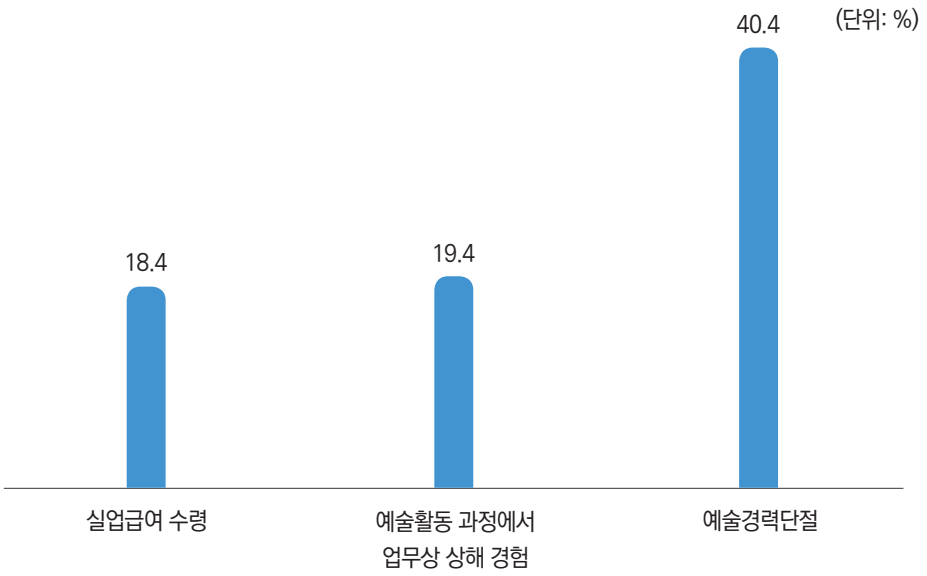

그림 3-21. 실업, 상해, 경력단절의 경험

• 예술활동 과정에서 상해 경험시 처리방식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64.9%(72명)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고용주측 보험으로 산재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는 19.8%(22명), 고용주측 개인 비용으로 보상 10.8%(12명) 순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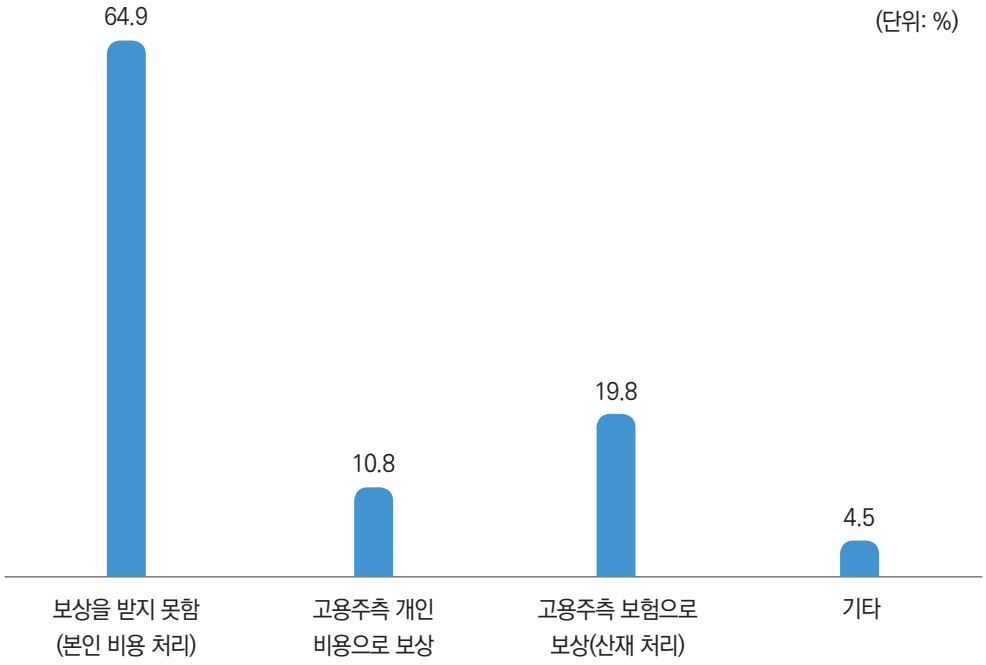

그림 3-22. 업무상 상해 경험시 처리방식

• 예술 경력 단절 이유를 살펴보면, 생계문제가 62.8%(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건강문제 13.4%(31명), 출산/육아 11.7%(27명), 학업 8.2%(19명) 순으로 나타났음[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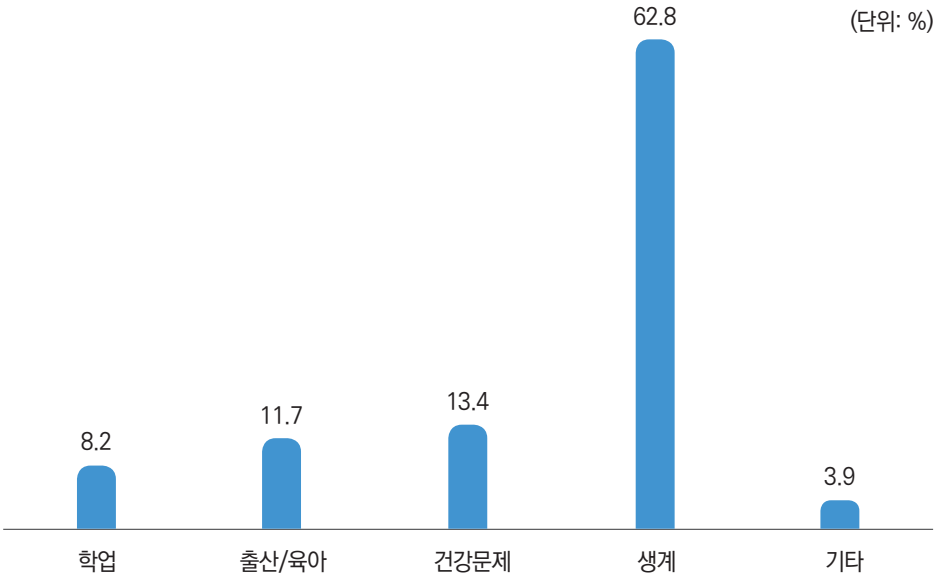

그림 3-23. 경력단절경험의 주된 요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장애 여부에서는 경증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4.4%(25명), 중증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응답이 1.0%(6명)로 5.4%(31명)의 응답자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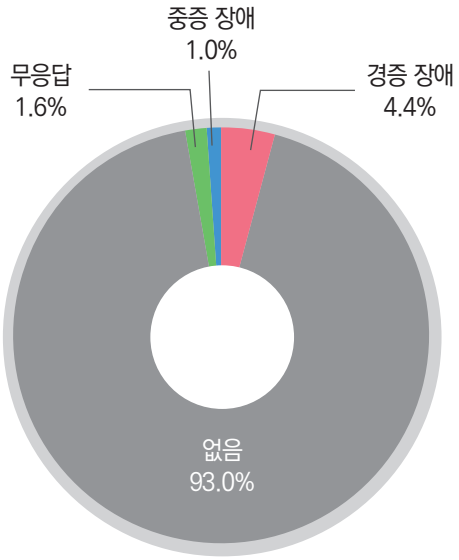

그림 3-2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10)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예술경력 단절 경험 이유로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68.2%, 질병이 7.3%, 출산/육아가 7.2% 순으로 나타나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건강문제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3) 정서 건강

- 지난 1주일 간 해당 정서상태의 빈도를 묻는 문항(4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에서는 전체 11개 항목의 평균이 1.77점으로 응답자들은 대체로 일주일에 가끔씩(1-2일간)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역코딩)'(2.22점), '잠을 설쳤다'(2.16점),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1.93점), '비교적 잘 지냈다(역코딩)'(1.92점) 항목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

(단위: 점 / 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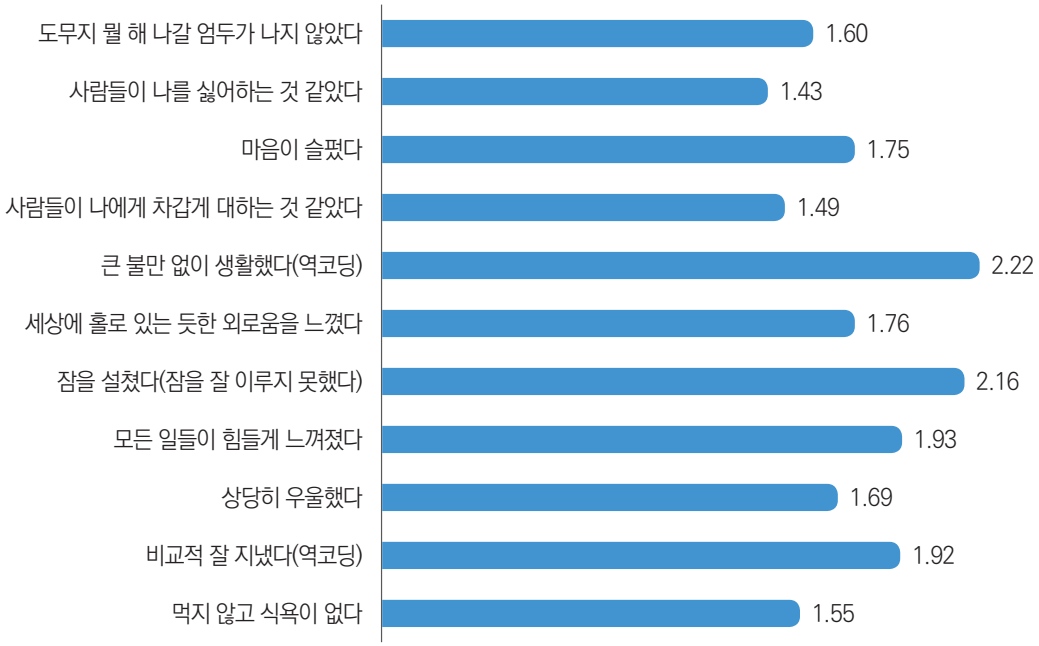

그림 3-25.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 요즘 느끼는 걱정거리(불안요인)로는 일자리가 19.8%(190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건강과 예술활동 어려움이 각각 18.4%(176명), 노후생활 14.9%(143명) 순으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자녀보육(양육)과 부모부양이 각각 2.4%(23명)과 2.7%(26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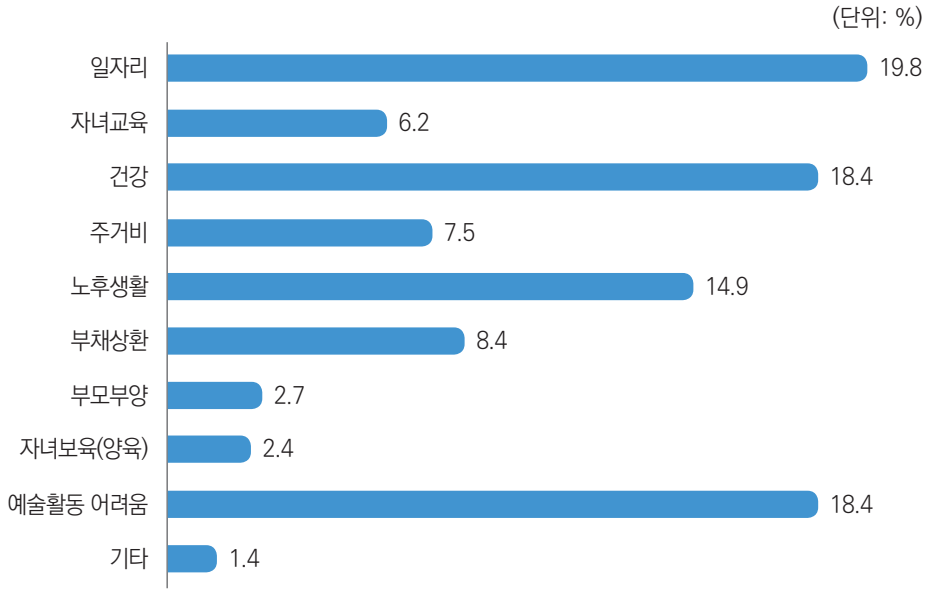

그림 3-26. 요즘 느끼는 걱정거리

• 문화예술활동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주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타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이 23.1%(234명)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및 복지수준'이 17.2%(174명),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간 부족' 11.5%(116명),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수준' 10.9%(110명) 순으로 높았음. 대체로 소득이나 처우, 인식 등 문화예술분야가 겪는 상대적인 격차가 주요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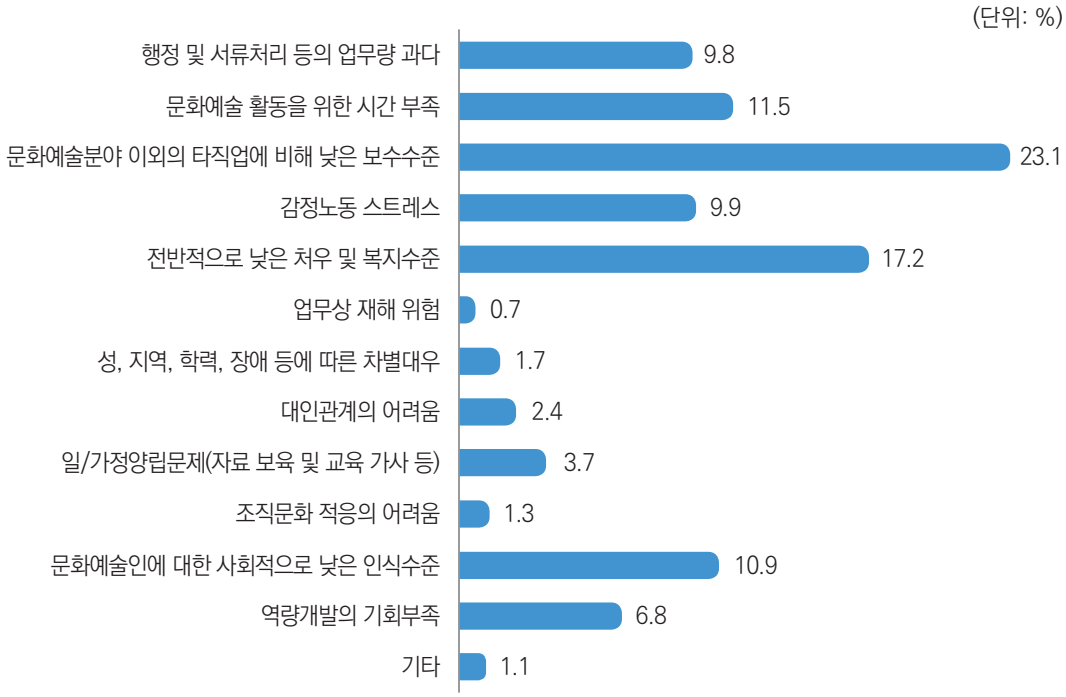

그림 3-27. 문화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요인

•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예술가로서의 직업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26점을 받은 반면, '예술가로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0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예술활동 내적인 만족도는 높지만, 그에 비해 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며,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득이나 처우, 복지 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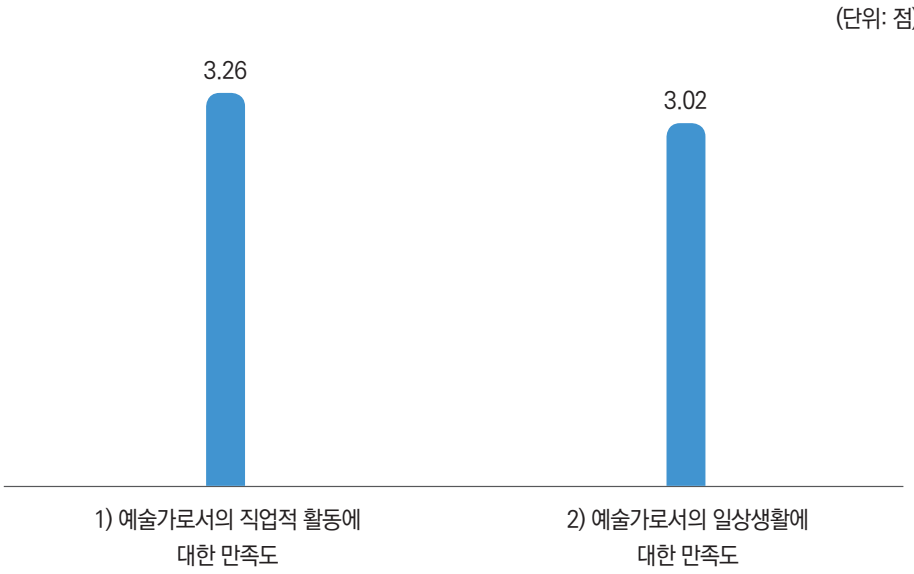

그림 3-28. 예술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 현재 건강상태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1%(235명)로 가장 많음. '보통'과 같이 중립적인 응답을 제외할 때, 부정적인 응답(28.6%)과 긍정적인 응답(28.9%)이 비슷한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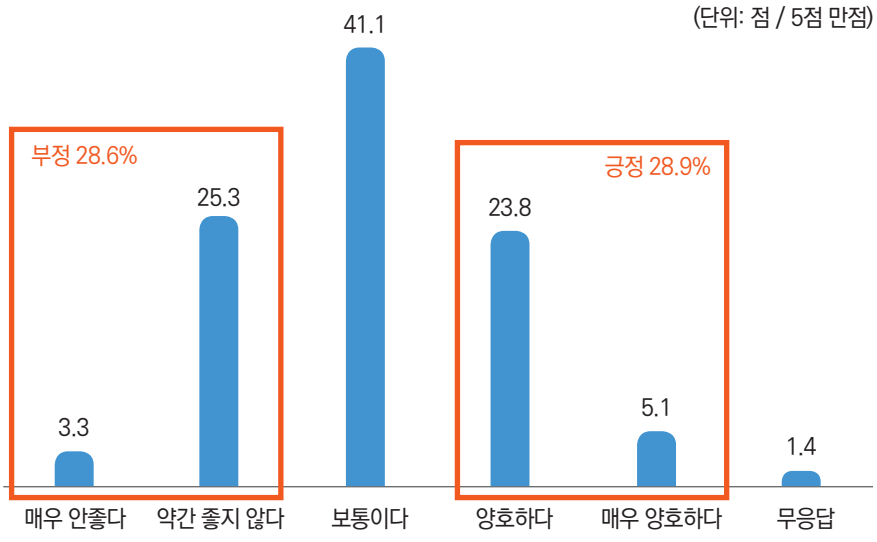

그림 3-29. 현재 건강상태

•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여부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68.5%(392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1개 질환 있다는 응답이 21.2%(121명), 2개 질환 이상 있다는 응답이 8.9%(51명)임. 설문대상 예술인의 30%가량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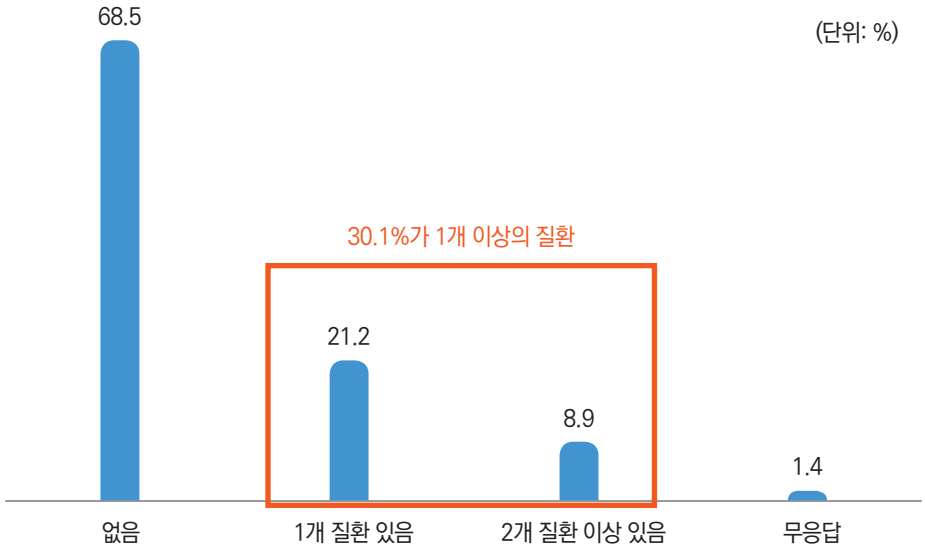

그림 3-30.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

• 최근 1년 사이 건강 악화로 작업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에서는 23.8%(136명)의 응답자가 건강 악화로 인해 작업활동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병의원 미방문 또는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31.8%(182명)가 병원에 가지 않거나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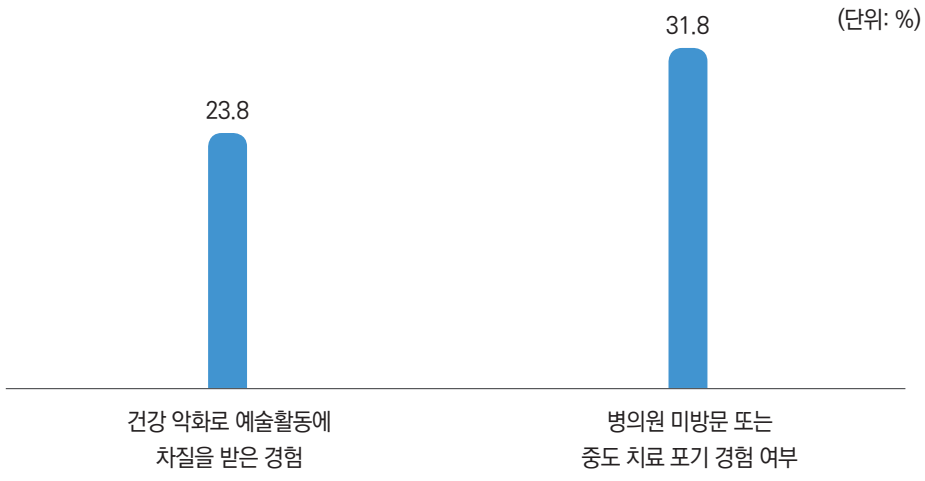

그림 3-31. 건강 악화로 작업활동에 차질을 받은 경험

• (미방문 또는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6.3%(66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이 25.8%(47명),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17.6%(32명), 일을 중단하면 수입이 줄어서 17.0%(31명) 순으로 높았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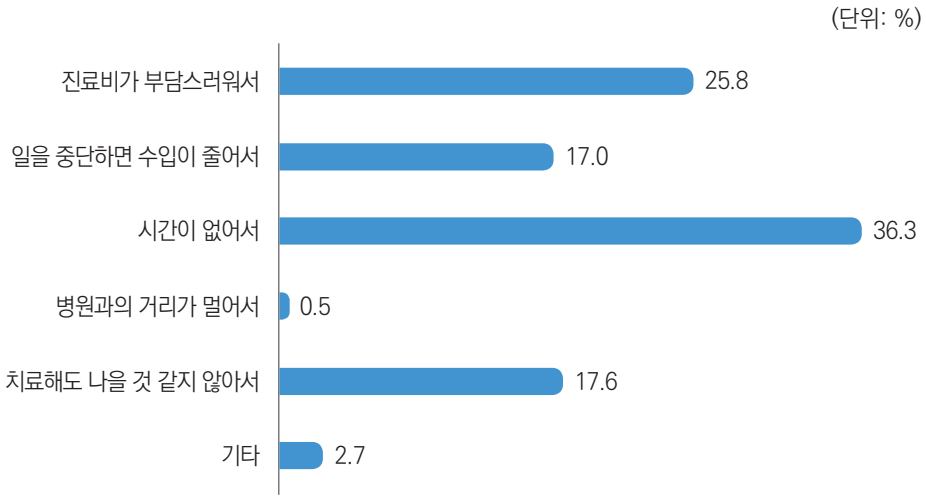

그림 3-32. 미방문 또는 중도 치료 포기 경험 시 이유

• 2018년 기준으로 의료기관 지출 의료비 부담 정도에서는 보통이 36.7%(210명)로 가장 많고, 다소 부담됨이 21.0%(120명), 매우 부담됨이 3.3%(10명)이었음. 전체적으로 24.3%의 응답자들이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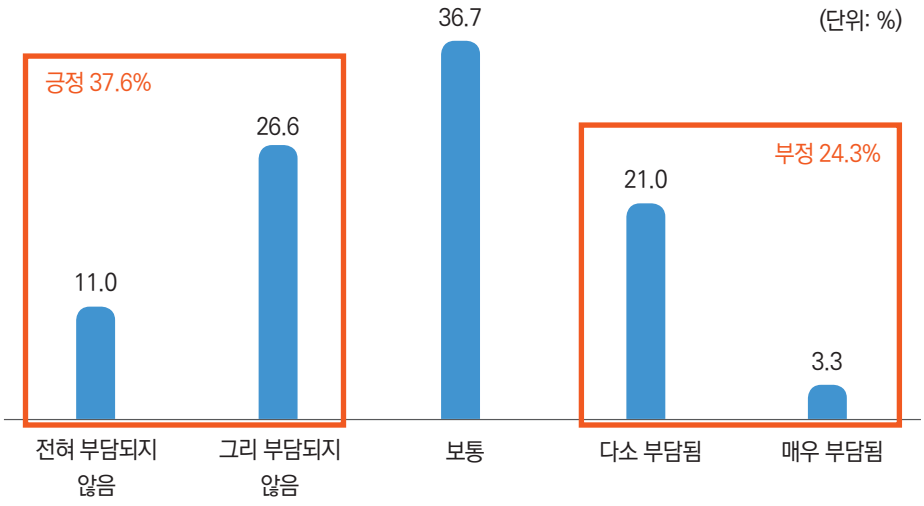

그림 3-33. (2018년 기준) 의료기관 지출 의료비 부담 정도

4) 예술노동과 고용형태

• 전업 예술인으로 예술분야 종사여부에서는 전업 예술인의 경우가 53.3%(305명)로 아니라는 응답보다 10.6%(61명)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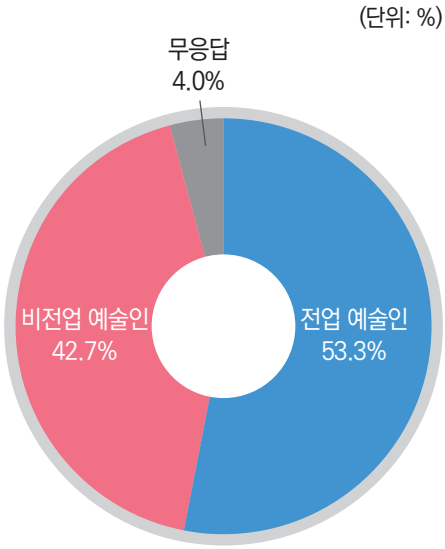

그림 3-34. 전업 예술인으로 예술분야 종사여부

• (전업 예술인 응답자)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리랜서(일용직 포함)가 41.0%(125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비정규직(계약직, 기간제) 31.8%(97명), 정규직 18.4%(56명), 고용주 6.9%(21명) 순으로 나타남. 72.8%가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로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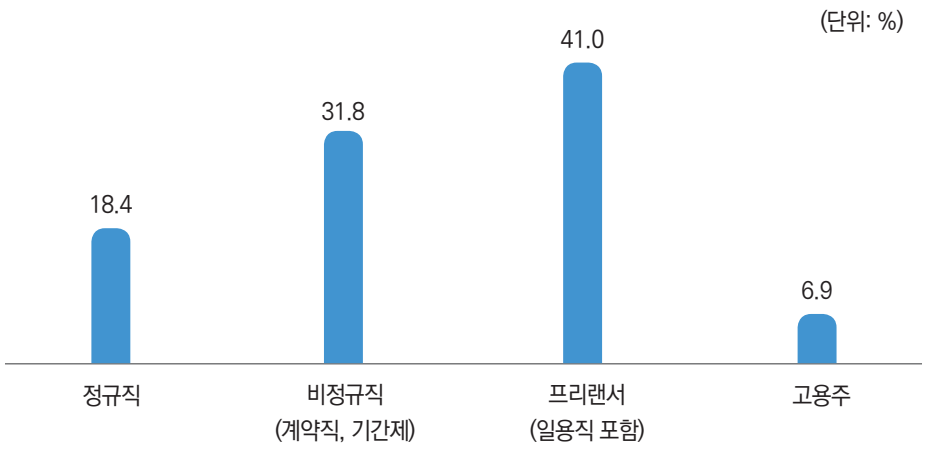

그림 3-35.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

• (전업 예술인인 아닌 경우)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에서는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이 35.7%(87명)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이 33.2%(81명)로 높음. 대체로 예술활동의 저소득, 불안정성이 다른 일자리를 갖게 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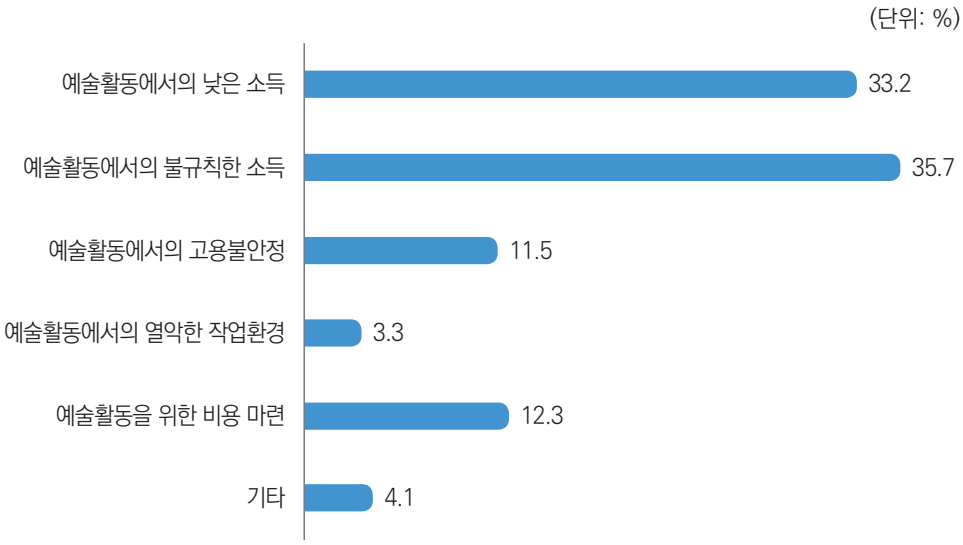

그림 3-36.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경우)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

• 예술활동 외 다른 일 경험 여부에서는 본인의 예술활동과 관련 직종이 53.0%(303명)이며, 본인의 예술활동과 무관한 직종도 43.0%(246명)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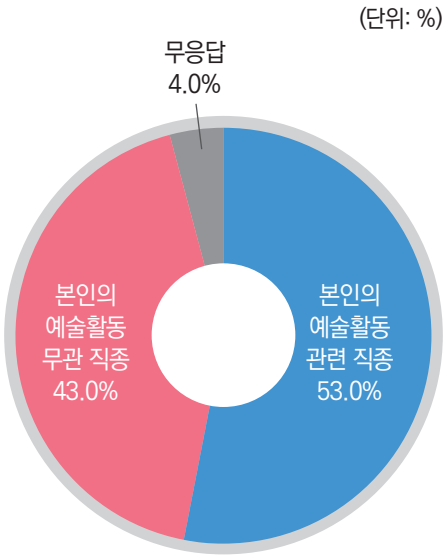

그림 3-37. 예술활동 외 다른 일 경험여부

• 2018년 기준 예술활동시 (서면)계약체결 경험 여부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51.6%(295명)로 있다는 응답 44.4%(254명)보다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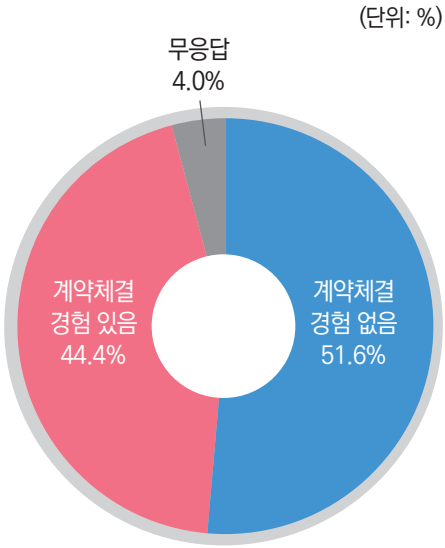

그림 3-38. (2018년 기준)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여부

• (문체부 개발/권장) 표준계약서 양식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8.1%(218명)로 제일 많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5.5%(203명)로 73.6%(421명) 응답자가 표준계약서 양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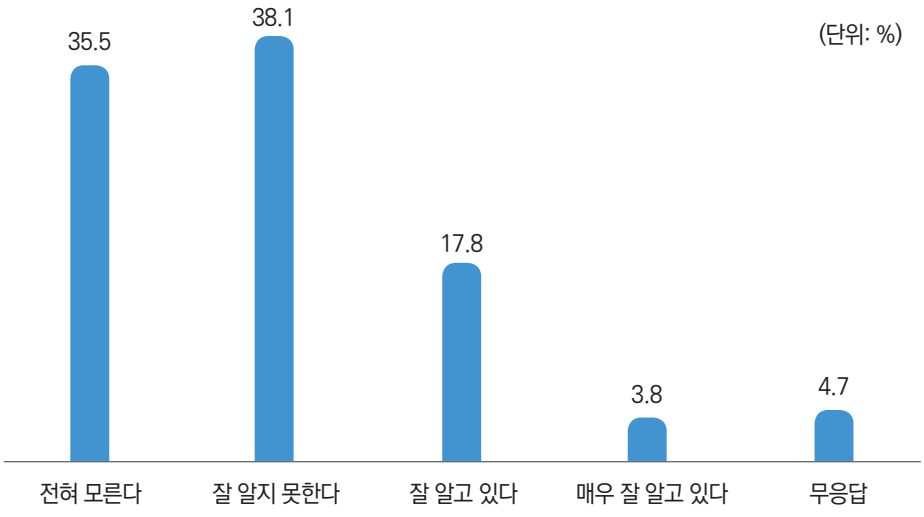

그림 3-39. 문체부 개발/권장 표준계약서양식인지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인지여부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0.9%(234명), 다음으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0.7%(233명)로 가장 많았음. 전체적으로 불공정행위신고 및 상담센터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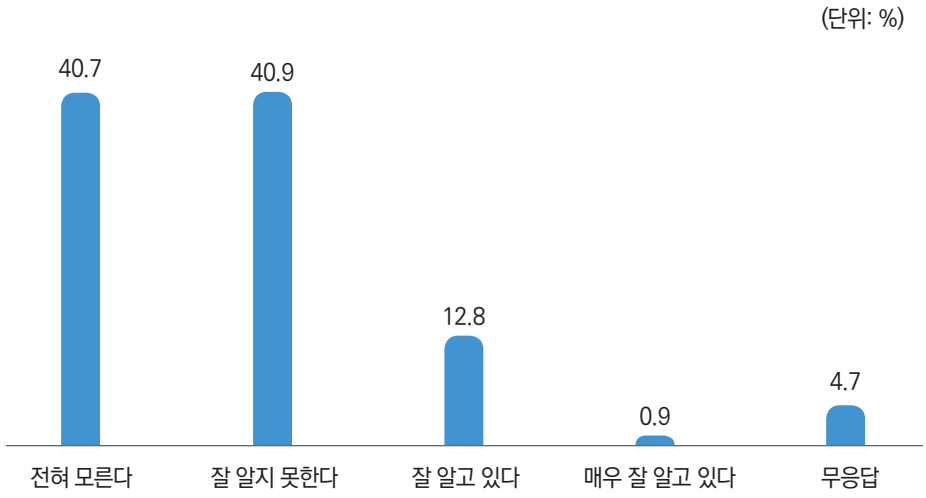

그림 3-4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인지여부

•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적정한 수익 배분'이 24.3%(13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금 지급이 늦어짐'이 20.8%(119명),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16.1%(92명), '예술창작 비용을 불리하게 공제' 14.3%(82명), '비인격적인 처우' 11.5%(66명),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 6.1%(66명) 순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부당대우 경험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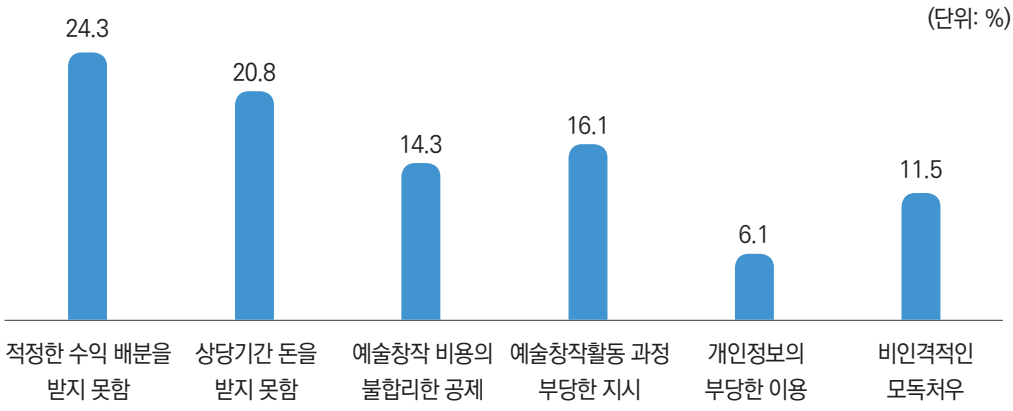

그림 3-41. 예술활동 과정에서 부당대우 경험

•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에서는 '일은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이 37.4%(214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는 응답이 31.6%(181명), '바로 그만둔다' 13.3% 순으로 높았던 반면,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0.8%(65명)에 불과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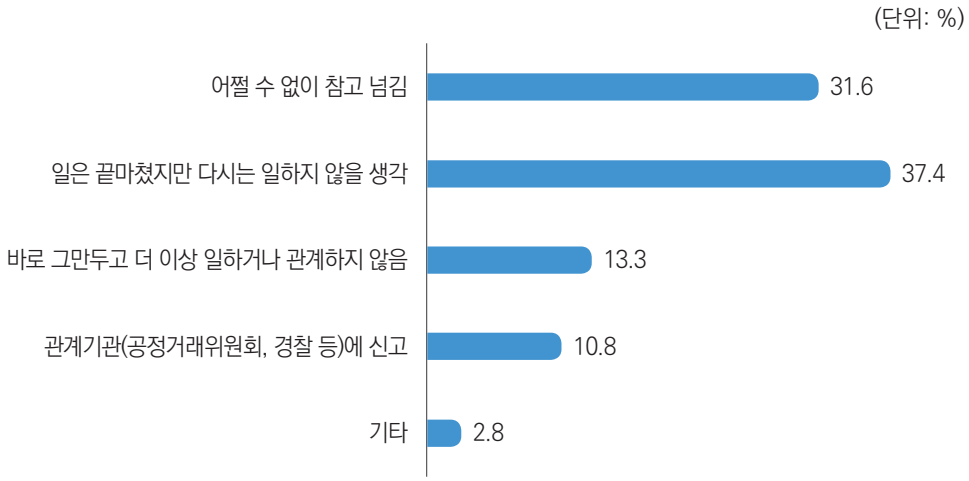

그림 3-42.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 국내 예술계가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제도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5.1%(152명)로 이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7.0%(91명)로 많음. 긍정적인 응답은 2.4%(8명)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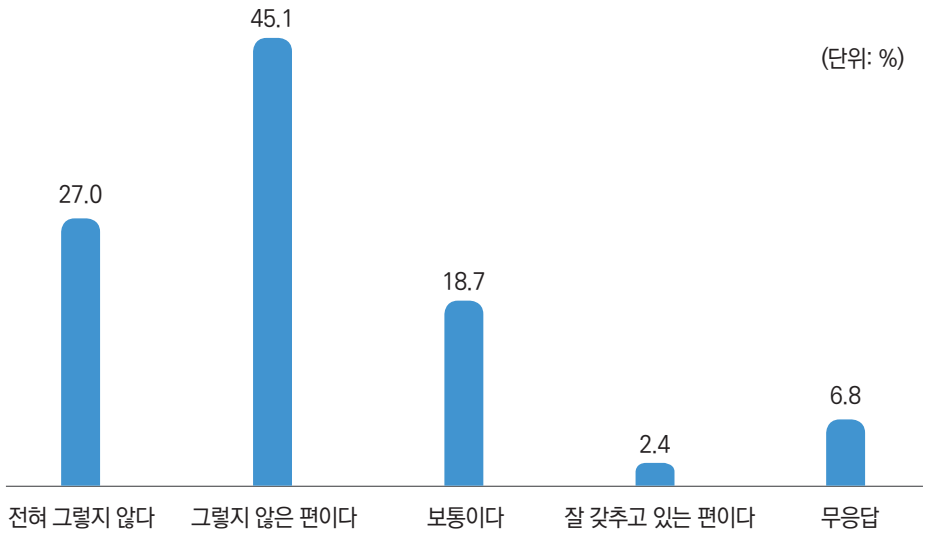

그림 3-43. 국내 예술계의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행위 조치를 위한 제도 평가

•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 및 여성차별의 수준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성폭력의 수준에 대해서 묻는 항목들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26점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예술교육이나 연습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2.35점,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2.32점,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의 성폭력' 2.12점으로 같은 지위보다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평균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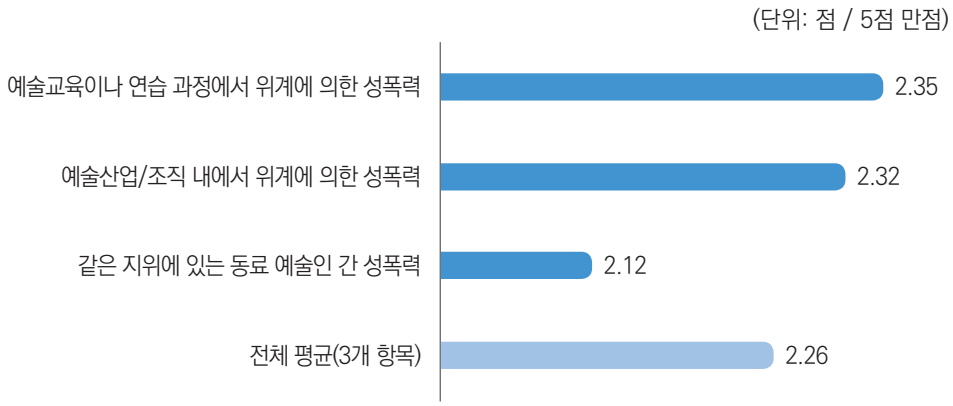

그림 3-44. 예술계 내부의 성폭력 실태

• 여성차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문항들의 평균은 2.24점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교육/훈련/연수기회의 기회 차별' 2.27점, '예술문화산업/조직의 채용 차별' 2.31점, '창작활동 지원 수혜 차별' 2.19점, '창작물 판매 기회와 수익배분 차별' 2.19점으로 채용에서의 차별을 묻는 항목의 점수가 창작활동지원 및 창작물 판매에서 오는 차별여부를 묻는 항목보다 높았으며, 이는 평균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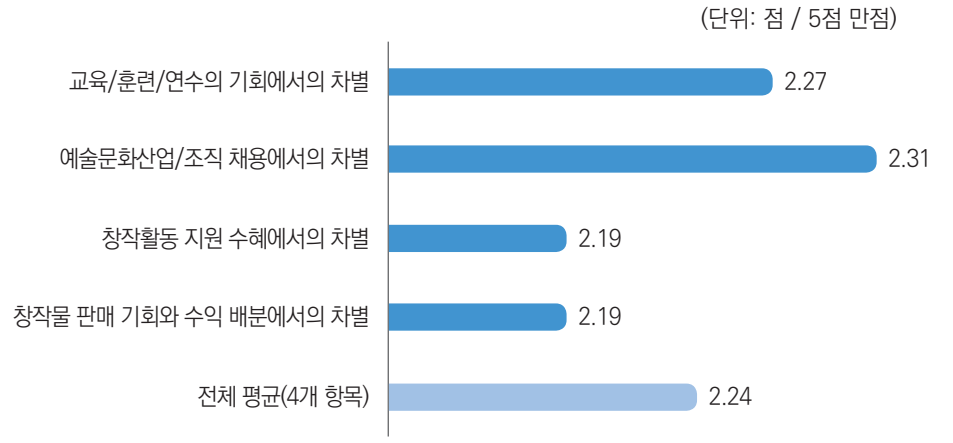

그림 3-45. 예술계 내부의 여성차별 실태

• 예술계 성폭력 방지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는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36.0%(206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가 27.8%(159명), 대전시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기구 운영 17.5%(100명),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12.8%(73명)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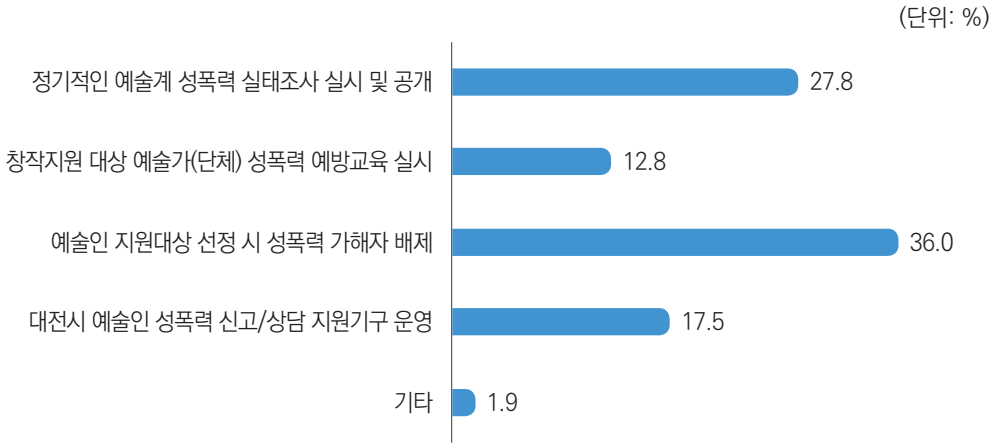

그림 3-46.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0.0%(286명)로 가장 많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5.1%(201명)임. 반면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0.1%(58명)와 0.7%(4명)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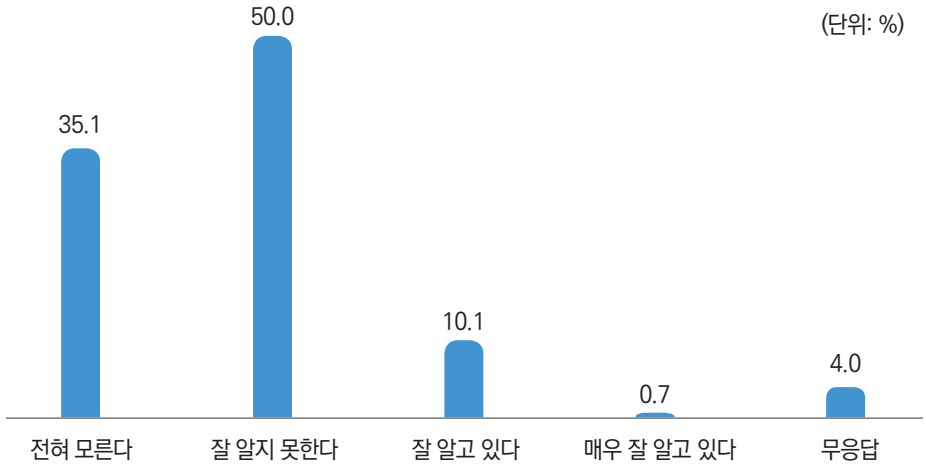

그림 3-4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 인지여부

5) 예술정책과 예술인복지정책

•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을 했다는 응답자는 27.4%(157명)인 반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67.1%(384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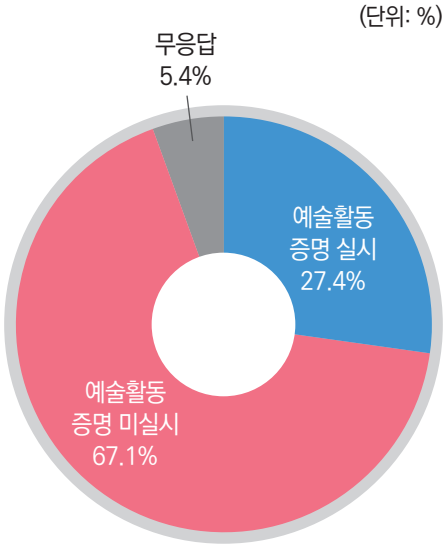

그림 3-48. 예술활동증명 신청여부

•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5.6%(2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11.7%(45명), '본인의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7.8%(45명), '예술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6.8%(26명),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 5.5%(21명)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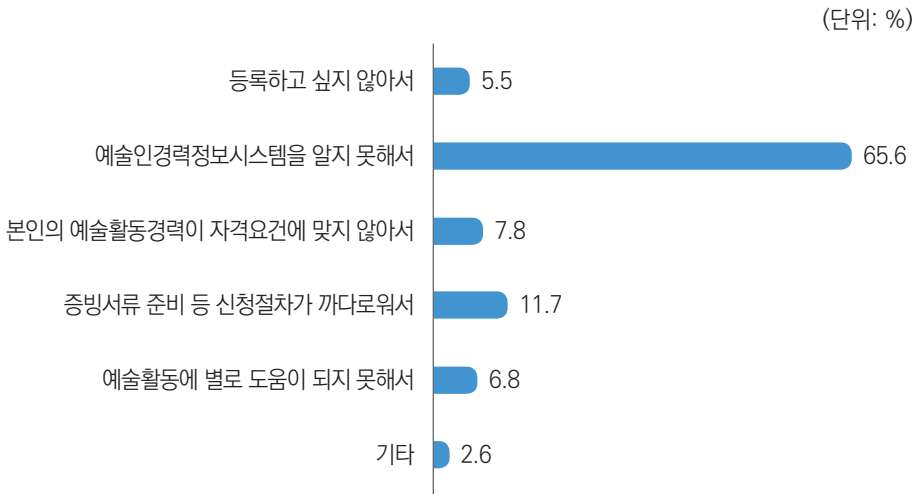

그림 3-49. 예술활동증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 2018년 기준 예술인복지지원사업 신청/수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예술인패스카드발급의 신청 및 수혜비율이 16.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공의창작비용지원사업의 신청 및 수혜 경험이 14.7%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공공의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13.3%, 민간의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8.4%, 공공의창작공간지원사업 4.5%, 예술인사회보험지원 3.0%, 민간의창작비용지원사업 2.6%, 예술인산재보험 2.3%, 민간의창작공간지원사업 2.1% 순이었음

• 전체적으로 예술인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수혜율이 높지 않으며, 창작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이 사회보험 및 산제보험 지원 신청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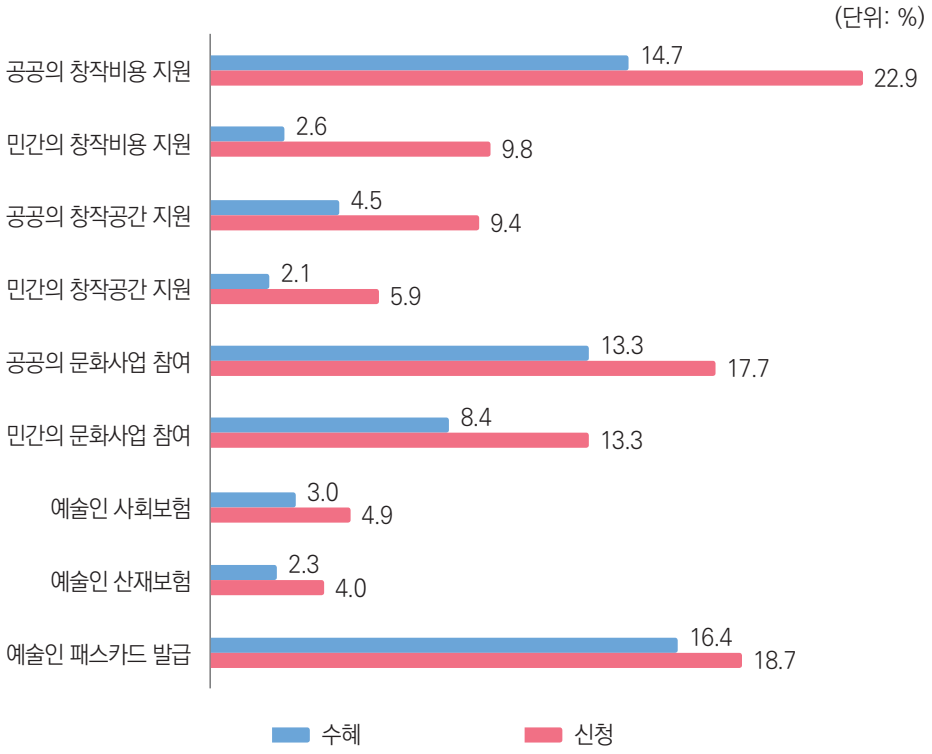

그림 3-50. 예술인복지지원사업 신청/수혜 비율

• 지원사업 미참여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몰라서가 51.7%(296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가 13.6%(78명),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11.2%(64명),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서 10.1%(58명),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4.4%(25명) 순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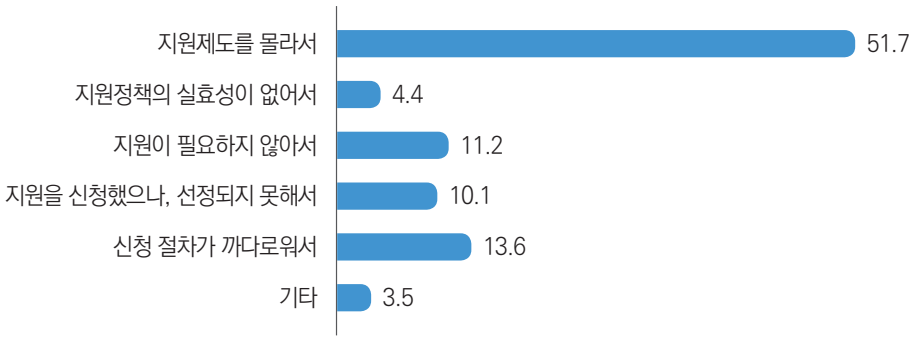

그림 3-51. 지원사업 미참여 이유

•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40점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가 2.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와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가 각각 2.53점, 예술활동정보획득이 용이하다 2.42점 순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신진예술가의 진입이 쉽다 2.33점, 예술지원사업 절차가 편리하다 2.31점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2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가 이루어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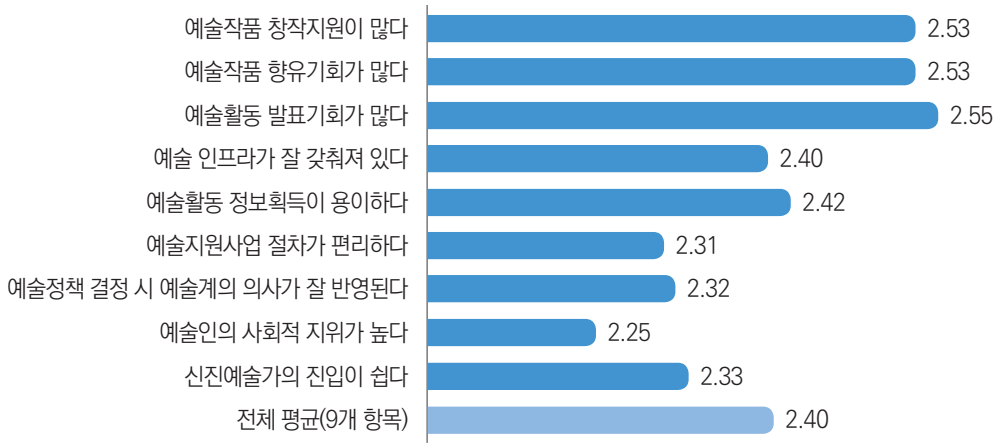

그림 3-52.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대전시가 펼쳐야할 역점 정책에 대해서는 예술가(예술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생활보조금 등)이 23.7%(236명)로 가장 높으며, 이어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22.8%(227명), 예술가(예술단체) 지원조례와 제도정비 17.2%(171명), 작품활동공간 시설 확충 10.8%(107명), 전문예술가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신진예술가 지원과 육성,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각각 6.9% 순이었고, 예술진흥 관련 문화재단의 기능 확대가 4.0%(40명)로 가장 낮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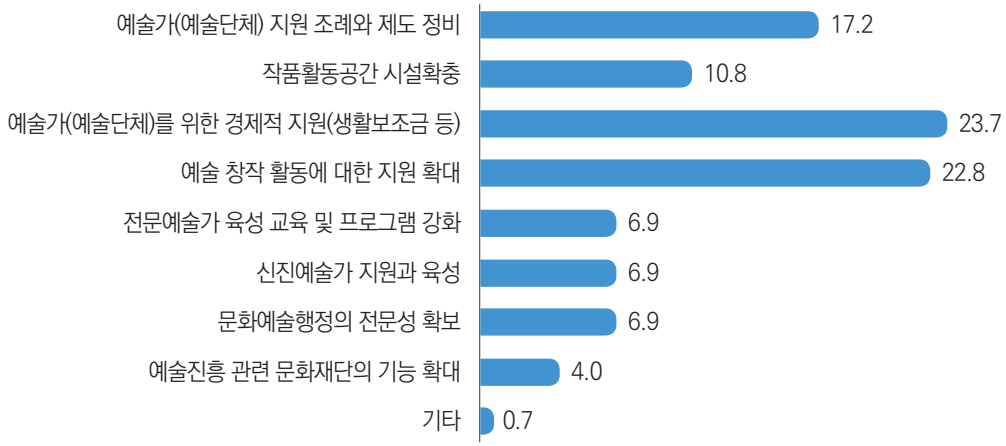

그림 3-53.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시 역점 정책

- 예술활동 지원사업 진행 기관 인지 여부에서는 대전문화재단이 23.7%(452명)로 가장 높으며 이어 대전예술의전당이 14.0%(267명), 대전시립미술관 11.9%(227명), 대전시립연정국악원 9.5%(182명), 대전평생교육진흥원 9.5%(181명), 이응노미술관 9.2%(175명) 순으로 높음. 반면 대전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는 2.5%(48명)로 가장 낮음

- 예술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전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지율이 낮으며, 예술전담기관이 아닌 경우는 그 수치가 더욱 낮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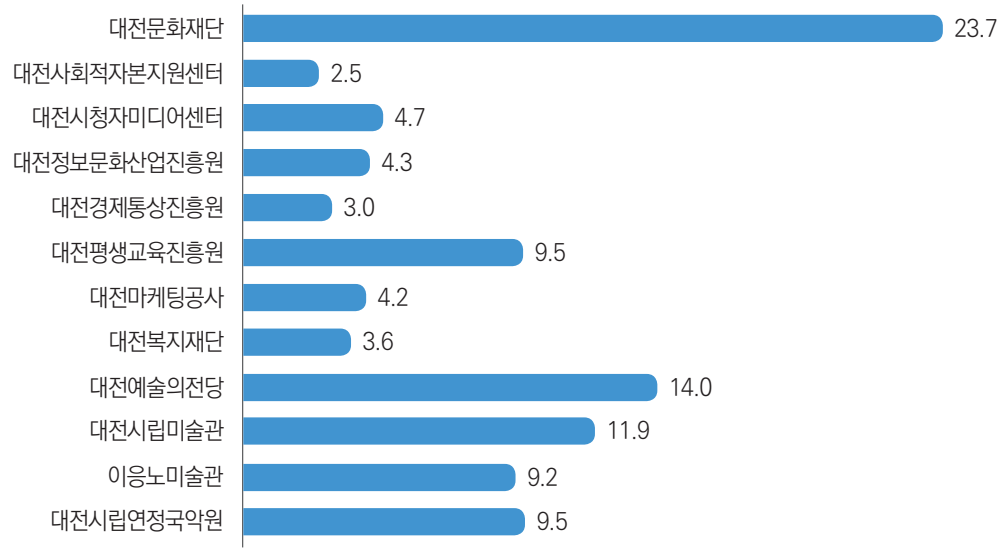

그림 3-54. 예술활동지원사업 진행기관 인지 여부

2. 대전지역 예비예술인 실태

1) 학업 및 진로

• 전공 관련 교과목 수강학점에서는 10~19학점 미만이 78.0%(273명)로 가장 많음. 10학점 미만 13.4%(47명), 19학점 이상 8.6%(30명)로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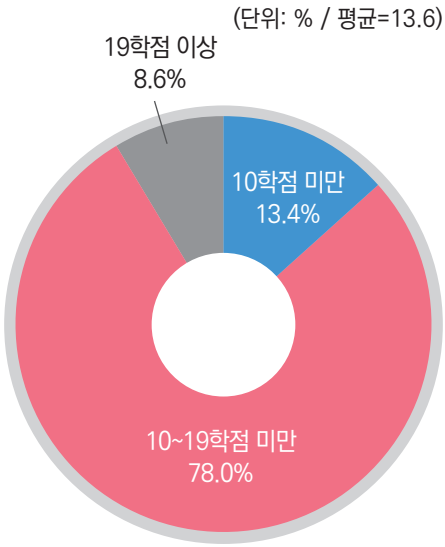

그림 3-55. 전공 관련 교과목 수강학점

• 예술 관련 실용교과목 수강 여부에서는 예라는 응답이 54.3%(190명)로 아니오라는 응답보다 8.6%(30명)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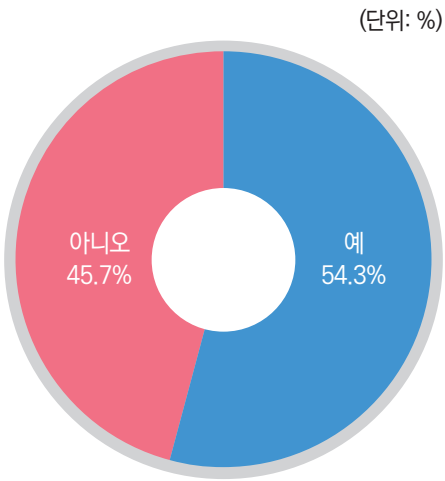

그림 3-56.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수강여부

• 예술 관련 실용교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43.7%(153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 31.1%(109명)에 비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3%(15명) 0.3%(1명)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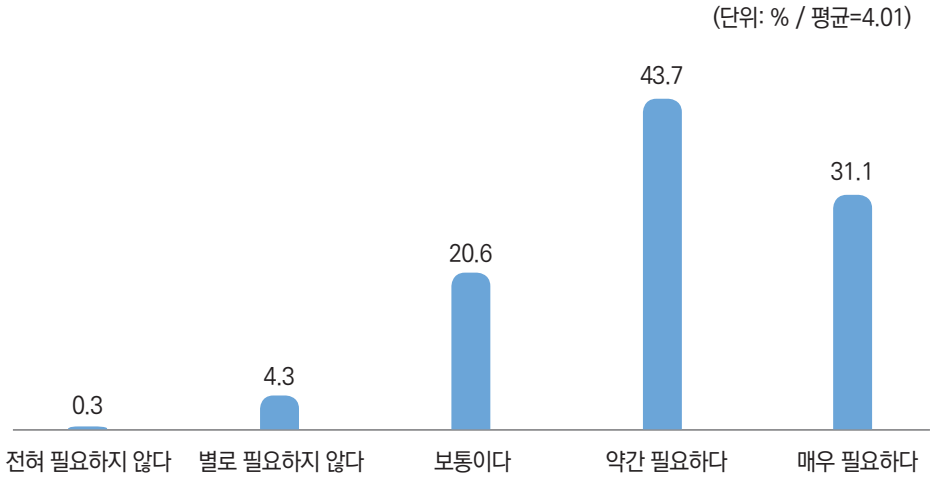

그림 3-57.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개설필요성

• 예술 관련 실용교과목 수강목적에서는 취업과 진로에 도움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43.7%(153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예술적 역량 강화 33.1%(116명), 기본적인 소양 강화 21.7%(66명)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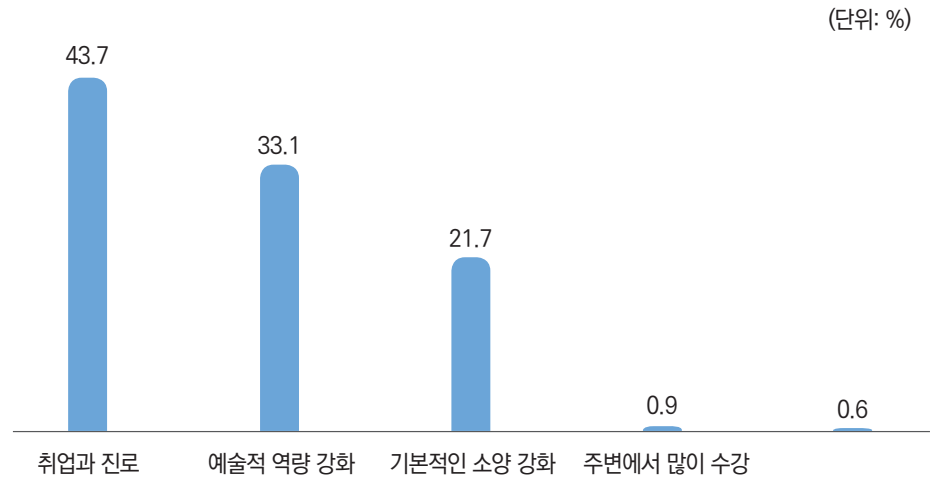

그림 3-58. 예술관련 실용교과목 수강목적

• 향후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의 필요 정도에서는 평균적으로 3.82점을 받음. 그중에서도 인턴십(기획/제작 등)이 4.16으로 가장 높으며 마케팅/홍보가 4.05점으로 다음으로 높음. 이 외에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는 공연, 전시 기획/제작, 문화정책, 예술공간 경영임. 반면 축제 기획에서는 3.48점으로 가장 낮으며 재무/회계에서는 3.51점으로 다음으로 낮음. 이 외에도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는 예술경영 이론/개론, 조직 운영/관리, 실무 문서 작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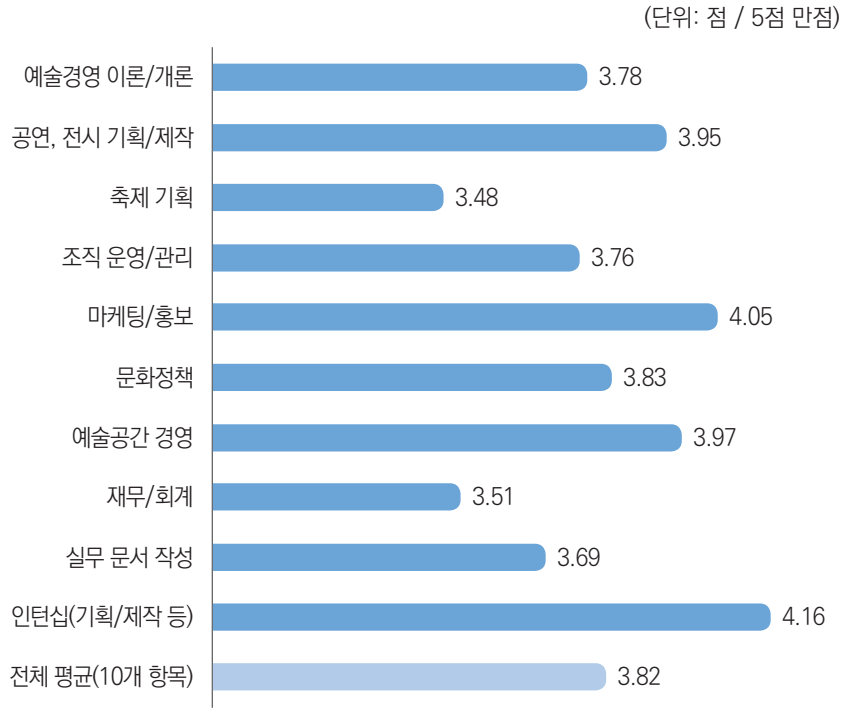

그림 3-59. 향후 진로 · 취업 관련 교과목의 필요정도

•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 지속 의사에서는 대전 이외의 지역에서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이 54.0%(189명)로 가장 많으며, 반면 대전 지역에 남아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이 24.3%(85명)이었음. 한편 전공 관련 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5.1%(18명)로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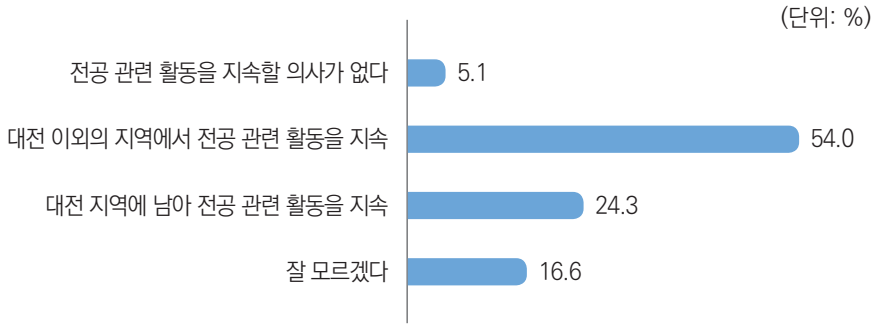

그림 3-60. 졸업 후 전공 관련 활동 지속 의사

2) 생활 및 여가

• 거주자 유형에서는 혼자(1인 가구)라는 응답이 46.9%(164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부모와 생활(본인+부모) 39.4%(138명), 동료와 생활(본인+동료) 9.1%(32명), 독립된 가정(본인+배우자/자녀)이라는 응답이 3.1%(11명)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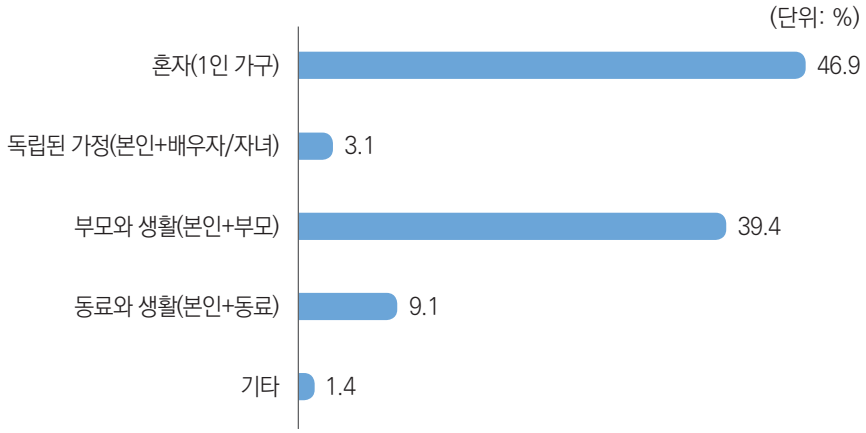

그림 3-61. 거주자 유형

• 거주 유형에서는 가정집(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73.7%(258명)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공동체 주택(사회주택, 정부 임대주택 등)이 13.4%(47명)로 높음. 한편, 작업실에 부속된 방과 기타의 견은 0.9%(3명)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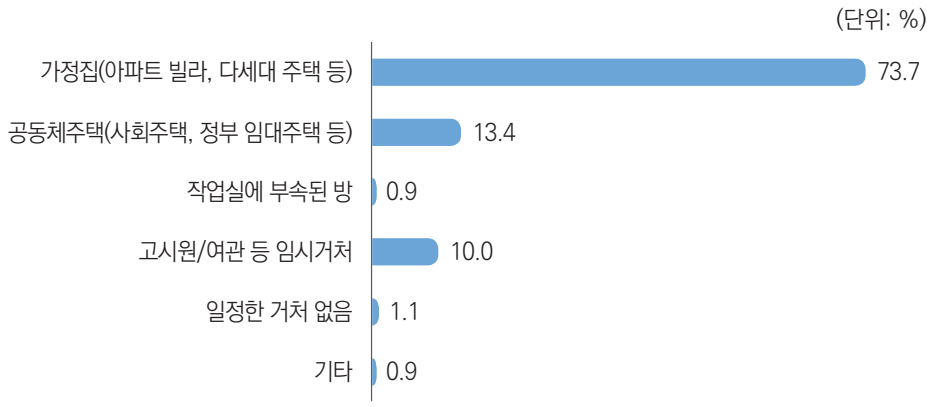

그림 3-62. 거주 유형

• 거주 조건에서는 임대 월세가 54.6%(191명)로 가장 많으며 자가가 28.3%(99명)로 다음으로 많음. 다만, 기타의견은 1.7%(6명)로 가장 적으며 이어 임대 전세가 15.4%(54명)로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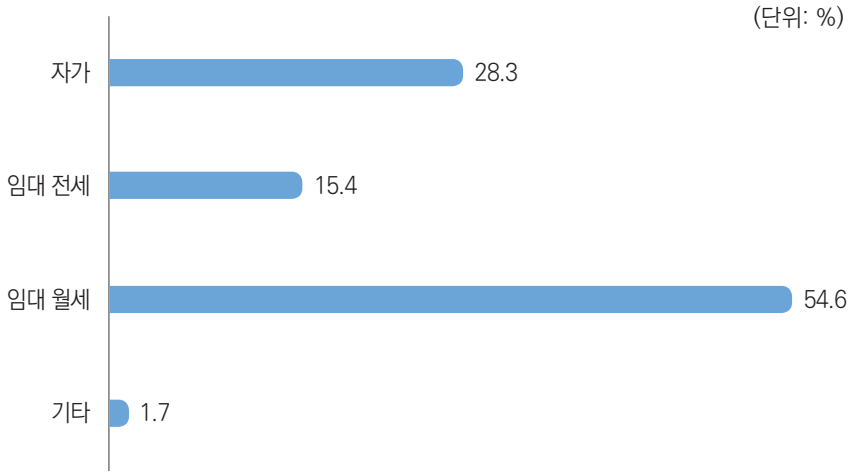

그림 3-63. 거주 조건

• 부채(빚)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34.0%(119명)의 예비 예술인들이 부채를 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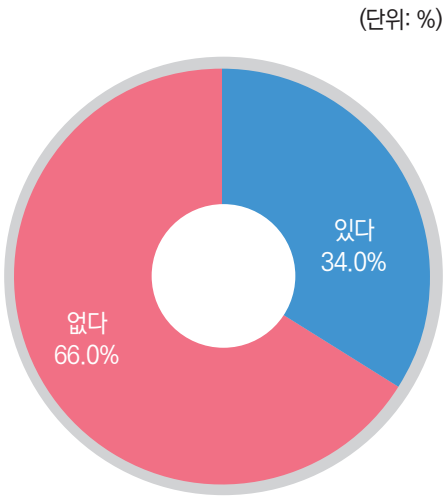

그림 3-64. 부채(빚) 여부

• 부채의 주된 원인에 대한 응답에서는 학자금이 45.2%(7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가족의 부채 19.6%(33명), 생활비 14.9%(25명), 주거비 6.0%(10명) 순으로 주로 학비 및 생활비로 인한 부채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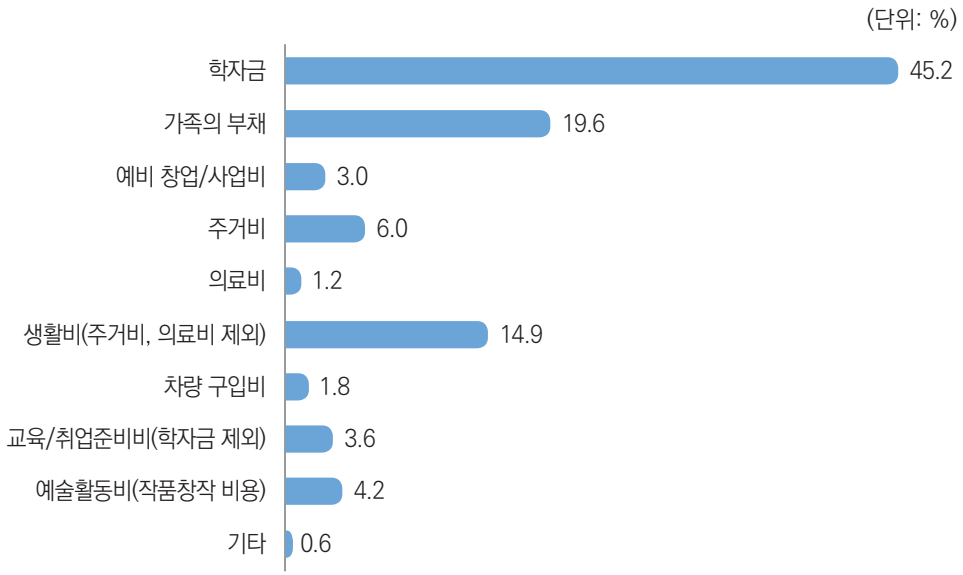

그림 3-65. 부채의 주요 원인

• 전반적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에서는 1순위 응답과 1+2순위 합산 모두에서 식료품비/외식비가 각각 46.3%(162명), 66.6%(233명)로 가장 많은 빈도 보였으며, 이어서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가 각각 20.0%(70명), 34.3%(120명), 예술활동비가 각각 10.6%(37명), 27.4%(96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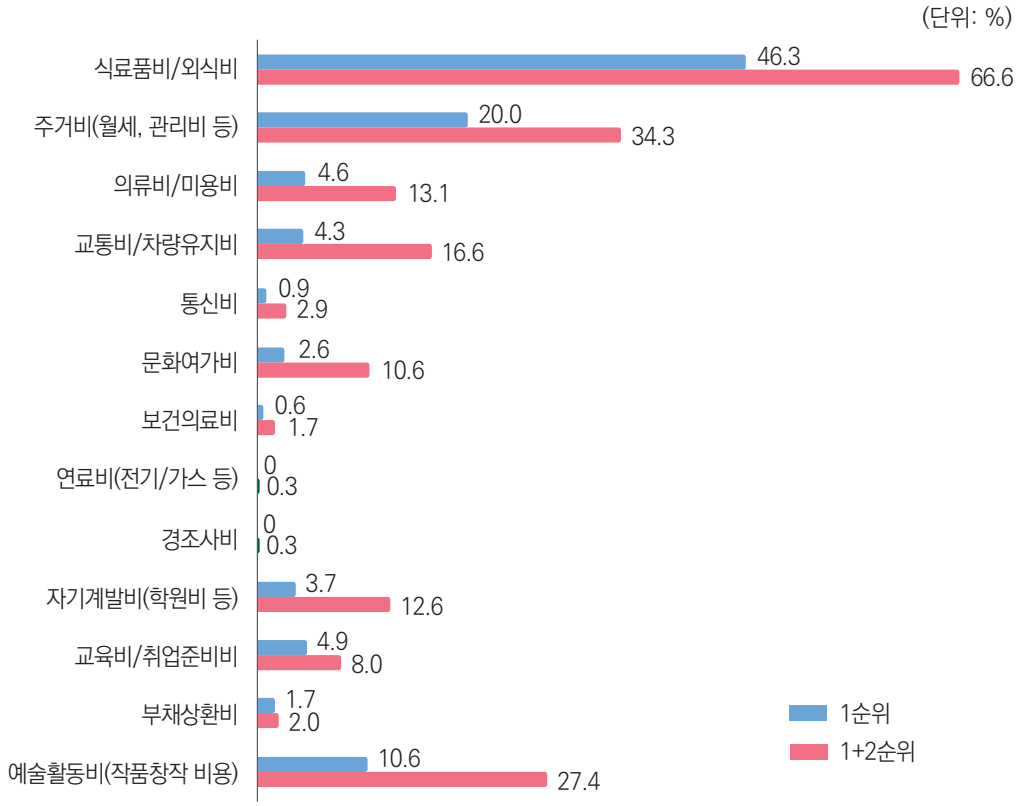

그림 3-66. 전반적 소비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

• 평소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주로 하는 여가활동의 경우, 문화예술관람(전시, 연극 등) 37.7%(114명), 인터넷 28.0%(98명), 게임 24.9%(87명), 휴식 23.7%(83명), 친구만남 20.9%(73명)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서는 관광 및 여행이 55.1%(193명), 문화예술관람(전시, 연극 등) 48.3%(169명), 문화예술참여(사진촬영, 악기연주 등) 32.9%(115명), 스포츠참여 14.0%(49명), 휴식 10.3%(36명)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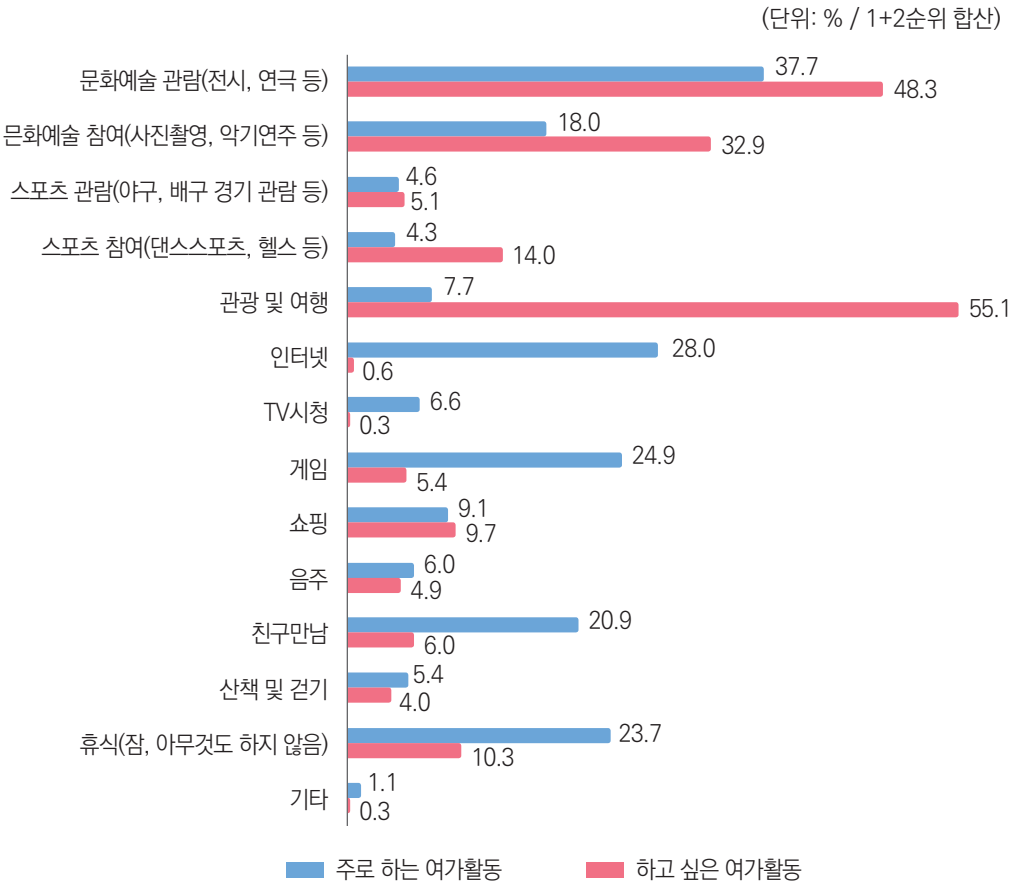

그림 3-67. 여가활동 비교

3) 건강 및 가치관

• 지난 일주일간 정서적 상태에 대한 질문들의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1.98점(높을수록 부정적)으로 세부적으로는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역코딩) 항목이 2.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2.25점, '잠을 설쳤다' 2.21점,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2.11점 '상당히 우울했다' 2.09점, '비교적 잘 지냈다' 2.02점 순으로 이상의 항목들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음. 반면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와 같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항목은 각각 1.55점과 1.5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단위: 점 / 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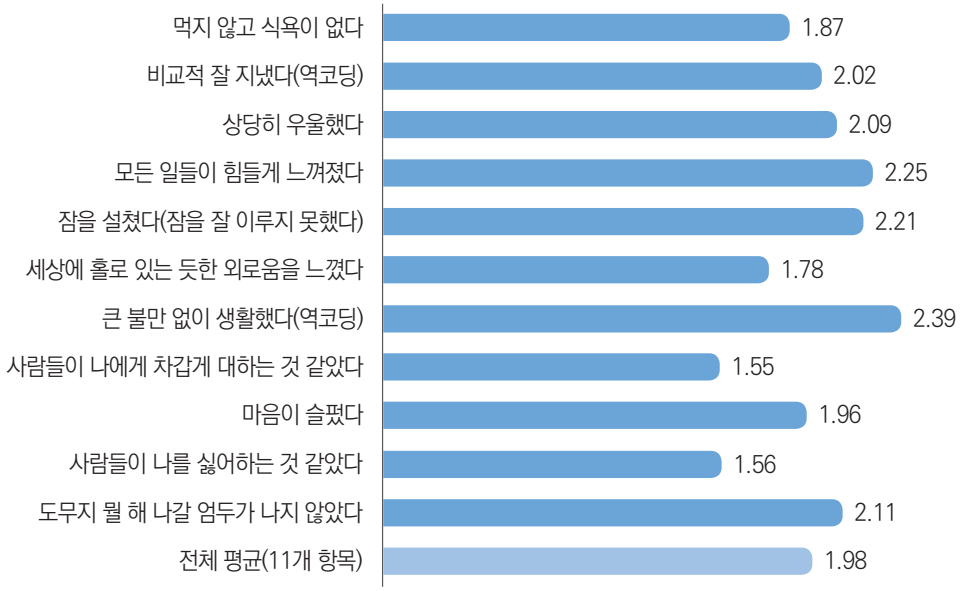

그림 3-68.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 '현재 건강상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4.6%(121명)로 가장 많으며 이어 '약간 좋지 않다'는 의견이 29.1%(102명)로 많음. 다만, '매우 안 좋다'는 응답은 3.4%(12명)로 가장 적으며 매우 양호하다는 응답은 6.95%(24명)로 다음으로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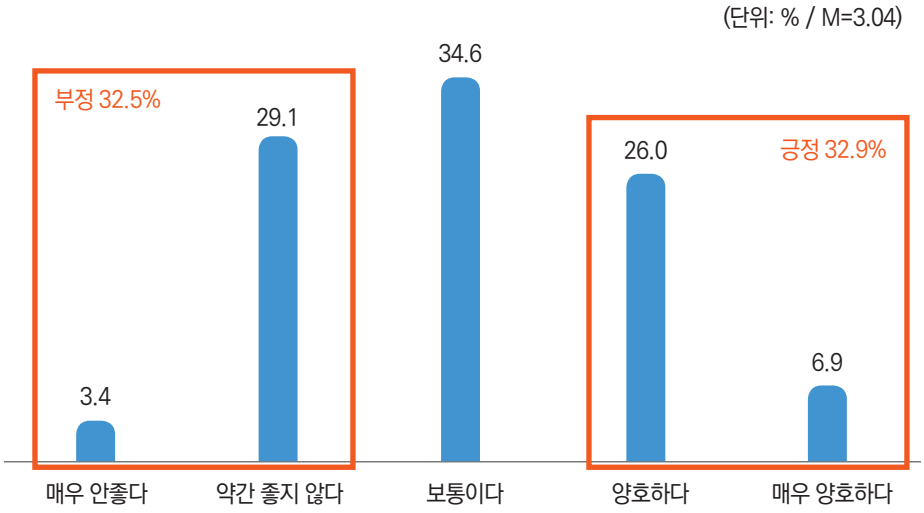

그림 3-69. 현재 건강상태

•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83.1%(293명)이며, 1개 질환이 있는 경우가 13.7%(48명), 2개 질환 이상 있다는 응답이 3.1%(11명)로 1개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가 16.8%(59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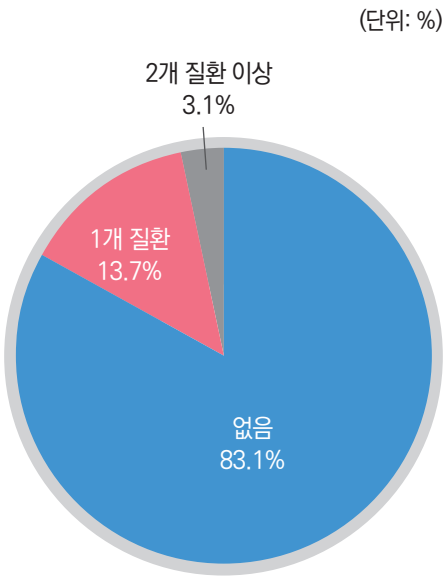

그림 3-70. 현재 3개월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진료 여부

• 최근 1년 사이 건강 악화로 학업에 차질을 받은 경험에서는 32.6%(114명)의 예비예술인들이 학업 차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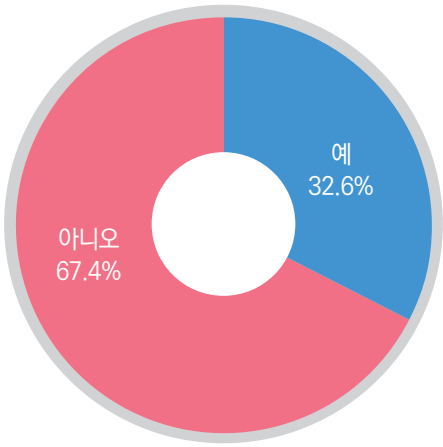

그림 3-71. 최근 1년 사이 건강 악화로 학업에 차질을 받은 경험

•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 요건에서는 32.8%(225명)가 재산/경제력을 꼽았고, 이어서 건강이 16.9%(116명), 화목한 가정 14.3%(98명)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음. 상대적으로 지역/직장(2.9%), 연인(2.2%), 종교생활(1.6%), 사회분위기(1.3%) 등은 낮은 빈도를 보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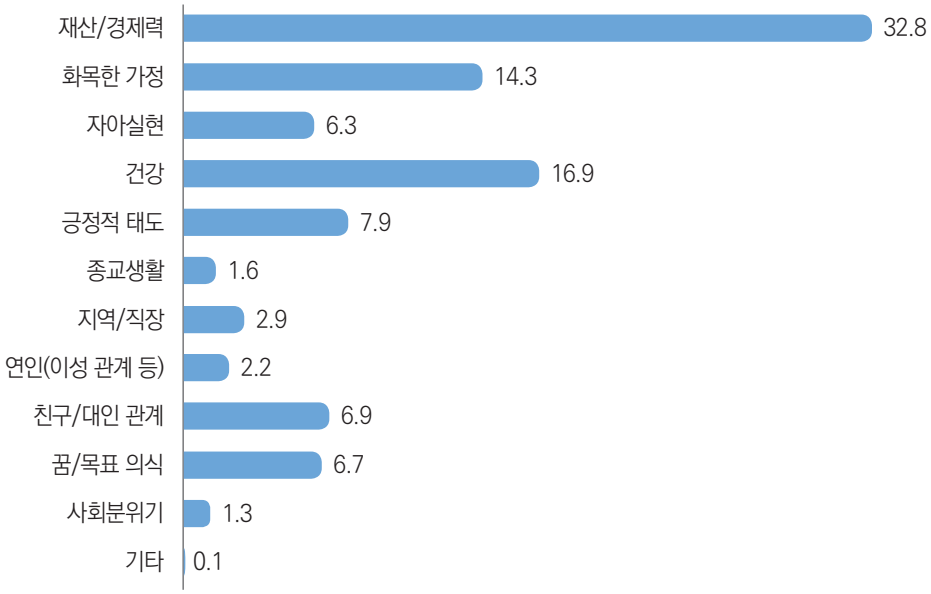

그림 3-72.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 요건

4) 예술정책 및 예술인복지정책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여부에서는 4.3%(15명)만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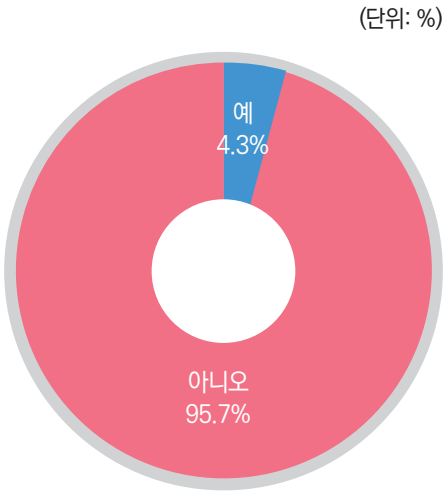

그림 3-73. 예술활동증명 신청여부

•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에서는 '일은 끝마쳤지만 다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는 응답이 42.6%(14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는 응답이 28.6%(100명),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16.0%(56명), '바로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거나 관계하지 않는다' 12.0%(42명)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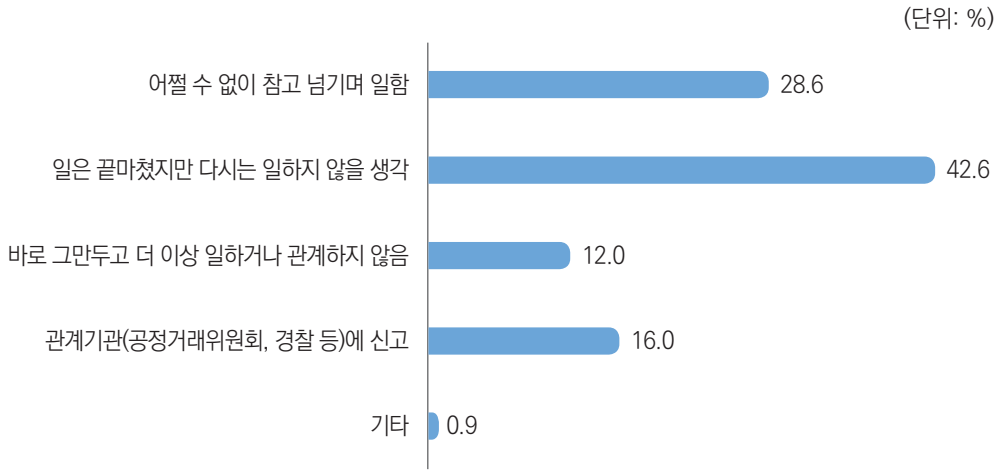

그림 3-74.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 예술계 내부 성폭력 문제 실태에 대한 전체 평균은 2.50점이며, 세부 항목에서는 '예술산업/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예술교육이나 연습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각각 2.60점과 2.58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같은 지위에 있는 동료 예술인 간 성폭력'은 2.31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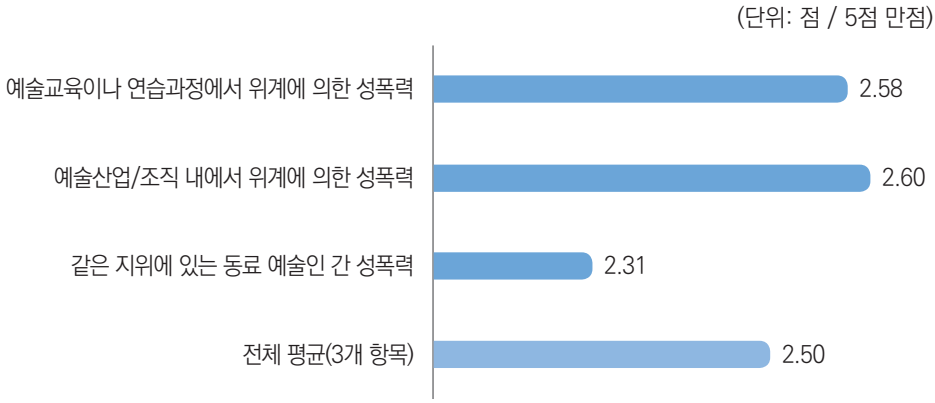

그림 3-75. 예술계 내부 성폭력 문제 평가

• 여성 차별 실태에서는 전체 평균은 2.59점이었으며,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의 차별'과 '교육/훈련/연수 기회에서의 차별'이 각각 2.69점, 2.65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창작물 판매 기회 및 수익배분 차별', '창작활동 지원 수혜 차별'의 경우 각각 2.52점과 2.49점으로 평균 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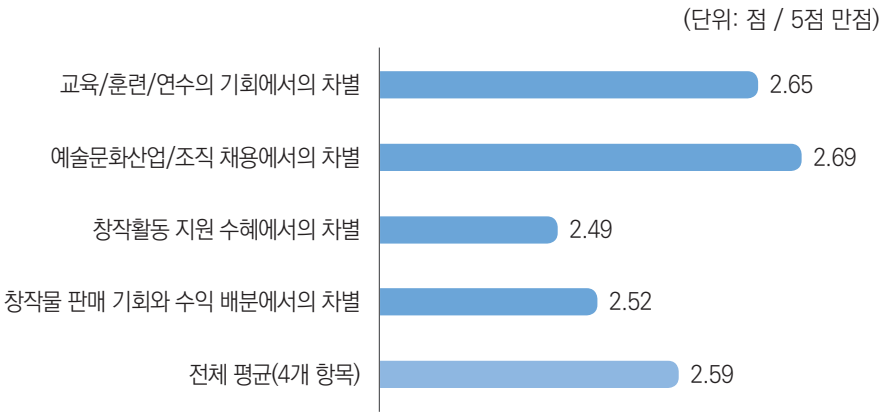

그림 3-76. 예술계 내부 여성차별 문제 평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의견이 52.3%(183명),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42.0%(147명)으로 성폭력 피해신고/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응답은 총 94.3%(330명) 임. 반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5.8%(20명)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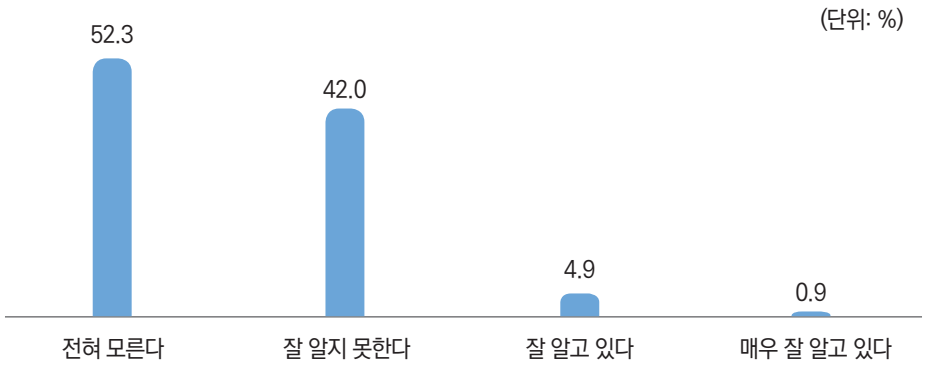

그림 3-7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성폭력피해신고/상담 지원센터인지여부

•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에 대한 응답에서는 '예술인 지원대상 선정 시 성폭력 가해자 배제'가 56.6%(198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정기적인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가 25.4%(89명), 대전시 예술인 성폭력 신고/상담 지원기구 운영 9.4%(33명), 창작지원 대상 예술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8.0%(28명)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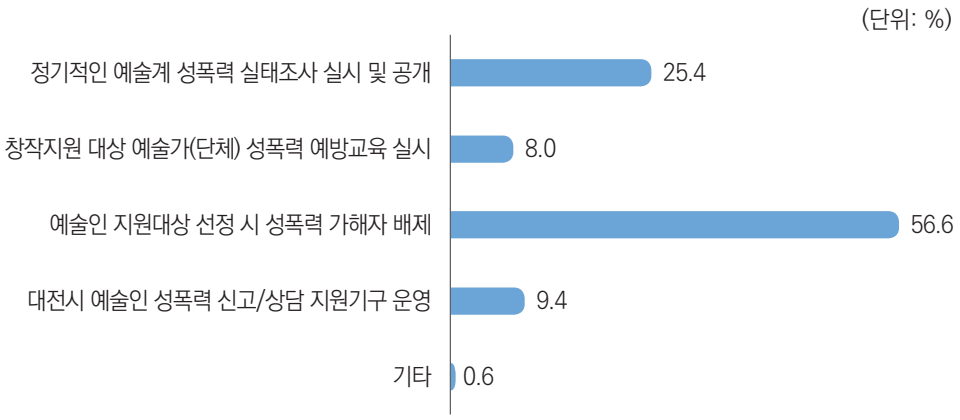

그림 3-78. 예술계 성폭력 방지 방안 (단위: %)

•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문항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51점을 받음. 세부적으로는 '예술활동 발표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2.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예술작품 창작지원'(2.61점), 예술작품 향유기회 (2.57점), '예술정책 결정시 예술계 의사 반영'(2.54점) 항목에 대한 평가들이 전체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예술 인프라'(2.49점), '예술활동 정보획득'(2.45점),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2.39점), '신진예술가의 진입'(2.38점)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평균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단위: 점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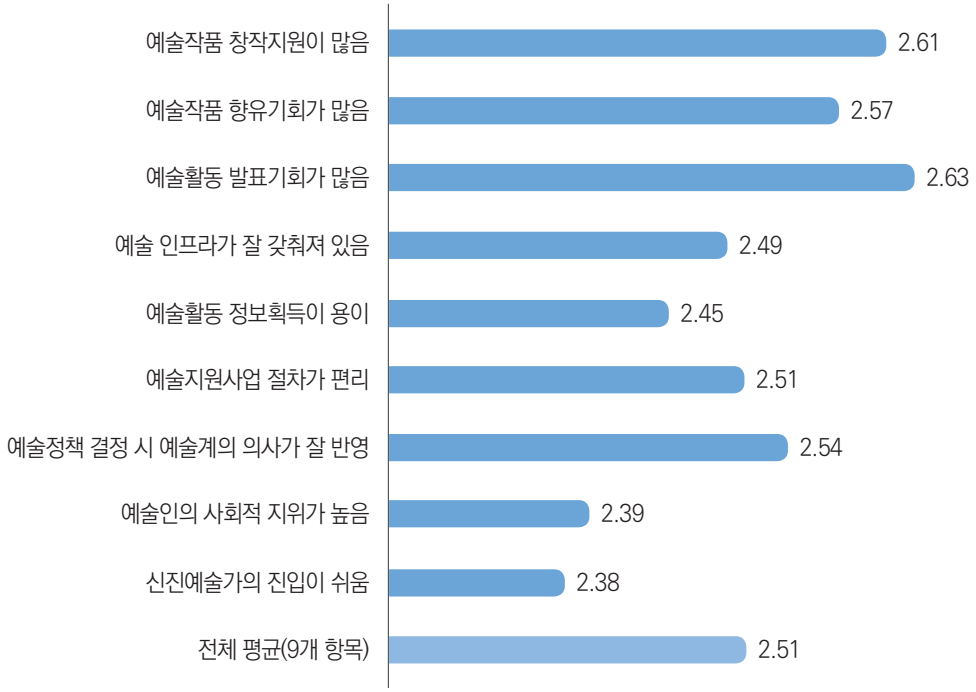

그림 3-79. 대전시 예술정책 및 지원 만족도

•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시 역점정책에 대한 응답(다중응답)에서는 '예술가(예술단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26.9%(169명)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25.2%(158명), '작품활동공간시설 확충' 13.4%(84명), '예술가(예술단체) 지원 조례와 제도 정비' 13.1%(82명), '신진예술가 지원과 육성' 11.6%(73명) 순이었고, 전문예술가 육성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가 7.6%(48명)로 가장 낮았음

(단위: % /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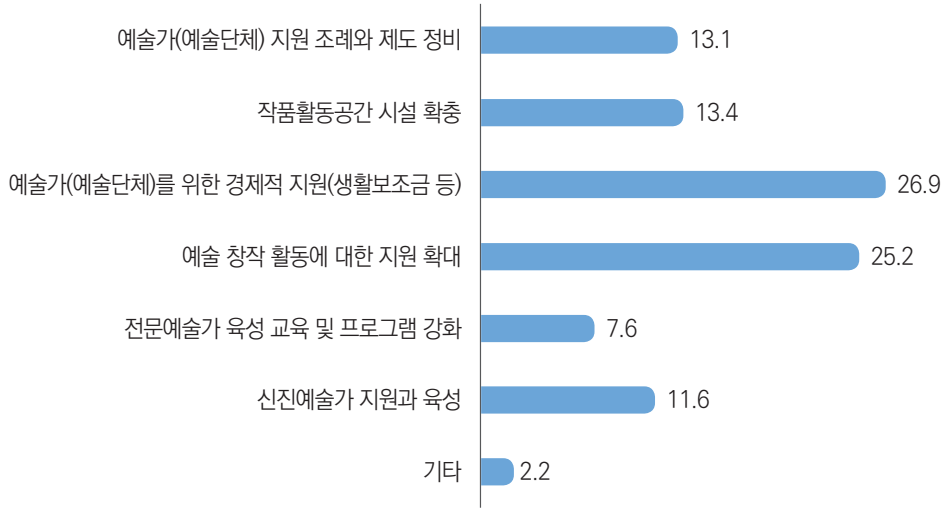

그림 3-80.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대전시 역점정책

•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역점을 둘 사업에 대한 질문(1순위)에서는 생활안정지원이 평균 2.489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직업역량 강화가 3.309로 높음. 다만,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은 4.686으로 가장 낮으며 예술창작지원은 3.651로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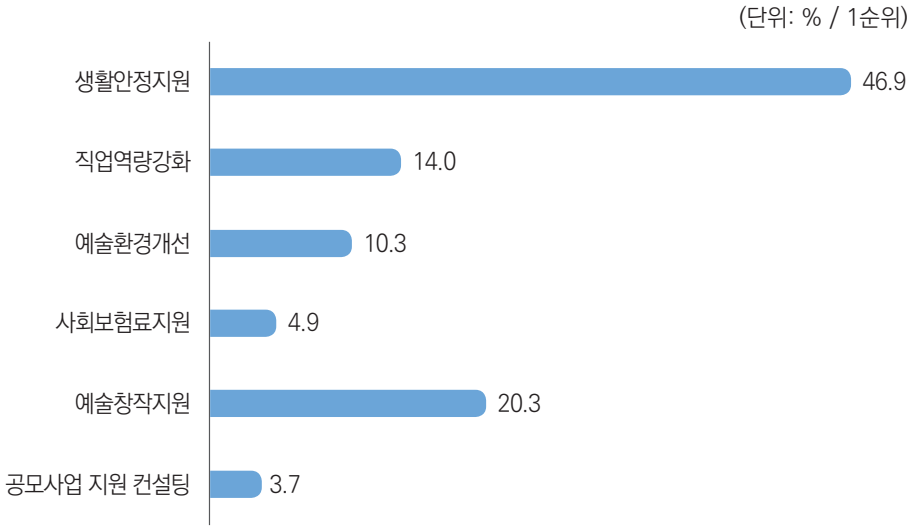

그림 3-81. 문화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역점사업

2절

대전 예술인의 정책 요구

1. 예술활동과 생활

1) 지역 문화예술계 인식 전반

(1) 지역 예술가의 예술관 및 자기 인식

- 예술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예술을 통해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점을 표방하면서 예술을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함. 한편, 일부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자기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예술을 개인적 맥락으로 파악한다고 답변

- 예술가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는 예술이나 예술가를 자신의 숙명으로 인식하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
  - 그러나 독립적인 예술활동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예술활동을 펼치는 기반 환경에 대한 걱정이 크며, 특히 예비예술인의 경우 졸업 이후 예술가의 삶을 어떻게 시작할지조차 막막함을 느끼고 있음

- 예술가 개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예술 기반 환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바람은 별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됨

(2)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

-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현실에 대하여 거시적이고 당위적인 관점으로 인식하면서 다양성과 지역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

- 그러나 서울에 비해 정보 및 기회가 부족하다면서 지역문화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 지역의 예술계가 예술 창작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예술활동 체계도 허술하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봄
  - 또한 장기적으로 예술활동을 생각해 볼 때 전문성을 쌓을 만한 경험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 지역 문화예술계의 경직성 또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됨

2) 예술활동과 생계의 안정성 문제

(1) 예술활동 · 경력단절과 관련한 경험과 인식

- 생계유지를 이유로 예술활동과 경력이 단절되는 경험을 지역 예술인 다수가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예술계의 '경력단절'은 예술 특성상 다른 영역에서 경력단절을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른 모호함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지역의 예술계에서는 경력을 유지하기가 불투명하고 작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 탓에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됨

(2) 예술 작업과 일자리, 생계유지에 대한 경험과 관점

-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택하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낌. 결국 예술작업과 현실 생계유지의 타협점으로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갖는 것을 택함

3) 예술활동 중 부당대우 문제

(1) 부당대우, 부조리한 관행 경험과 관련 문제 인식

- 예술활동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은 무급이나 적정선 이하 보수 책정 등 부당한 보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다고 함. 특히 예술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부당한 보수를 책정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프리랜서 계약, 직장 내 근로, 학교 내 교수에 의한 노동 착취 등 경로 또한 다양함. 그러나 보복이나 피해가 걱정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임

- 수직적인 관계에 의한 부당 대우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급여뿐 아니라 연습 기간 등 자율성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 빈번하며, 수직적인 관계에 의한 성희롱 · 성폭력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함. 예술대학 내 교수가 학생에게 가하는 막말이나 '갑질'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됨

- 이 밖에 인맥이나 학맥이 우선시되어 예술가로서 실력을 쌓는 일이 등한시되고 경력을 쌓을 만한 기회부터가 공정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함

(2) 예술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감에 대한 인식

- 대전 지역의 예술계는 도덕적 수준에서 타 활동 영역과 비교하면 심하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인맥 중심 관행 탓에 도덕적 투명성이 저해될 위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예술단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도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예민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으

며, 독립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술계 내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단면이라 볼 수 있음

(3) 예술계 내부 인맥 중심 관행 경험 여부와 관련 문제 인식

- 대전 지역 예술계 내에서는 서로 친밀한 사이로 작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빈번함.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미작성하기도 함

- 대전 지역 예술계는 원로 예술가를 중심으로 기회와 정보가 몰려있어 상대적으로 신진 예술가의 진입이 어렵고, 인맥에 따라 활동과 기회의 차등이 발생하여 인맥 관리에 몰입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의견이 많아 기회의 차등과 진입장벽의 문제를 강하게 피력함

(4) 예술 분야 계약 문제 관련 경험과 계약서 개선사항

- 심층면접 응답자들은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당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제로 인식하고 있음

- 하지만 예술계 인맥 등 인간관계에 의한 구두계약이 아직도 예술계 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유명 작가가 아니면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임

- 현재의 표준계약서도 계약서 내 포괄적인 표현이 부당대우에 악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을 지향해야 하며, 계약서 내용에 작업 진행 과정에 대한 준수 사항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음

2. 정책에 관한 인식과 요구

1) 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1) 예술활동 작업공간 지원사업의 중요성과 문제점

-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작업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음. 일상생활 공간과 예술활동을 위한 작업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업실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별도의 작업실이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과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시설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이 큼. 대체 공간을 찾으려 애쓰고 있으며, 작업공간이 있는 예술인의 경우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중임

- 응답자들은 작업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절차의 어려움과 예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자격 조건의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음
  - 작업공간 대여 사업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 · 공간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며, 주변 환경의 안전성 등 작업실의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 예술 분야의 특성에 맞게 시설이 갖추어진 작업공간이 필요하며, 작업실 지원사업 대상(장르)과 지원 자격(나이, 지역)의 다양화가 필요함

(2) 대전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제언

- 청년예술인 관련 대전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청년예술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보와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년예술인을 위한 소통의 통로와 커뮤니티 형성의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청년예술인 실태 분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사업 지원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원활하지 않은 소통의 문제도 계속 제기됨. 지원사업 진행 과정 내 행정 서류처리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예술가 사이에서 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보완점을 건의했으나 그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하다고 불만스러워 함

-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통로를 내 · 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예술인의 노동력이 온전히 인정되고 정당하게 보상되어야 한다고 여김. 재단 사업 관련 프로그램 기획자의 노동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 또한 예술 전공 관련 일자리 연계 사업 등 예술노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융통성이 필요함
  - 심사위원 초빙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 실정에 맞춰 예술인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활동증명 관련 인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활동증명에 대해서는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예술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가 하면, 예술인활동증명 조건이 모호한 점이 있고, 서류 준비 절차가 번거롭다는 의견도 나옴

• 예술인 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과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음

2) 예술대학 교육과정

(1) 예술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제언

• 예비예술인 응답자들은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이 커다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각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직되는 학과 통폐합 과정으로 인해 전공과 관련 없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함

• 전공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이 시급하다고 함. 비전문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됨.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교육 과정 및 교수진의 연구 자세 태만으로 인해 강의가 내실 없게 진행된다고 불만스러워 함
  - 예술대학의 전공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강사 초빙 등 새로운 수업 방식을 통해 현재 커리큘럼에서 현장 중심 수업을 증대할 것을 제안함

(2) 예술 대학 내 진로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과 제언

•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코칭이 부족하여 대다수가 졸업 이후 진로 설계에 어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음

• 교외 현장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외 현장 활동 기반 마련이 필요함

제4장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1절 대전의 예술인 복지 정책 추진 여건
2절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1절

대전의 예술인 복지 정책 추진 여건

1. 대전의 문화예술활동 조직과 인력

1) 예술단체

- 대전지역의 문화 창작은 주로 문화예술단체로 결속된 창작자 중심으로 이뤄지며, 한국예총대전시연합회와 대전민예총이 주요 구심점이 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한국예총대전연합회는 총 회원수 3,351명이며,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등 예술분야별 협회들이 속해 있음. 진보적 문화예술활동을 기치로 내거는 대전민예총은 총 회원수 515명으로, 대전독립영화협회 등의 분야별 단체들이 결합 되어 활동 중임

표 4-1. 대전 지역 문화예술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회 원	주요 내용
한국예총대전연합회(10)	연합회		3,351	대전예술지발간, 시민공감예술제, 대전예술인대회, 6대광역시문화예술교류
	소속단체	건축가협회	90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국악협회	164	전국국악경연대회 및 시민국악축전
		무용협회	150	대전시장기 학생무용경연대회, 전국무용제, 시민무용축전, 대전무용제, 대전안무가전, 신인무용제
		문인협회	320	한밭전국백일장, 대전문학상, 대전문학 발간, 대전문학연구총서
		미술협회	1,325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대전미술제, 대전국제아트쇼, 여성특별위원회전
		사진작가협회	372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백제사진대전, 한밭전국사진공모전, 세미누드전국사진촬영대회
		연극협회	120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청소년연극제, 대전연극제, 대전국제소극장연극축제, 창작희곡공모
		연예예술인협회	468	시민가요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희망콘서트, 7080밴드와 함께하는 낭만콘서트,
		영화인협회	150	대전영화페스티벌, 영화의 거리조성 및 영화 상영회
		음악협회	305	대전청소년음악제
(사)대전민예총			515	청년유니브연극제, 인디음악축전

자료 : 2018 대전시정백서

• 대전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은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무용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청소년합창단, 연정국악원의 국악연주단이 활동 중이며, 최근 대전시립극단의 창설 여부를 놓고 지역예술계의 의견을 수렴 중임

표 4-2. 시립예술단 및 국악연주단 현황 ('18.12.31.)

구분	정원	현원				창단
		합계	상임		비상임 (연수포함)	
			예능(남/여)	사무(남/여)		
계	310	262	175(63/112)	28(11/17)	59	
공연사업지원국	10	5	-	4(3/1)	1	2014.3.14
교향악단	107	94	79(26/53)	10(5/5)	5	1984.1.14
무용단	49	44	39(9/30)	5(2/3)	-	1985.6.11
합창단	64	61	54(26/28)	5(0/5)	2	1981.12.19
청소년합창단	80	58	3(2/1)	4(1/3)	51	1982.4.17
국악연주단	110	82	77(26/51)	5(3/2)	1	1981.7.14

자료: 2018 대전시정백서

표 4-3. 시립예술단 연도별 공연 활동 현황

구분	계		정기		기획		수시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계	223	231	24	23	109	112	90	96
교향악단	89	90	13	12	60	48	26	30
무용단	54	54	4	4	23	28	27	22
합창단	56	55	5	5	29	31	22	19
청소년합창단	24	32	2	2	7	5	15	25

자료: 2018 대전시정백서

• 문화예술활동조직을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기초지자체별 등록된 법인과 단체,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교육사를 합산한 다음 표에서처럼 대전은 비슷한 규모의 광주나 인천, 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활동 조직이 미흡한 반면 울산과 세종보다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특 · 광역시 예술활동 조직

지역	문화예술 법인 · 단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문화예술교육사
서울	231	94	3,234
부산	112	24	740
대구	86	26	712
인천	40	22	625
대전	45	9	478
광주	73	24	844
울산	26	8	227
세종	5	3	77

자료: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 대전 지역 대학의 예술관련 학과

- 대전의 일반대학, 전문대학의 문화예술관련 학과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대학은 44과, 1,473명의 입학 정원, 전문대학은 9과, 423명의 입학 정원을 두고 있으며, 총 53과, 1,896명의 입학 정원을 두고 있음
  - 예술장르별로 전공이 부합되는 대전지역 대학의 학과를 분류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4-5. 대전시 소재 일반대학 · 전문대학 문화예술관련 학과 현황

구분	대학생
문학	대전대학교 국어국문창작학전공(36), 한남대학교 국어국문 · 창작학과(69)
평면(회화)	충남대학교 회화과(26), 한남대학교 회화전공(35)
공예	목원대학교 도자디자인학과(22), 대전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28)
영상	대전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35), 배재대학교 광고사진영상학과(31), 우송대학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30), 우송대학교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미디어디자인 · 영상전공(50), 한남대학교 미디어영상전공(43)
서예	
사진	배재대학교 광고사진영상학과(28)
입체 · 설치	목원대학교 조소과(17), 충남대학교 조소과(14)
음악	목원대학교 관현악학부(31), 목원대학교 성악 · 뮤지컬학과(13), 목원대학교 음악교육과(27), 목원대학교 작곡 · 재즈학부(31), 목원대학교 피아노과(40), 배재대학교 피아노과(25), 충남대학교 관현악과(25), 충남대학교 음악과(37),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40), 침례신학대학교 피아노과(25)
국악	목원대학교 국악과(23)
무용	충남대학교 무용학과(23)
연극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40)
연예(방송 · 공연)	대전대학교 방송공연예술학과(20)
대중음악	배재대학교 실용음악과(34), 우송정보대학교 글로벌실용예술학부(80)
영화	목원대학교 TV · 영화학부(42)

구분	대학생
건축	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제2캠퍼스-50), 대전대학교 건축학과(35), 목원대학교 건축학부(65), 배재대학교 건축학부(65), 충남대학교 건축학과(27), 한남대학교 건축학과(33), 한밭대학교 건축학과(24), 우송정보대학교 리모델링건축과(7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45)
만화	대전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35), 목원대학교 만화 · 애니메이션과(36)
디자인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35), 목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36), 목원대학교 섬유 · 패션디자인학과(30),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33), 충남대학교 디자인창의학과(25), 한남대학교 미술과 융합디자인전공(91), 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49),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49), 한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야-20), 대덕대학교 시각디자인과(40), 대덕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40), 대덕대학교 패션리빙디자인과(4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광고홍보디자인과(40)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는 정원 수.

3) 대전지역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현황

- 예술활동증명은 문학, 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 만화의 11개 장르로 구분되며, 분야별 심의에 통과한 인원들을 복지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예술가로 인정하고 있음. 신청자는 분야별로 지난 5년간의 공개적으로 발표된 특정 조건 이상의 예술활동 실적 또는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 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임을 증빙해야 함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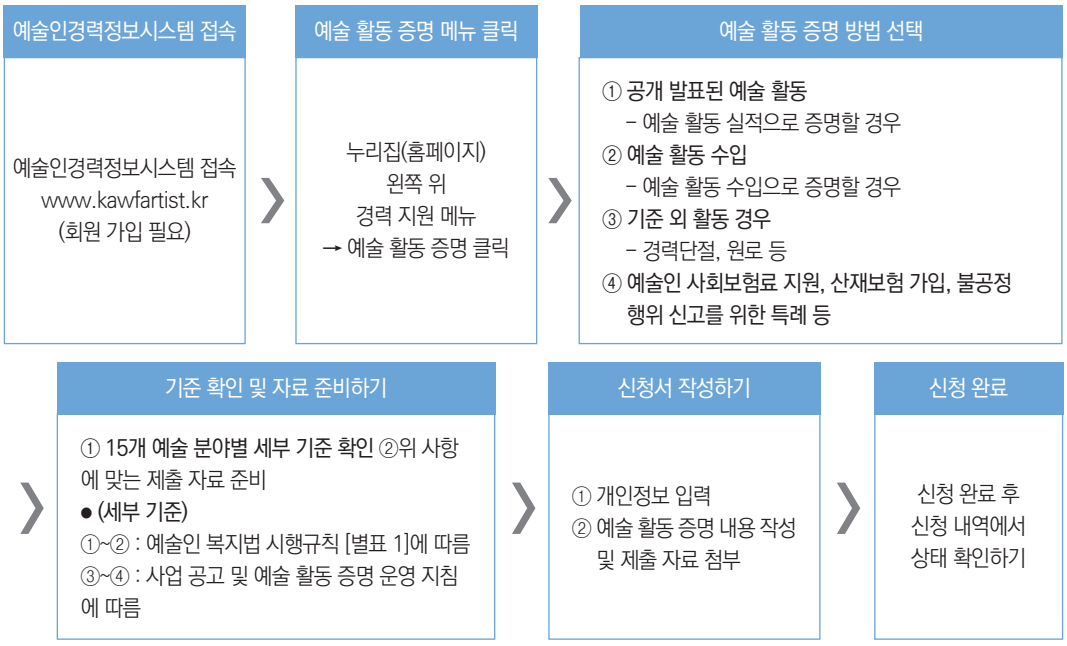

그림 4-1.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 예술인 개인의 신청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자격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결과가 통지되는 방식으로 진행됨

그림 4-2.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 예술활동증명 등록자 현황을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전체 등록자 중 약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하게 증가 추세임

- 예술활동증명 등록은 서울이 43.75%, 경기가 23.46% 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수도권으로 집중화된 문화예술생태계를 감안할 때 수긍이 가는 결과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하는 과제가 급선무임. 특히 부산과 경남 등 예술인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예술활동증명 비율이 높은 점은 대전지역 예술인들의 등록을 위해 대전지역에 예술인복지센터가 필수적임을 시사해주고 있음

표 4-6.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2019년 4분기,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7	21,406	2,994	1,139	1,920	742	901	581	82	11,146
2018	25,396	3,532	1,365	2,342	1,023	1,140	881	126	13,381
2019 (%)	29,517 (43.75)	4,011 (5.94)	1,570 (2.33)	2,771 (4.11)	1,266 (1.88)	1,350 (2.00)	1,004 (1.49)	178 (0.26)	15,825 (23.46)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7	705	499	500	971	528	543	1,696	306	46,659
2018	874	627	649	1,396	639	669	2,964	413	57,417
2019 (%)	1,078 (1.60)	713 (1.06)	825 (1.22)	1,696 (2.51)	740 (1.10)	805 (1.19)	3,582 (5.31)	536 (0.79)	67,467 (100)

• 예술분야별로는 대전의 경우 음악과 미술 분야가 많고, 연극과 문학 분야가 뒤를 이음. 전국적 추세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문학 분야의 등록자가 많은 반면 영화 분야가 등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2019년 3분기, 단위: 명)

대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160	320	18	-	357	77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60	176	37	62	38	33
전국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5,918	13,883	1,247	25	12,834	3,241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2,744	11,535	6,285	3,601	1,502	3,670

• 참고로 연령별로 예술활동증명 등록 추세를 전국 단위로 살펴보면 전체 등록자 중 30대가 가장 많고, 40대와 20대가 그 뒤를 이으며, 고령층의 등록 빈도가 낮음. 그렇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모든 연령이 고루 등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 4-8. 연령별 예술활동증명 현황 (2019년 3분기, 단위: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2017	9,189	18,933	9,000	5,127	2,754	1,350	306	46,659
2018	10,544	22,903	11,246	6,705	3,778	1,791	450	57,417
2019	11,905	26,907	13,448	7,805	4,727	2,069	606	67,467
(%)	(17.64)	(39.88)	(19.93)	(11.57)	(7.01)	(3.07)	(0.90)	(100)

2.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한 기반

1)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1) 조례 제정의 배경과 경과

-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예술인 지위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2013년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광역단위의 지자체들에서도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작되었고, 대전광역시도 2013년 후반 조례를 제정하게 됨. 시기적으로 보면 지자체들 중 상당히 이르게 선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대전에서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인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는 2013년 10월 25일 당시 제6대 시의원이었던 황경식 의원 외 6명(남진근, 이희재, 한근수, 김동건, 오태진, 안필응)에 의해 발의되어, 2013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됨

- 당시 제안 이유로는 "직업 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나 이들 예술인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대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됨

(2) 조례의 구성 및 내용

- 조례의 내용은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구성 내용은 목적(1조), 정의(2조), 지원계획의 수립(3조), 사업(4조), 자문 · 심의(5조), 창작 공간 지원(6조), 재정지원(7조), 문화예술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8조), 실태조사(9조)의 내용을 담고 있음

① 조례의 목적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체로 다른 지역의 조례들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② 예술인의 정의

본 조례에서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해당 법에서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른 지역의 조례들 역시 대부분 예술인 복지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나, 서울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음

③ 지원계획의 수립

조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추진해야 함.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지원계획"이 아닌 "증진계획"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음

④ 사업내용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근로환경개선, 관련 연구, 예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음. 사업의 내용 구성은 도시에 따라 구체의 차이가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례가 제정된 지역일수록 사업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⑤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대전의 경우,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권한을 부여. 다른 도시들 역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문화예술관련 위원회가 증진사업의 위원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

⑥ 창작공간지원 및 재정지원

조례를 통해 창작 공간 지원과 재정 지원을 명시

⑦ 문화예술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

⑧ 실태조사 명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련된 시책 강구를 위해 필요한 근로실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대체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 앞에 특별한 단서를 두지 않거나, 복지 또는 창작환경이라는 단서가 붙는 반면, 대전은 '근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3) 조례 제정의 의의

- 대전광역시의 조례 제정은 여태 시도들과 비교해 초창기에 제정되었고, 이는 대전이 타지역보다 일찍이 예술인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예술인복지 관련 정책 추진 체계

(1) 대전시 업무체계

- 대전광역시의 예술 관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 내의 문화예술정책과가 담당하며, 문화예술정책과는 문화정책팀, 예술진흥팀, 생활문화팀, 공연예술팀, 문화시설팀으로 구성. 이 중 예술인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업무는 예술진흥팀(팀장1명, 주무관3명) 내의 주무관 1명이 전담하고 있음

- 예술진흥팀에는 예술인복지증진 전담 직원 이외에도 협업형 예술창작생태계조성사업, 장애예술인 창작 및 활동지원, 전문예술법인단체활동 지원사업, 창의예술교육랩 사업, 생애주기별 예술창작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 긴밀히 협업할 여지가 있으며, 문화정책팀의 일자리대책 관련 업무, 공연예술팀의 시립예술단 관리 업무 등도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과 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대전문화재단 업무 체계

- 예술인복지센터가 아직 조직되지 않은 대전은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계 사업을 비롯해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은 대전문화재단에서 도맡고 있음. 하지만 대전문화재단 내에 예술인복지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팀 규모의 업무체계는 없는 상태임

- 대전문화재단 내에서 예술인복지 관련 사업은 예술지원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예술지원팀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계 사업 이외에도 원로예술인, 청년예술인, 장애인창작 등 정책 수요 집단의 특성별로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예술인 복지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됨

표 4-9.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담당업무

직위	담당업무
팀장(1)	- 예술지원팀 업무총괄
차장(1)	- 예술지원공모사업운영, - 예술창작지원(공연,다원), - 문화예술분야연구창작활동지원,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업무
팀원(3)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국악야외상설공연지원, - 장애인창작및문화예술활동지원, - 원도심문화예술활동거점공간지원, - 협업형예술창작생태계조성사업
	- 차세대 artiStar 지원, - 원로예술인창작활동지원, - 예술창작지원(문학) - 문화예술지원사업연중평가및관리, - 예술인복지재단 연계사업,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운영,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일반서무(운영비 관리 등)
	- 레지던시지원, - 예술창작지원(시각A,B,C,D), - 문화예술연구및평론지원 - 청년예술인창작및대관료지원, - 청년예술인정착및양성프로젝트
단기계약직(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업무 보조, - 예술지원사업 업무 보조

• 이 밖에도 정책홍보팀에서는 대전예술인실태조사, 대전문화예술정책 토론광장, 지역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어 대전의 실정에 맞는 대전형 예술인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기획할 여지가 있지만, 여타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에 집중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3) 예술인복지 관련 정책 사업

(1) 지역문화예술인 창작권 · 활동권 보장 사업

•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대전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증진을 위해 '지역문화예술인 창작권 · 활동권 보장 사업', '창작센터 운영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펼치고 있으며, '문화예술 계승사업'도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기록화로 전통문화 보존 및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 중 '지역문화예술인 창작권 · 활동권 보장 사업'은 예술창작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과 연관되는 사업들로 볼 있음

•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지역의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인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큰 규모의 핵심 사업으로, 11개 문화예술분야, 총 224건의 사업에 지원

• 지역의 젊고 유망한 청년예술인을 선정해 대전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차세대 artiStar 지원 사업은 대전 지역 신진예술가를 양성하는 특성화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청년예술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첫술프로젝트는 청년문화예술의 창작 · 발표 · 교류 활성화 기능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음

• 지역의 공공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창작과 연습,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많은 예산을 배정(6개 단체 선정)

• 대전문화예술정책토론광장은 지역 내 문화예술분야 소통 및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토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되어 평균 2개월에 1회 꼴로 개최하여 옴

표 4-10. 대전문화재단의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인 창작권 · 활동권 보장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예술창작지원	창작활동 희망 예술인(단체)의 사업비 일부 지원	908,000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국내 · 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40,000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지원	지역 조사연구 및 평론활동 지원	20,000
레지던시지원	창작 공간 지원으로 창작 및 교류 활성화 도모	120,000
차세대 artiStar	젊은 예술가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 지원	167,212
예술지원사업 연중 평가 및 관리	예술지원사업 통합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모니터링 업체 선정과 예술지원사업 평가 시행	65,0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상주예술단체의 창작 작품 공연과 퍼블릭 프로그램 진행 등	646,000
청년예술인 정착 및 양성프로젝트	청년예술인 공연예술분야 역량강화교육과 공연, 워크숍	30,000
청년예술인 창작 및 공연장 지원	공연예술분야 청년예술인 대상 대관료 지원	50,000
지역문화예술활성화사업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지원 · 기획	20,000
첫술프로젝트	청년예술가의 예술 및 창작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200,000
지역오페라단공연활동지원	그랜드 오페라 및 소극장 오페라 제작 · 발표 지원	150,000
원도심문화예술활동거점공간지원사업	원도심 예술창작공간 시설 개선과 공간 활동 경비 지원	300,000
장애예술인 창작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장애인문학단체의 창작여건 개선 및 역량강화	90,000
향토예술인창작지원사업	원로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역량강화	200,000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청년예술가의 활동 기회 보장과 역량강화	190,000
원도심 공공시설 공공미술 프로젝트	청년예술가들의 활동 기회 확대와 원도심 활성화	300,000
아티언스 대전	예술가 지원 및 아티언스 주간 운영	
국악야외상설공연지원	전문국악단체의 공연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40,000
대전문화예술정책토론광장	지역 내 문화예술분야 소통 및 네트워킹을 확대	20,000

(2) 대전문화재단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정기적 예술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긴급 지원하여, 의료실비(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활동 복귀와 예술인의 의료복지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대표적인 예술인복지 정책사업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 이후 직접사업으로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사업홍보를 지원

- 대전문화재단은 광역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최초로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11월 사업설명회를 갖고 2019년도 사업 시행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원 소득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이하 혹은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을 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1인 최대 500만원으로, 입원비 · 수술비 · 검사비 · 약제비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 재활치료비 등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혈액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외래진료비 항목을 통해 지원. 단,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지원 하지 않음

• 많은 예술인들의 의료 복지 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의료비 실비 지원의 의미를 넘어 지역 예술인의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 추진 결과 지원자 부족으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함

3. SWOT 분석을 통한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 여건 요약

1)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의 제반 여건

- 대전은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뚜렷한 강점을 지니고 있음. 또한 지난 10년간 대전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정책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지역예술인을 위한 사업성과를 축적해오고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예총과 민예총, 예술 장르별 협회들이 예술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예술인 복지 정책의 고정적 수요층이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예술인복지 정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일방향적으로 정책을 대부분 전담하고 있어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요원함. 특히 거의 대부분의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인으로 등록되는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필수 선결요건인데 예술활동증명 신청자가 저조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대전예술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지원센터가 없는 것도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4-11.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분석

S Strength	W Weakness
예술인 복지 관련 법제도 마련 대전문화재단의 성과 축적 분야별 예술협회의 적극적 정책 참여 활동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편중된 정책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저조 수도권 대비 문화예술생태계의 약세
T Threat	**O Opportunity**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의 경계 약화 예술인에 대한 특혜성 논란 여지 예술의 탈장르화로 정책 집행 복잡성 증대	대전예술인복지센터 설립 논의 확산 문화예술예산 증액 등 민선 7기의 높아진 정책 지원 의지 기본소득제 등 복지 이슈 관심 증대

- 사회 전반적으로 예술의 탈장르화가 진행되고,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은 기존의 전통적 관점으로 예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예술인 복지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예술 외 다른 정책 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특혜성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도 잔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단위에서 예술인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대전시도 대전예술인복지센터의 설립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은 큰 기회임. 민선7기

대전시의 약속인 문화예술예산 증액이 이뤄진다면 대전예술인 복지정책 투입예산의 대폭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최근 우리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등 복지담론들도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향적 추진을 위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2) 제반 여건의 극복과 활용 방향

- 따라서 위에서 제기된 강점과 약점, 위기, 기회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향이 다음과 같이 이뤄져야 함

- 강점을 활용한 기회 활용 전략으로는 우선 예술인 복지 관련 법규와 예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연구를 정기화하여 정책적 기반을 튼튼히 쌓아야 함

- 강점을 활용한 위기 극복 전략으로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시, 예술인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체제로 정책 효율성 도모해야 함

- 약점 극복을 통한 기회요인 활용 전략으로는 무엇보다 대전예술인복지센터의 조속한 설립으로 정책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위협요인 회피와 약점 최소화 전략으로는 예술인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술인 사이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노력에 지원을 쏟아야 할 것임

표 4-12. Cross-Swot 분석을 통한 주요 추진전략 도출

SO 강점을 활용한 기회 활용	ST 강점을 활용한 위기 극복
예술인 복지 관련 법규와 예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연구를 정기화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시, 예술인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체제로 정책 효율성 도모
WO 약점 극복을 통한 기회요인 활용	**WT 위협요인 회피/약점 최소화**
대전예술인복지센터의 조속한 설립으로 정책 안정성 확립	예술인 사이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2절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 체계

1. 예술인 복지 담론의 흐름

1) 수평적 관계 구조로의 변화

- 과거 정부의 예술정책들은 행정 영역의 정책입안자들로부터 현장으로의 이어지는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예술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한계들을 지니고 있었음. 물론 여기에는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묵묵히 자신들의 예술활동에만 전념하거나 혹은 해야만 하는 상황적 조건이 존재했으며, 도제식으로 구성된 예술판의 특성에서 기인한 권위주의 문제들이 작동하였음

- 노무현 정부 이후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 당사자들의 참여를 방식이 행정적으로 확산되었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블랙리스트와 탄핵정국, 미투운동 등의 확산으로 보다 많은 현장 예술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목표를 관철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음

2) 예술인 복지의 필요성 확산

- 문화 예술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매우 불안정하고 고용구조 및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로서 존재해왔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예술인을 둘러 싼 환경 역시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음

- 이와 더불어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적 성향의 한나라당 등에서도 공약으로 예술인들의 복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으나, 그 본격적인 실현은 최근에야 실현되기 시작했음.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처우들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많은 예술인 당사자들 역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음

3) 예술노동담론의 대두

- 이 과정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예술노동담론으로, 그간 예술은 노동과 구분되는 자기실현이자 창의적 활동의 영역으로 노동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던 인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예술산별노조운동이 존재하였고, 영화산업노조 등의 예술분야 노동조합 운동들이 존재해왔으나 예술노동이라는 단어가 무게 있게 다뤄지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대 이후임. 이는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산업이 성장하면서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영화노조를 비롯한 기존의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활동과 더불어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과 같은 예술계 싱크탱크들이 예술과 노동의 결합한 예술노동담론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간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여전히 예술노동이라는 의제는 내외부적으로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술가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를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술영역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침투의 결과(서동진)로 해석하거나, 노동(Labour)과 일(Work)를 구분하면서 '예술과 노동은 화해할 수 없는 대립항'임을 주장(정강산)하는 입장이 존재. 이외에도 예술노동 의제화에 대해서 예술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입장들이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노동에 대한 의제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 고용보험' 등의 구성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 예술인 권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

1) 복지재단 및 협동조합 설립

(1) 예술분야별 자체적으로 복지재단 조직

- 오늘날 예술인복지재단이 전 예술인들을 상대로 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정부 혹은 사회가 예술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예술인들은 자체적인 복지사업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

- 1981년 예술인 의료보험조합, 1984년 한국영화인복지재단의 설립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영화인복지재단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원로 영화인에 대한 지원 및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2005년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연극인복지재단은 연극인에 대한 의료비지원, 일자리 지원, 원로연극인자립지원, 역량강화지원, 심리 및 법률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연극인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

-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는 201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영화 스태프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복지정책 수립 및 제안, 영화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조직되었으며, 노동부 등의 펀드를 받아 영화산업실무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한 바 있음

(2) 예술인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이어졌음. 이는 문화예술분야 역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진행됨. 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동조합 현황 사이트를 통해 예술을 키워드로 한 협동조합의 숫자는 318개가 검색되며, 이들 대부분은 2010년대 이후에 설립된 단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협동조합은 좁게는 조합원들끼리 자원을 공유하고 배분하는 방식으로 복리를 극대화하는 법인체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이러한 복리를 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형태를 갖음

- 해외에서는 벨기에의 예술가들이 만든 SMart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1998년 SMart는 조합원인 예술인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각종 계약이나 행정, 재무, 법무 등의 사업을 관리해주고, 창작활동을 위한 인프라, 지불보증기금, 사회보험 혜택들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임. Smart는 벨기에에서 12개 지부 85,000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제 벨기에를 넘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로 확장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의 형태로 장비 및 공간을 공유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프로젝트를 수주 및 수행하는 등의 예술인협동조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의 예술인협동조합의 설립은 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문화예술적인 기여로 환원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잘 알려진 사례인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M.A.Coop)의 경우, 서울시가 예술인 공동체로 조성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구성한 공동주택 운영을 협동조합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입주 예술가들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에서도 원도심을 비롯하여 예술인들의 거주,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들이 진행 중이며,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을 단순히 소모품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복지와 임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2) 예술인 노동조합 및 유니온 설립

- 예술노동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확산은 예술인들의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음.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분야별 협회나 조합 등의 단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술인들의 고용구조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

- 예술인 노동운동은 이미 2000년대 초반 문화예술산별노조 운동 및 출범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예술기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었음. 이후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문화예술협의회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2006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시작으로 2013년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뮤지션 유니온, 출판노조, 2017년 공연예술인노동조합, 2018년 디지털콘텐츠노동조합, 방송스태프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노동조합 결성이 확산되고 있음. 이들은 비교적 고용관계가 명확한 문화예술협의회의 예술가들과 달리 보다 더 모호한 고용관계 및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서 예술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결을 달리함.

- 현재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인 노동조합들은 다음과 같음

표 4-13. 문화예술 부문 노동단체 현황

조직명	조직시기	분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1988	방송연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2006	영화 제작 스태프
예술인소셜유니온	2012	예술전반
뮤지션 유니온	2013	음악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2013	출판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2013	예술 강사
공연예술인노동조합	2017	연극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2017	무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2017	문학
방송작가유니온	2017	방송작가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 지회	2018	웹툰, 웹소설 등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2018	방송 제작 스태프

- 이들 노동조합들은 각 영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방식과 운동 전략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해당 문화예술영역의 산업화 수준, 작업 및 활동형태, 고용 및 계약 구조에 따라서 그 차이들이 존재함

- 이들 단체들은 개별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영역의 산별노조 구성을 목표으로 '문화예술노동연대'라고 하는 노동조합들의 연대체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임

그림 4-3. 문화예술노동연대 기자회견 모습

- 이들 단체들이 각 분야의 모든 예술인들을 대표할 만큼의 많은 조합원이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소통 통로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 각종 현안의 논의 파트너로서 정부 및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

3)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예대넷)은 2017년 9월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가 예술대생의 차등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2018년 4월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로 명칭을 전환하였음. 상근 활동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전국 30개의 대학 또는 예술단과대학이 가입되어 있음. 가입 대상은 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기구에 한정되며, 개인은 활동가로서 참여가 가능함

- 단체 규약 상에서는 단체의 목적으로, 예술대학생과 청년예술가의 매개, 예술대학의 교육 및 청년예술가의 삶의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이슈에 공동의 목소리 표출, 문화예술계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실천적 활동을 제기하고 있음. 정리하자면 청년예술가와 예술대학생이 사회와 예술계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에 그 지향이 있음

- 주로 문화예술과 매개한 사회운동, 연구, 연대, 기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 예술인들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 제언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그림 4-4. 예대넷(예술대학생 네트워크) 로고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인들로 인정될 수 있는 실적과 경력이 증빙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아직 배움의 과정인 대학생이나 청년예술가들은 이로부터 소외될 여지가 존재하고 있음. 더욱이 예술대의 경우 일반대학에 비해 높은 등록금과 입시를 위해 레슨비 등 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재학과정에서도 재료비 등의 부담이 존재하고 있음. 그럼에도 취업의 통로는 좁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예대넷이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 5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음
  - 근거 없는 차등등록금 철폐 및 사비부담 근절 정책 마련
  - (가) 고등예술교육 진흥법과 예술대학 지원정책 발의
  - 계원예대 송수근 총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재조사 및 처벌
  - 위계폭력/성폭력 가해자 적극 배제조치 마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학생 청년 쿼터” 마련

• 청년예술인들이 스스로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예술인 복지 및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예대넷의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4) 예술인 기본소득 운동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오늘날의 불평등 및 사회양극화 그리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및 기계에 의한 실업 문제 등의 대안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정의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함

• 기본소득운동에서는 불안정계급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증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불안정 고용 및 저소득이라는 예술인들이 지닌 특성과 유사하며, 기본소득의 이론가 중 한명인 가이 스탠딩 역시 예술인들 역시 프레카리아트의 대표적인 경우로 거론하고 있음

• 이미 전면적인 기본소득 이전에 청년 기본소득, 아동 기본소득, 장애인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과 같은 부분적 기본소득운동이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성남시와 경기도 등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또한 정의당을 비롯하여 진보정당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모색하는 상황임

그림 4-5. 부천 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위원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술계에서도 예술인 기본소득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기본소득정책에 친화적인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부천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부천예술인기본소득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음.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현 박남춘 인천시장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조례'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5) 문화예술계 반권위주의 운동

- 문화예술 분야가 지닌 특징 중 하나는 도제식의 교육, 고용 관계임. 이러한 관계 맺음과 여기에서 오는 상하관계의 형성은 강력한 권위주의를 형성하고 이는 불합리한 고용구조 및 분배구조 그리고 성폭력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지난 박근혜 정권시기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태 및 탄핵정국, 그리고 미투운동의 거센 불길은 그동안 도제식의 교육방식과 위계시스템에 은폐되어 있던 문화예술계 내부의 반권위, 반성차별운동에 대한 확산으로 이어졌음
- 미투운동을 통해 기존의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권위주의 문제들이 밝혀졌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이하 성반연)으로 젊은 여성 연극인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기존 연극계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권위주의와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고 미국의 시카고씨어터스탠다드(CTS)의 사례를 가져와 한국형 공연예술 자치규약을 제작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음
- 한편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저항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창설과 활동으로 이어졌음. 이들은 2016년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당시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블랙리스트 및 문화계의 적폐들에 대해 문제제기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음. 이 단체에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제작자나 협회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영역 전반이 지닌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림 4-6.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리스트 규탄 집회

3. 대전 예술인복지 정책이 가야할 방향

1) 예술인 권리 확보 활동의 시사점

- 예술인 복지를 비롯한 예술인들의 문제는 현장의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의 의견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기존의 하향식 정책구조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여, 현실과 괴리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한계를 가져온 바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음

- 예술인들이 처한 경제적 곤란은 결국 해당 영역의 산업구조, 고용구조, 분배구조의 문제와 연계되는 것이기에 예술인 복지의 문제 역시 노동의 관점과 연계되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복지는 단순히 물질적인 수혜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기에, 권위주의와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지역화폐를 활용한 예술인 기본소득 혹은 예술인 생계지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미가 있음

-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지원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적 차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계의 권위주의나 소통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예술인 복지의 사회적 필요성

(1) 무엇을 위한 예술인 복지인가?

- 우리나라에서 예술인 복지는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예술인 복지법」은 그동안 많은 논의 및 발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가 2003년에 사망한 조각가 故 구본주 유족 측과 삼성화재보험 간의 분쟁, 그리고 2011년 사망한 시나리오 작가 故 최고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됨
  - 故 구본주 조각가와 삼성화재보험 간의 분쟁 사건을 요약하면, 당시 교통사고로 요절한 전도유망한 예술인의 보상금 책정을 둘러싸고 삼성화재보험 측에서 예술인의 창작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보상판정 때문에 벌어진 사건임. 이를 통해 예술가의 노동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 故 최고은 작가의 경우에는 재능을 인정받은 젊은 작가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
- 「예술인 복지법」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활동은 예술인의 기초 생활 보장 그리고 창작 지원 등에 머무르고 있으며, 예술인의 특수성에 기인한 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복지정책에서 크게 차별화된 정책을 수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대전예술인복지정책에서는 기초 생활 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예술인의 특수성에 따른 복지 정책을 실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예술인들의 기초생활 안전망 구축에 집중할 것인가,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예술적 감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둘 것인가?

- 사회복지정책론에서 흔히 말하는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 세 가지'

> 첫째, 경제적인 보장으로 실업이나 이혼, 노령 등과 같은 사회적인 힘에 의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때 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
> 둘째,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이들이 보유한 재산의 시장가치가 얼마인가와 상관없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
> 셋째,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범위의 사회 서비스를 계급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최선의 수준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

- 결국 국가체제 안에서 특수한 상황에 따른 복지, 최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 그리고 일정한 문화향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함. 이것은 그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임. 일례로 스웨덴에서는 예술인 복지정책 자체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복지 정책이 두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러한 복지 체계의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복지의 근본적인 의미, 예술인 복지에 대한 개념에 따라 제한된 예산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초기에는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지만, 장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굳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최저 생활 보장을 바탕에 두고, 그다음의 가치를 제공하는 복지로 가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2) 예술을 노동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

- 최초의 예술인 복지 개념인 유네스코의 결의문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1980)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72년 유네스코(UNESCO)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예술인들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음. 1974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문을 얻어 "예술인 지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고, 1975년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77년 유네스코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예술인에 대한 교육, 훈련, 고용, 저작권, 임금, 노동조건, 사회 보장 혜택 상황을 조사하였음
- 그 결과로 1980년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라는 결의문을 작성하였으며, 이 결의문은 "예술인에게 주어진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예술인이 누려야 하는 소득과 사회보장과 관계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논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유네스코가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자문을 얻은 곳은 국제노동기구(ILO) 임.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서양에서는 예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인식의 토대 위에 예술인 복지 개념이 정립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의 노동 인식

-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와 혐오 때문임. 이에 따라 북한에서 상시 사용 중인 노동(勞動)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근로(勤勞)라는 단어로 치환되어 사용되고 있음. 두 번째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따라 생겨난 노동에 대한 비하 인식 때문임. 노동은 육체노동이나 공장 노동 등 단순한 노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이것은 유교적 권위주의와 연계되어 의사의 의료행위를 노동행위라 생각하지 않고, 교사가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예술인의 예술 행위 또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통념이 자리 잡게 되었음
-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다른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자신의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노동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4.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1)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비전

- 상술된 대로 예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예술인을 노동자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예술인복지 담론의 추세이며, 본 연구도 이러한 흐름의 확산에 발맞춰 "예술을 노동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
  - 예술을 노동으로 인식하는 개념은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며, 우리 헌법의 기본인 천부인권 사상과도 연결됨.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 마찬가지로 예술인은 예술 행위를 통해 노동과 똑같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임
  - 예술을 노동으로 인정할 때,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조건, 특히 예술 행위와 업적 등의 평가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음
  - 예술이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점차 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음. 이는 청년, 장년, 노년 등 각 계층의 예술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결국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이와 같은 핵심 가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9대전예술인복지정책'의 비전을 다음과 설정함

예술인이 행복한, 예술로 풍성한 문화도시 대전

- "예술인이 행복한"은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대전 지역의 예술인들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를 보호받고 일상생활에서 위협 요인으로부터 안전망을 제공받는 환경이 조성됨을 의미

- "예술로 풍성한 문화도시 대전"은 예술인 복지 정책의 구현이 단지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대전의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건강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대전시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뜻함

2) 비전에 따른 목표 설정

- "예술인이 행복한, 예술로 풍성한 문화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9대전예술인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목표를 축으로 각각의 핵심과제를 설정[11)]

11)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각각의 핵심사업명과 단위사업명은 모두 가칭으로, 실행 단계에서 변경되고 사업간 통폐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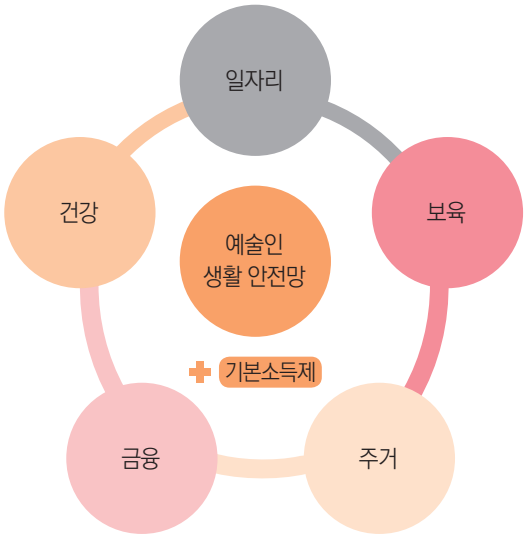

그림 4-7. 예술인생활안전망의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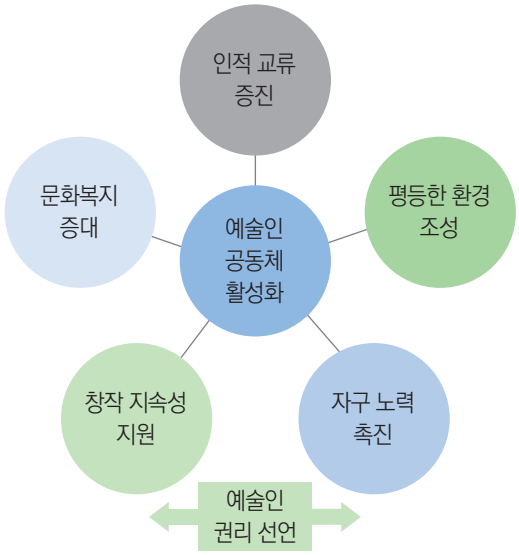

그림 4-8. 예술인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요소

▌목표 1.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생활 안전망 확보

- 대전 지역의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생활 안전망은 일자리, 주거, 건강, 금융, 자녀돌봄이라는 5개의 주요 영역별로 정책이 추진됨. 여기에 예술인 기본 소득제가 중장기 과제로 추가되어 목표 1을 실현하기 위한 총 6개의 핵심과제를 설정. 사업 단위로 보면 단위사업 포함 총 13개의 사업을 제안함

- 첫 번째 핵심과제 〈대전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개의 단위 사업 – '예술인 동반자 사업', '예술 동반 만남의 광장'을 제안

- 두 번째 핵심과제 〈대전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2개의 단위사업 – '예술인 공공주택 임대 지원'과 '예술인 분양권 인센티브제'를 제안

- 세 번째 핵심과제 〈대전 예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3개의 단위사업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예술인 헬스 케어'를 제안

- 네 번째 핵심과제 〈대전 예술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3개의 단위사업 – '예술인 SOS 생활 안정 지원금'과 '예술인 창작 융자 지원', '예술인 대출이자 지원'을 제안

- 다섯 번째 핵심과제 〈대전 예술인의 자녀 안심 돌봄〉을 위해 2개의 단위사업 –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과 '국공립 유치원 입학 인센티브제'를 제안

- 이와 함께 여섯 번째 핵심과제로 〈대전형 예술인 기본소득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목표 2. 예술인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예술복지 증진

- 대전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는 일회성 수혜를 넘어 지속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예술인 공동체가 활성화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직 ·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2019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두 번째 목표임. 인적 교류 활성화, 예술인 문화복지, 평등한 창작환경, 창작 지속성 지원이라는 4개의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예술인 자구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여기에 예술인의 복지적 권리를 이념적으로 선언하는 '예술인 권리장전' 선포까지 총 6개의 핵심과제를 설정. 사업 단위로 보면 단위사업 포함 총 12개의 사업을 제안함

- 첫 번째 핵심과제 〈대전 예술인 연결망 촉진〉을 위해 3개의 단위 사업 – '예술인 사랑방(공유공간) 운영 지원', '예술인 모임 지원','예술인 복지 코디네이터 양성'을 제안

- 두 번째 핵심과제 〈대전 예술인의 문화 복지 증대〉을 위해 2개의 단위사업 – '버전-업 예술인 패스'과 '대전 예술인을 위한 복지연수시설 마련'을 제안

- 세 번째 핵심과제 〈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지원〉을 위해 2개의 단위사업 – '위계적 폭력 예방 · 대응 프로그램'과 '불공정 행위 고충처리 창구 운영'을 제안

- 네 번째 핵심과제 〈대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성 지원〉을 위해 3개의 단위사업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경력단절 예술인 경력이음 사업', '신진 예술인 성장이음 사업'을 제안

- 또한 중장기적으로 자발적이고 예술인의 자구 노력으로 형성되는 예술인 공동체가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을 모색할 것을 다섯 번째 핵심과제로 제안

- 이와 함께 여섯 번째 핵심과제로 〈예술인 권리장전 선포〉를 선포하여 예술인복지의 중요성과 정책 추진 의지를 천명할 것을 제안

- 2019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비전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집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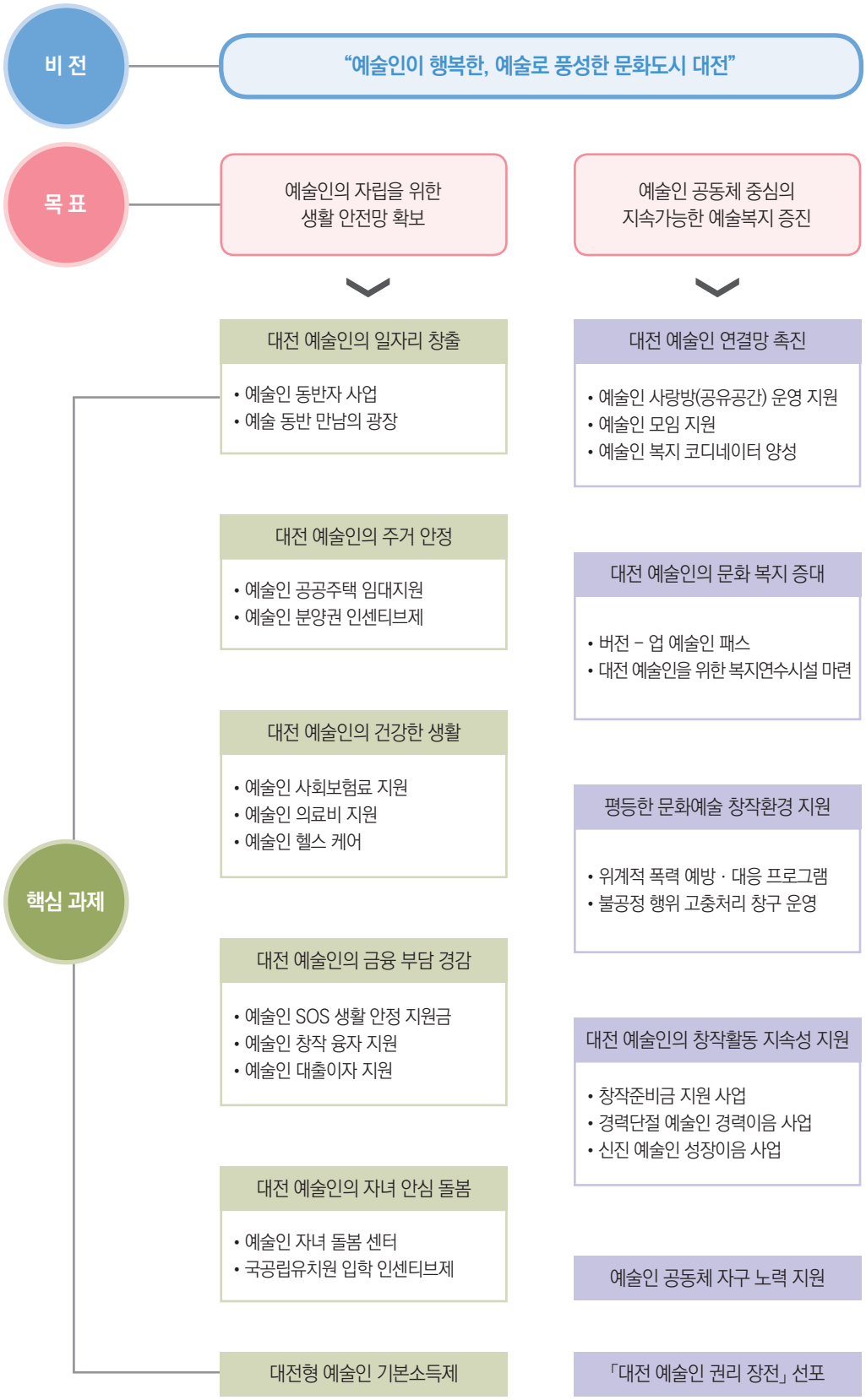

그림 4-9. 2019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비전 체계

제5장

예술인 복지 정책 목표별 전략과제

1절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생활 안전망 확보

2절 예술인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예술복지 증진

1절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생활 안전망 확보

□ 핵심과제 1. 대전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 사회 토대 마련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방지 및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전문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 보장

▮ 단위사업 1. 예술인 동반자 사업

(1) 사업 개요

- 예술인들의 창조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대전지역의 기관 및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예술인의 매칭을 통해 예술적 협업 및 프로젝트 진행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 중인 '예술인파견지원사업-지역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예술인파견지원사업-지역사업'의 공백기 동안 예술인-기업 간의 협력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당 예술인들의 활동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예술인 동반자 틈새지원 사업'을 대전시 자체 기획사업으로 추진

- 국고지원사업(예술인파견지원사업-지역사업)과 자체사업(예술인 동반자 틈새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 예술인과 기업이 실질적 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예술인의 생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함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② 지원내용

• 공모를 통한 참여기업 · 기관 · 마을 발굴 및 예술인 매칭

• 지역 예술인-기업 간 협업 기회 제공

• 참여예술인에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 지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지역사업 추진방침을 준용하되, 자체기획사업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3) 사업 절차

• 참여기업 · 기관 · 마을 발굴, 예술인 참여인력 확보, 사업프로그램 기획

• 연차별 세부사업 기획 및 홍보, 사업시행, 사업 평가

• 각 단계별 세부추진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전문화재단의 협력으로 진행함

• '예술인 동반자 틈새지원 사업'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지역사업'의 종료 시점에 맞물려 착수하며, 예술인 활동비 등의 사업비는 대전시 자체 예산 수립 필요

(3) 사업 절차

• 1차년도 : 참여기업 · 기관 · 마을 발굴, 예술인 참여인력 확보, 사업프로그램 기획

• 2차년도 이후 : 연차별 세부사업 기획 및 홍보, 사업시행, 사업 평가

※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하여 홍보 접수 진행

• 기업 및 기관과 예술인의 매칭 및 관련 사업 추진은 대전문화재단에서 진행

• 예술인 동반자 틈새 지원 사업은 예술인동반자 사업의 종료 시점에 맞물려 착수하며, 사업비는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

▮ 단위사업 2. 예술 동반 만남의 광장

(1) 사업 개요

- 문화예술분야 인력이 필요한 기관과 기업을 한곳에 모아 예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

- 예술인에게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예술적 가치를 함양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창출의 기회로 작용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 문화예술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컨설팅 참여 가능

② 지원내용

- 예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참여방법, 면접법, 수행역할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참여기관 · 기업과 참여예술인과의 1:1 매칭 현장인터뷰

- 예술활동증명 현장신청 및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등 제공

그림 5-1. 2015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 핵심과제 2. 대전 예술인의 주거 안정

-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은 이들의 예술활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역량 강화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소비 생활 중 거주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전시 차원에서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 및 대전도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예술인의 주거안정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 그간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예술인들의 창조적 역량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된 이후 발생해왔던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난 이후 지역이 다시 쇠퇴하는 사례들을 볼 때,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활동할 공간의 확보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함

- 현재의 청년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대전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은 지역 문화 예술적 토대 마련과 자생적 문화예술생태계를 유지 가능케 하며,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서의 예술인들의 존재는 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유대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단위사업 1. 예술인 공공주택 임대 지원

(1) 사업 개요

- 현재 대전도시공사는 5개 구에 69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청년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임대주택 '대전드림타운' 3000채를 건설하기로 하였음.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 예정인 임대주택의 일부를 예술인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예술인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 예비 예술인 설문조사에서 상당수의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타지역으로 떠나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 예술인이 대전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예술인 공공주택을 별도로 배분하여 대전 지역의 예술활동의 세대 간 연속성을 지원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
- 소득기준: 당해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예술인

② 지원내용

- 예술인만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및 청년예술인 전용 임대 주택
- 임대기간 : 2년마다 자격검증 후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임대료 : 현행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기준
- 공동체 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입주자들이 스스로 정한 생활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지원

(3) 사업 절차

- 1단계 : 예술인 대상 임대주택 수요 조사 실시 및 신청자 모집
- 2단계 : 임대주택 수요자 특성별 지원 가능 범위 및 조건 상정과 대전시가 주도하여 대전도시공사 및 LH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진행
- 3단계 : 예술인 아파트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개시

그림 5-2. 서울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막쿱

▮ 단위사업 2. 예술인 분양권 인센티브제

(1) 사업 개요

-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영위를 위해 대전시 자체적으로 대전도시개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약을 통해 예술인들의 분양권 인센티브제를 추진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 소득기준: 당해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② 지원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및 대전도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시 예술인 대상 가산점 부여

(3) 사업 절차

- 1단계 :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협의를 통해 예술인 분양권 인센티브제 논의

- 2단계 : 2021년도 입주자 선정시 예술인 인센티브제 시행

□ 핵심과제 3. 대전 예술인의 건강한 생활

- 수입이 부정기적인 예술인에게는 의무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의 납부에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통한 문제 해소 필요

- 또한 실태조사에서도 다수의 예술인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의료비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따라서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요구

- 예술창작활동 중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전문기관 및 의료생협을 활용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 창작의욕고취 및 예술활동 증진을 도모

▮ 단위사업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1) 사업 개요

-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 유지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복지처우를 개선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소득이 창출되는 예술활동을 하는 모든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프리랜서)을 가입한 예술인

② 지원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40~50%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6개월)

※ 지원금 상한액: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7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근로자인 예술인의 경우 월소득 179만원 기준 납부 보험료

※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사후 지원

그림 5-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3) 사업 절차

- 1단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위탁 협력 또는 대전시 자체적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확보
- 2단계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자 모집 및 사업추진

▮ 단위사업 2. 예술인 의료비 지원

(1) 사업 개요

- 국민의료보험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할 때 자기 부담금 긴급지원 등 예술인들이 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그에 따른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등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중증질환 우선지원

- 소득기준: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이하 이며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

※ 가구원: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 중 성인

② 지원내용

-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

금 지원 (1인 최대 500만원)

• 진료비 10~20% 감면 혜택 및 무료 의료강좌 등

※ 의료비 지원 방식 :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3) 사업 절차

• 1단계: 예산확보 및 관계기관 논의

• 2단계: 신청자 모집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개시

▮ 단위사업 3. 예술인 헬스 케어

(1) 사업 개요

• 예술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창작능력 증진 도모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등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 소득기준: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이하 이며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

② 지원내용

• 대전 예술인 플러스 건강검진

  – 현행 지역보험이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 항목에 더해 추가적인 항목을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전 예술인 운동 프로그램

  – 지역의 의료생협, 또는 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일정 할인율 제공

  ※ 향후 점진적으로 별도 스포츠 관련 민간센터들의 참여 유도

(3) 사업 절차

• 1단계: 예술인 헬스 케어 관련 업체 및 단체 협의

• 2단계: 지원자 모집 및 지원

□ 핵심과제 4. 대전 예술인의 금융 부담 경감

-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소득 수준이 달라지는 예술인들의 일시적인 자금 운용 곤란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적 타격 최소화
-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 마련 및 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

▮ 단위사업 1. 예술인 SOS 생활안정 지원금

(1) 사업 개요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영

- 지역 기반의 금융권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맞춤형으로 제공

  예) 대출이자 할인, 유동적인 상환기간 적용, 거치 기간 확대 등

- 공공자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의 한계점 보완 및 제1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대출로, 대전시 예술인 금융 안전망 구축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등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 직전 년도 개인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
- 신청제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 판단정보보유 및 연체중인 사람 등

②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대출
- 대출한도 : 최저 50만원~최고 500만원 이내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300만원 이내(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 대출종류 :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등

(3) 사업 절차

① 사업 추진 주체

- 대전예술인복지센터 : 필수서류 검토,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
- 대전신용보증재단 : 신청자별 금융자료 확인
- 협업은행(미정) : 특례보증 실행

② 사업 추진 절차

- 1단계: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 및 협업은행 선정
- 2단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개시

그림 5-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소개

▮ 단위사업 2. 예술인 창작 융자 지원

(1) 사업 개요

• 예술인이 창작 관련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융자 추천 및 보증 지원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 단체 주소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문화예술단체

※ 단체 대표자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여야 함

②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창작공간 시설 신축, 개보수

• 운영자금 : 창작공간 매입비, 임차료, 전시, 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

• 상환조건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분 상환

• 3년 분기별 균분 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분 상환

(3) 사업 절차

① 사업 추진 주체

• 대전예술인복지센터 : 필수서류 검토,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

• 대전신용보증재단 : 신청자별 금융자료 확인

• 협업은행(미정) : 창작자금 대출 실행

② 사업 추진 절차

• 1단계: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 및 협업은행 선정

• 2단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단위사업 3. 예술인 대출이자 지원

(1) 사업 개요

• 학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을 비롯한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한 이후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시적인 상환 곤란을 겪는 경우 이자 지원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 단체 주소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문화예술단체

※ 단체 대표자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여야 함

② 지원내용

• 융자 이자 전액 지원(단, 연체이자는 본인 부담)

• 이자차액 : 대출실행 후 납부이자 중 1.5% 지원

(3) 사업 절차

① 사업 추진 주체

• 대전문화재단(향후 대전예술인복지센터로 이관) : 필수서류 검토,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

• 대전신용보증재단 : 신청자별 금융자료 확인

• 협업은행(미정) : 창작자금 대출 실행

② 사업 추진 절차

• 1단계: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 및 협업은행 선정

• 2단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핵심과제 5. 대전 예술인의 자녀 안심 돌봄

- 고용 불안정과 경력 단절의 원인이 되는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특성에 맞도록 보육서비스 제공
- 예술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단위사업 1.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1) 사업 개요

- 현재의 돌봄 서비스는 전일제 근무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인이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예술인의 작업 특성에 맞춘 특정 시간이나 기간, 단기 돌봄, 야간 보육 등 상황에 맞게 조건을 변경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24개월~10세 자녀가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단,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12세까지 이용가능

② 지원내용

- 대전시와 대전예술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이용
  - 대전광역시 : 공간 및 예산지원
  - 대전예술인복지센터 : 돌봄 센터 운영사업 추진
  - 돌봄센터 : 자녀 돌봄 프로그램 운영

(3) 사업 절차

- 1단계 : 「대전예술보건소 조성 계획」 내 예술인 자녀 돌봄교실 개소 계획 포함
- 2단계 : 돌봄교실 운영 사업 수탁 단체 공모 및 선정
- 3단계 : '대전예술보건소' 건물 내 예술인 가정 돌봄교실 개소

※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항목과 예산 산출 및 기획조정실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

그림 5-5. 운영사례 : 반디돌봄센터(좌),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우)

▮ 단위사업 2. 국공립 유치원 입학 인센티브제

(1) 사업 개요

-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비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예술인의 경제적 상황과 활동여건을 고려할 때, 예술인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지원시, 일정 비율 할당 혹은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한 예술인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입학 혜택을 부여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해당 연령대(5-7세) 예술인 자녀

② 지원내용

- 국공립 유치원 예술인 자녀 할당제 실시(현행 제도에서는 추첨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술인 자녀에 대한 일정 비율의 할당제를 실시)

(3) 사업 절차

- 1단계 :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국공립유치원 예술인 자녀 할당제 구성논의
- 2단계 : 국공립유치원 원생 모집시 예술인 자녀할당제 시행

□ 핵심과제 6. 대전형 예술인 기본소득제

▮ 추진배경과 사업목적

• 기본소득제란?

- 최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달로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빈곤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주목받고 있음
- 기본소득제란 모든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의미함
- 미국, 스위스, 브라질, 인도 등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정당한 제도로 활발하게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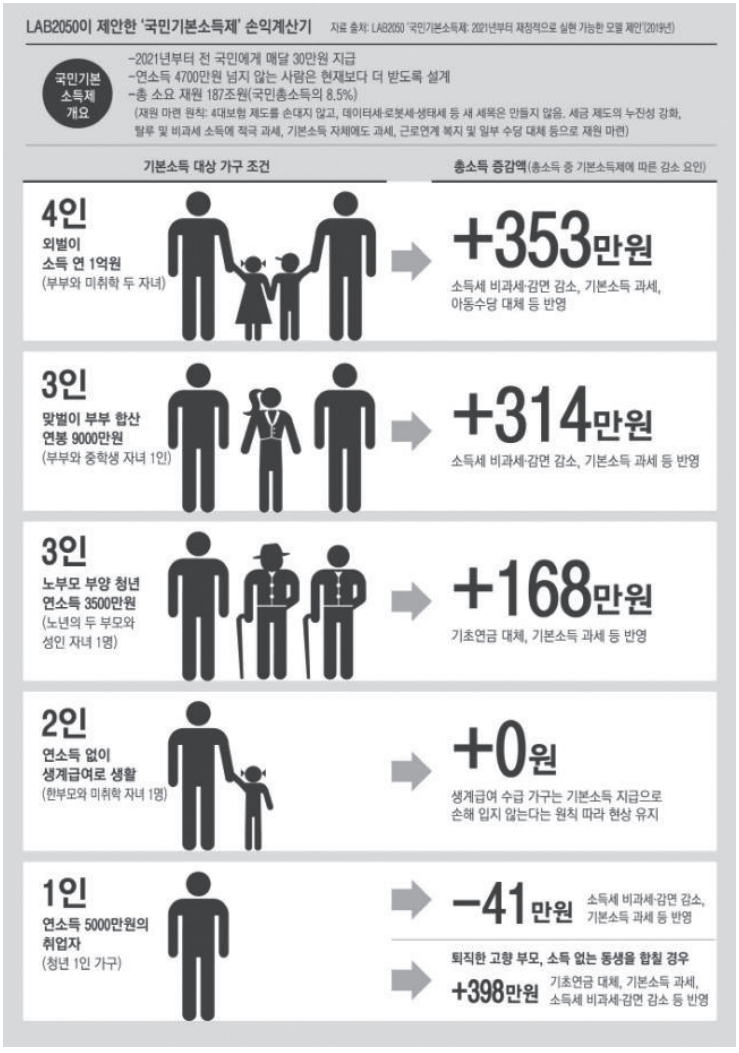

그림 5-6. '국민기본소득제' 손익계산기(LAB2050 제안)

• 한국에서의 기본소득제 논의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특정 세대나 직군을 대상으로 부분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중에 있음
- 또한, 농업 종사 농민 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기본소득을 지금하는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도 적극 논의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운동이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 대전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부분적 기본소득의 연장선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한 바 있음

▮ 사업 내용

• 대전 예술인에게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전 예술인 기본소득제' 실시

• 기본소득은 경제구조와 기술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정규직 고용노동 중심 복지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 불안정 계층(프레카리아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술인 역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불안정성은 작은 사회경제적 위기에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따라서 예술인 기본소득의 지원을 통해 예술인 개개인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항시적인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지시스템으로서 취약계층,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복지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대전시만의 미래지향적이며 선진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으로서, 선제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과제로 지역 사회의 여론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방식 및 규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 사업 절차

• 1단계 : '대전형 예술인 기본소득' 관련 여론 수렴 및 토론회 개최

• 2단계 : '대전형 예술인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및 지원대상과 방식 및 규모 등에 대한 연구용역

• 3단계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형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2절

예술인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예술복지 증진

□ 핵심과제 1. 대전 예술인 연결망 촉진

- 오늘날 도시화와 같은 공간적 구조 및 개인주의와 같은 문화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 ·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구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대전 역시 마을만들기, 공유공간 사업과 같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한 시민들 간의 소통과 신뢰의 네트워크 형성이 진행 중에 있음

- 이러한 흐름은 예술계에도 유의미한 모델이 될 수 있음. 자발적이면서도 건강한 연결망의 구축은 예술인들의 정서적, 사회적 안정감을 증대시키고 교류를 통해 창작활동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

- 현재 대전에는 예술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시적인 교류의 장과 예술인 전용 공간이 전무하기에 대전지역의 다양한 유휴공간 활용 및 협약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고 네트워크와 공동체를 형성하여, 연대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기반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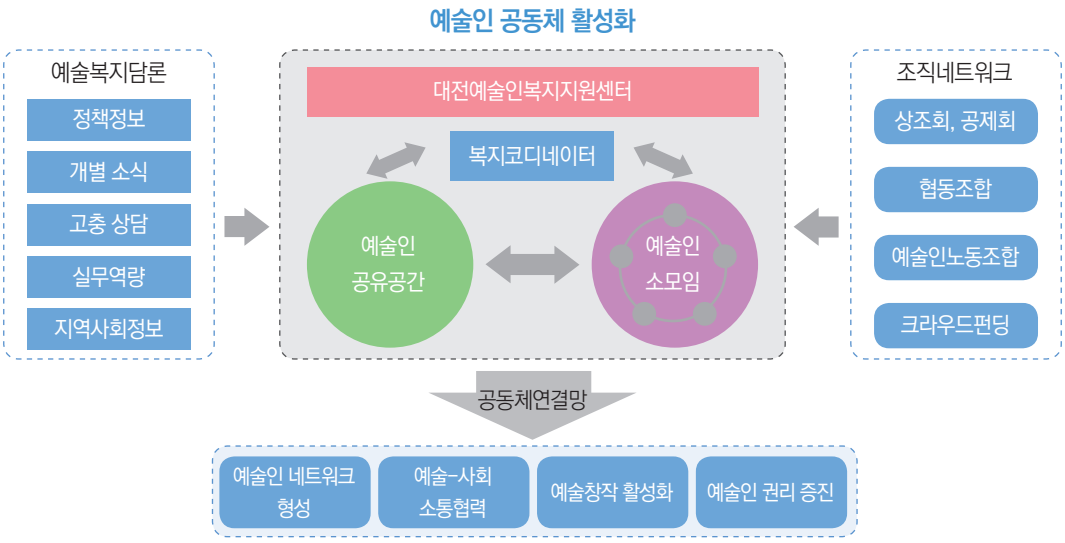

그림 5-7. 예술인 공동체 활성화의 개념도

• 예술인 공유 공간을 기반으로 온 ·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예술인들의 소소한 모임을 지원하면서 예술인은 자각과 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예술인으로서의 자각과 예술인들의 연대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모임과 연대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음

▮ 단위사업 1. 예술인 사랑방(공유공간) 운영 지원

(1) 사업 개요

•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며 더 나아가 공동창작과 협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교류의 거점 마련

• 지원대상 : 대전지역 예술인 누구나

(2) 사업 내용

• 예술인 공유 공간 운영의 주체는 예술인 본인들이며 공간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유공간을 활성화

• 신규공간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공간 모두 '예술인 사랑방'으로 조성 · 활용 될 수 있으며, 신규공간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내 문화 불균형 해소

•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협업프로젝트 등 예술인간의 연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 창작 및 전시 공간 지원, 담화 · 휴식 공간 지원, 회의 · 세미나 공간 지원

(3) 사업 절차

① 사업 추진 주체

• 대전광역시 : 유휴공간 제공 및 운영예산 지원

• 대전예술인복지센터 : 공간 운영 및 사업추진

② 사업절차

• 1단계 : 신규공간 및 유휴공간 발굴 조사 및 공간 선정

• 2단계 : 예술인 사랑방 리모델링 및 개소

▮ 단위사업 2. 예술인 모임 지원

(1) 사업 개요

- 대전 지역의 예술인들 간 소규모 모임 및 교류 활동을 장려하여 예술인들 간 공동체 유대 의식을 높임
-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임을 아우르는 폭넓은 교류활동 지원
- 소규모 교류를 기반으로 예술인들의 공동체성과 사업역량을 성장시켜, 예술인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 및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구축을 도모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인 예술인

② 지원내용

- 2019년 대전문화재단에서 시행중인 '문화예술모임 지원사업'에 기초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3명 이상 모여 활동하고자 하는 소소한 모임 비용 지원
- 지역 내 독립책방 등과 제휴하여 모임 공간과 소소한 모임 비용을 지원
- 다과비, 교통비, 소모품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정산 절차 최소화
- 모임 목적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형태 및 범위 설계

(3) 사업 절차

- 1단계 : 모임 지원신청서 접수
- 2단계 :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수시 지원

▮ 단위사업 3. 예술인 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1) 사업 개요

-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복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을 강사로 양성하여 대전형 예술인 복지 코디네이팅 시스템을 구축

※ 교육내용: 계약, 저작권, 법률, 기획 및 행정, PT 작성법 등

- 특히 예술활동관련 계약 및 저작권 이슈 등 법률 관련 행정실무 대응능력을 집중 강화하여 지역 문화예술분야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강사로 양성된 지역 예술인은 복지 코디네이터로서의 활동을 통해 창작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이 작용하는 문제들(위계적 폭력에 의한 피해 등)에 대해 효율적 응대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권장하는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또는 소재지)가 대전인 예술인 및 단체
- 예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관련 부서 (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등)
- 기타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사업체 등

② 지원내용

- 예술인복지 코디네이터 활동 희망자 교육기회 지원
-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공동개최)
-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온라인 교육
- 찾아가는 저작권과 계약실무 교육
- 각종 세무 행정 및 연말 정산 관련 교육
- 예술인복지지원 관련 강의 · 컨설팅, 현장모니터링, 실무지원, 실태조사활동요원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전문화재단 사업과 연계하고 대전예술인복지센터에서 활동비 지원

(3) 사업 절차

- 1단계 :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인력 확보
- 2단계 : 교육 수강 신청 접수 및 교육
- 3단계 : 양성과정을 거친 코디네이터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

□ 핵심과제 2. 대전 예술인의 문화 복지 증대

-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는 창작에 대한 배움이자 자극으로서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대전 예비예술인 설문에서도 주로 하는 여가활동가 가장하고 싶은 여가 활동 모두에서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는 높은 순위에 위치하는 항목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기회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술인패스와 같은 복지혜택 역시 대전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현실임

- 따라서 예술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와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은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삶의 풍요 증진에 중요한 복지 사업이 될 수 있음

그림 5-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패스카드

▮ 단위사업 1. 버전-업 예술인 패스

(1) 사업 개요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 현행 운영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패스의 가맹처가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대전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인 패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하고, 실질적 혜택을 확대

-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하며 예술인활동증명이 등록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공

(2) 사업 내용

① 예술인 패스의 지역 제휴처 확대

• 지역 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의 혜택 제공

② 자원봉사 포인트와 연동된 예술인 문화복지 포인트 부여

• 대전의 예술인들이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인정된 자원봉사시간을 일정액의 포인트로 적립하여 차년도부터 대전지역 예술창작 향유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운영

• 온라인에서는 대전예술인복지몰로 이용처를 한정하고, 오프라인 사용처도 대전지역에서 창작된 공연 · 전시 관람에 한정하여 대전 예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 절차

• 1단계 : 제휴 확대를 위한 추가 가맹처 확보

• 2단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예술인복지센터에서 예술인패스의 자율 운영 권한을 위수탁

• 3단계 : 예술인 문화복지 포인트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

• 4단계 : 서비스 실시 및 홍보

▮ 단위사업 2. 대전 예술인을 위한 복지연수시설 마련

(1) 사업 개요

• 대전 이외 지역에서 문화예술관련 행사나 일정이 있을 경우, 대전 예술인들이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렵고 지출 비용도 창작활동에 부담으로 작용

• 대전예술인들이 타 지역에서 업무나 활동 시 필요한 회의실, 숙소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활동력을 증대

•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하며 예술인활동증명이 등록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공

(2) 사업 내용

•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유휴공간을 찾아 대전예술인복지센터가 수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대전시가 예술인복지에 관한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며 대전광역시도 별도의 복지연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대전의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연수원을 신규로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따라서 새로이 건물이나 시설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주요 거점 도시 및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연수원 등의 시설사용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진

① 전국의 문화예술 관련 공공 연수시설들(예시: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과 제휴를 맺고, 대전의 예술인들이 회의와 숙박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보(대관료 할인, 연간 고정 예약비율 등)

그림 5-9. 경기도 일산의 아르코(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력개발원

② 성공적인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는 민간 게스트하우스(예시: 대구시 게스트하우스 '공감') 등과 제휴를 확대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탐방과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그림 5-10. 대구시의 게스트하우스 '공감'

(3) 사업 절차

- 1단계 : 문화예술 공공 연수시설 파악 및 업무 협의, 기관 조율
- 2단계 : 제휴 범위와 구체적 실행방안 확정
- 3단계 : 예술계 홍보와 신청자의 지속적 모집
- 4단계 : 문화예술 특화 민간 게스트하우스와의 업무 제휴와 지역 사회 홍보

□ 핵심과제 3. 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지원

- 예술계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피해회복 지원

- 예술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폭력과 예술활동 조직 내 부당 대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등한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지원

▮ 단위사업 1. 위계적 폭력 예방 · 대응 프로그램

(1) 사업 개요

- 예술인 위계적 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후 상담을 위한 협력체계 지원

-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민간 중심의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예술인복지정책 전담기관에서 일부 비용 부담(교육 ·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 조례에 명문화 하여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근거를 마련

(2) 사업 내용

- 예방 교육프로그램 : 젠더 폭력, 직장 내 갑질 등 위계적 폭력에 대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술활동 증명자 일정 시수 교육 참여 의무화)

- 법률 지원: 법률자문, 민형사 소송 등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 연계 법률상담 지원, 위계에 의한 폭력 관련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 사후 상담지원: 피해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회복프로그램 지원

- 의료 지원: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병원 연계

- 사회적 대응 지원: 기자회견, 언론보도, 항의방문 등

- 유관기관 연계: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안내

▮ 단위사업 2. 불공정행위 고충처리 창구 운영

(1) 사업 개요

• 예술활동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 2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② 지원내용

•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톱 지원 (상담, 신고, 피해구제 등)

•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 내 법률 등 전문가 배치, 예술 분야별 특화 상담 제공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검토 등

(3) 사업 절차

• 1단계 : 불공정행위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2단계 : 사업 시행 및 홍보

□ 핵심과제 4. 대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성 지원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자원을 제공하여 예술활동을 준비 및 지속 가능하게 함
- 예술 창작 역량 향상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향유에 기여하고 예술로 대전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창작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 확대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복돋우고 창작안정망을 구축
- 경력이 일천한 신진예술가의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을 도움과 동시에 자생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후속 프로그램 마련

▮ 단위사업 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작업계획 수립 전 준비 및 구상 단계의 활동 지원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의 75%이내 예술인
-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증빙 가능한 예술인(1건)

② 지원내용

- 지원규모: 1인당 300만원
- 지원대상사업 : 구체적인 작업계획 수립 전 준비 및 구상단계의 활동으로 조사/실험/연구, 공유, 피드백 등 준비단계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창작준비과정 모두 포함

(3) 사업 절차

- 1단계 : 창작준비자금 신청자 접수

• 2단계 : 선정자 지원

▮ 단위사업 2. 경력단절 예술인 경력이음 사업

(1) 사업 개요

• 설문 결과에서도 생계유지, 질병, 상해,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경력단절 예술인들이 다시 예술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과거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했으나 생계유지, 질병, 출산 등의 이유로 갱신하지 못한 예술인

• 예술활동을 지속해왔으나, 오랜 기간 단절되었으며 다시 예술활동을 희망하는 예술인

② 지원내용

• 예술 창작 재도약을 위한 교육강좌 및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인활동증명 재취득 지원

• 사회적 경제 영역과 제휴하여 문화공동체 활동에 참여

(3) 사업 추진 절차

• 1단계 :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2단계 : 선정자 지원

▮ 단위사업 3. 신진 예술인 성장이음 사업

(1) 사업 개요

• 학력, 경력, 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작품 발표(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여 전문 문화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 현실적으로 대전의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경력과 실적의 경험과 기회가 부족한 청년예술인들은 사각지대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장이음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의 근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사업 내용

① 지원대상

- 대전에 주소지를 둔 예술활동증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개인)
- 선정될 경우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결과발표회를 대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자

② 지원내용

- 창작활동발표 지원(공간 및 홍보물)

※ 대전예술가의집 공연장 및 전시공간 활용

(3) 사업 절차

- 1단계 : 지원신청자 모집
- 2단계 : 연내 공연/전시 개최 등 창작활동 발표 완료
- 3단계 : 해당 활동 실적을 근거로 창작지원 또는 예술활동증명 등 유관사업 연계

□ 핵심과제 5. 예술인 공동체의 자구 노력 지원

- 현재 정부와 지자체, 예술인복지재단 위주로 진행되는 창작지원사업과 복지사업은 결국 예술인들 스스로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결속력을 지니고 정책 대응의 목소리를 낼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예술분야별 협회 중심이거나 산발적으로 조직되었던 예술인들도 이제 특정한 목표를 견지하고 구체적인 자구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때 공공 영역에서도 이를 측면 지원한다면 예술창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대전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을 탄탄히 갖출 수 있을 것임

- 자발적인 예술인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자구적 노력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예술인들이 단순히 지원과 복지의 수혜자로 머무르지 않고 예술인 내부의 역량과 기획으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예술인 간 상호부조를 주도하는 자발적 예술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자구적 노력이 활발히 펼쳐진다면 그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지자체의 촉진 지원 방안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됨

- 사업 예시 1 : 실효성 있는 예술인 자원봉사시스템 운영
  - 청년예술인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실버 세대는 봉사 혜택을 받음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품앗이) 봉사 활동 장려
  - 예술인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예술인 패스와 연동해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을 높임

- 사업 예시 2 : 온라인 예술인 정보 플랫폼 “대전 아트 에브리타임”
  - 대전 아트 에브리타임”은 예술인들이 대전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예술 행사, 예술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술인 간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됨
  - 예술 관련 정보를 게시판별로 정리 및 집대성할 수 있게 하여 지방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정보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가의 역량 강화에 도움
  - 정보 공유와 소통의 주체가 예술인이라는 점에서 독립적 성향의 예술인들 간에 서로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예술계 내의 악행을 공론화하는 신문고의 역할로 공정한 예술계 형성에 일조할 수 있음
  - 또한 대전 지역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종합 플랫폼 제공하고, 플랫폼 내 자체적인 행사 진행하며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

- 대전과 타 지역의 예술행사, 예술인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예술전문 온라인플랫폼을 지역 예술인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구축 · 운영할 경우, 지자체와 대전예술인복지센터가 정보제공이나 모임 활성화 지원 등 실질적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그림 5-11.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

• 사업 예시 3.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 예술가가 스스로 자신의 예술활동과 프로젝트 구상안을 설명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예술 창작자와 예술 수용자 간에 의미 있는 소통 과정이 됨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이용자는 예술활동을 후원하고, 그 보상(reward)으로 예술활동의 결과물을 전시, 공연, 작품, 공예품 등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 형태의 예술구매활동으로 작용하여 예술향유의 반경이 넓어질 수 있음
-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예술인이 적극 활용하여 예술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 대전시에서 크라우드 펀딩 포털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후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예술인들은 대전 시민의 지지를 받아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 단, 크라우드 펀딩은 어디까지나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타 지역의 성공사례와 그동안의 실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술계의 수요를 분석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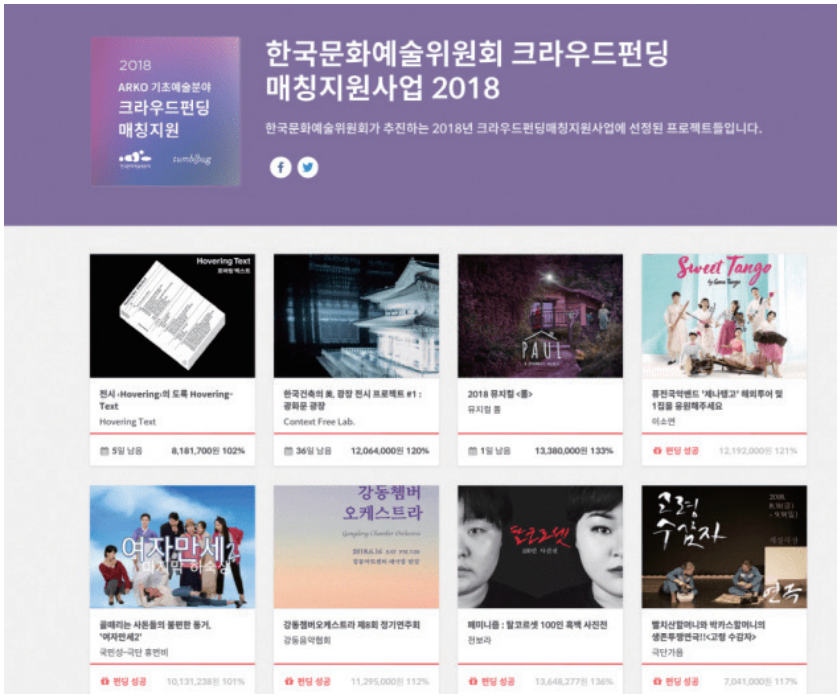

그림 5-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사업

• 사업 예시 4. 대전 예술인 상조회 · 공제회

- 대전지역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조회, 의료공제회, 주택조합 등을 결성하면 공공 영역에서 이를 일부 지원하여 예술인들의 복리후생 개선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대전예술간의 상부상조 및 생활의 안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대전예술인의 복리증진을 통해 예술가들의 중도이탈 및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예술인들에게 행복한 복지를 제공
- 대전 예술인 공제 운영과 연동하고, 지역 내 자발적으로 조직된 예술인 상조회와 제휴하여 대전의 주요 문화예술 시설을 결혼식 등의 장소로 제공

그림 5-13. 건설근로자공제회

□ 핵심과제 6.「대전 예술인 권리 장전」 선포

▮ 추진 배경과 사업 목적

-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술인이 스스로 자긍심과 연대의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예술인이 스스로 예술인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자각하고 자긍심과 연대의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
- 대전문화예술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적 사유를 함양 할 수 있는 기틀 제공

▮ 사업 내용

- 대전 예술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합의를 만들고, 이를 규범으로써 명시적으로 선언
- 예술계, 학계, 시민으로 구성된 예술인 권리장전 제정위원회를 설치
- 연구진을 구성하여 예술인의 책임과 권리, 권리장전 위반에 따른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권리장전 초안을 작성
- 예술인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예술인의 실태와 자긍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사업 절차

- 1단계 : '예술인 권리 장전'을 위한 연구진 구성과 초안 작성
- 2단계 : '예술인 권리 장전' 초안을 중심으로 예술인 의견 수렴을 통한 내용 보완
- 3단계 : '대전 예술인 권리 장전' 선언

제6장

정책 실행 방안

1절 정책 추진의 선결과제

2절 추진 단계와 투자 계획

1절

정책 추진의 선결 과제

1. 정책 대상의 설정

1) 정책 수요자(예술인)의 범위와 규정

- 서두에서 살펴보았듯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범주를 설정해야만 함. 그리고 그 기준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시대와 사회적 변화와 그 안에서의 합의 속에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 예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입증할 만한 주요 기준으로는 일반 공중에 의한 예술인으로서의 평판, 동료 예술인에 의한 인정, 예술적 직업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의 양, 예술활동에서 얻게 되는 소득의 양, 예술활동의 직업적 성질, 창작한 예술 작품의 질에 대한 평가, 예술 관련 전문단체의 가입 유무, 스스로의 예술인 의식 등(박영정, 2008)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이고 제도적인 잣대일 뿐 예술인이나 예술을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구분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예술인은 문화예술의 창작자로서의 경향이 강하다면 생활예술은 문화예술의 적극적인 향유자로서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음
  - 과거 문화예술의 향유가 전문예술인의 결과물을 소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향유자 스스로 창작의 영역에 까지 나아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두 영역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음

- 더욱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일반인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테크닉)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으며, 창작 · 창의의 영역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창작활동의 물리적 제한을 약화시키면서 전문과 생활의 영역의 경계 약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예를 들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영상예술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관점에서 '예술인'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법규와 지침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1) 원론적 규정

「예술활동 증명운영지침」에서는 예술인복지정책의 수요자인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2조 (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예술활동 증명의 운영지침에서 사업지원을 위한 예술인 인정기준은 공통 기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음

> **제11조 (예술 활동의 범위)** 예술 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 **제12조 (예술 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2)]

(2) 분야별 예술인 인정 기준

• 예술인활동증명 지침에서는 예술장르를 8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범주와 주요 직종을 규정하고 있음

– 미술과 사진, 건축이 비슷한 유형으로, 음악과 국악이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벤트성 행사나 생활문화동호회 활동과 구분하는 지점들이 강조되었고, 각 분야마다 기술지원은 세세하게 부연해 적시하고 있음

12)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함.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표 6-1. 분야별 예술인 인정 기준

문학	• 범주: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 • 대표 직종: 창작이나 번역 등 •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면 인정되고, 교양 · 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봄
미술 사진 건축	• 미술의 범주: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과 미술 비평 • 미술 대표 직종: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 • 사진: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 – 대표 직종: 창작, 비평, 기술지원, 기획 등 • 건축 대표 직종: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 –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음
음악 국악	• 음악, 국악의 범주: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 • 음악, 국악의 대표 직종: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 기획 등 –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음 –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음 –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봄 • 대중음악의 경우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경연대회,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과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도 원칙적으로 불인정
무용	• 범주: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과 무용 비평 • 대표 직종: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 기획 등 • 경연대회,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공연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연극	• 범주: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 · 청소년극, 교육연극 등과 연극 비평 • 대표 직종: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 기획 등이 있음 •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
영화	• 범주: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과 영화 비평 • 대표 직종: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 기획 등 • 인력회사를 통한 보조출연,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연예	• 범주: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과 대중문화비평 • 대표 직종: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 공연 기술지원, 기획 등 • 인력회사를 통한 보조출연, 경연대회,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만화	• 범주: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과 만화 비평 • 대표 직종: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 전시 기술지원, 기획 등이 있음

자료: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4장 제17조~24조 발췌 정리

2) 선결 과제

(1) 예술활동증명 등록률

- 앞서 기술한 것처럼 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갈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결국 예술활동증명 등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음
  - 실무적으로도 예술인복지재단의 각종 사업 지원이 '예술인 등록'에서 출발하므로, 대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예술인활동증명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전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등록 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와 연계하면 재산과 수입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가동되므로 개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등록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대전문화재단 등 공식적인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을 일정한 기준만큼 받았을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등록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대하여 지역 예술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매진하여야 함
  - 대전지역 청년예술인의 근로환경 및 복지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에 상대적으로 밝다고 여겨지는 청년예술인들조차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인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최덕진 외, 2019)[13)]

(2) 예술인 실태 조사

-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대전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매년 특정 주제별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면 보다 적실성 높은 예술인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 이 경우 대전시에서 2019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관광객실태조사를 참조하면서 매년 다른 주제별로 초점화 하는 것이 효과적. 가령 5년마다 종합적 성격의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사이에는 공통의 표본 집단을 구성하여 젠더, 계약, 건강, 정서, 경제 등을 정례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13) 대전지역 청년예술인 105명이 2019년 응답한 온라인 설문 결과로, 예술인 복지에 관해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없음이 대다수였고(있음 8%, 없음92%),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며(알고 있다 13%, 모른다 87%), 계약 체결 경험은 대다수가 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것(있음 20%, 없음 80%)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활동증명 등록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예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공유하고, 향후 점점 증가하게 될 전국의 예술인복지센터와 공통의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시도별로 현황을 공유하고 대조해보면 더욱 큰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3) 예술인의 거주 지역

• 덧붙여 정책대상 예술인의 거주지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함

- 예술인복지정책의 지향점은 결국 대전이라는 도시가 예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대내외적으로 인식되어 많은 예술인들을 대전에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대전의 예술활동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전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것까지 이르러야 할 것임. 따라서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인근의 예술가들과 대전에 머무는 타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정책을 체감하여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음

2. 추진체계

1) 대전예술인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

(1) 대전예술인복지센터의 설치 필요

- 지역예술인의 복지문제는 예술활동증명이 부진한 탓이 큰 이유이지만, 그동안 정책 집행 단위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 아래 그림에서처럼 정책수용자인 '예술인'은 생활안전망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은 '주민'으로서 복지재단을 통해 일반적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되거나, 협동조합 등 사업장에 속한 경우 직장 내의 복지 혜택에 의존하게 됨
  - 반면 문화재단에서는 예술창작 사업을 위주로 예술인을 지원하게 되고, 전문적인 예술인 복지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정보를 예술인에게 전달하거나 예술활동증명을 독려하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작 특화된 예술인 복지정책을 지역 예술인이 받기까지는 그만큼 번거로울 수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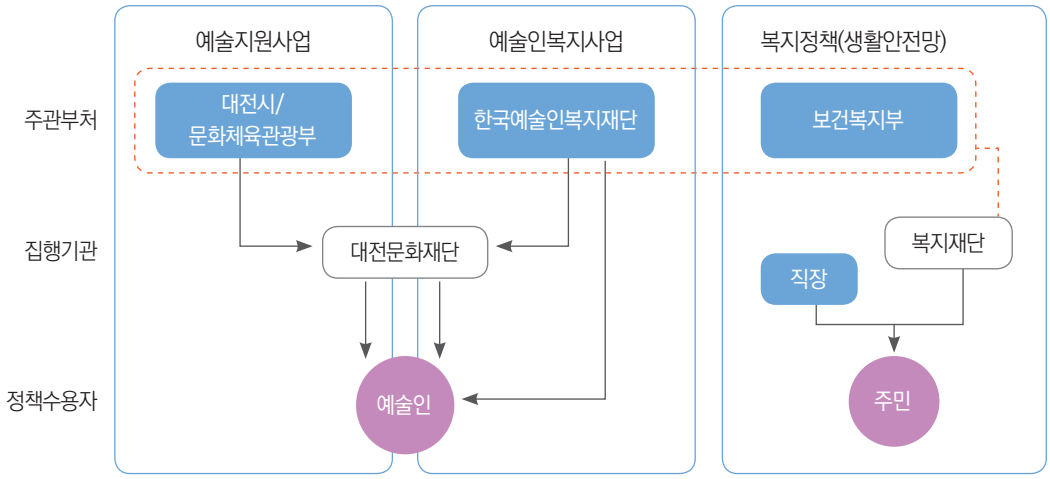

그림 6-1. 예술인복지사업의 정책 실행 단위

- 그러므로 정책의 안정성을 기하고,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예술인복지를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대전예술인복지센터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함
  - 대전예술인복지센터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현재 대부분의 문화예술 사업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수탁하여 집행하는 수동적 정책이 되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현실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예술인복지정책 전담 인력을 갖춘 대전예술인복지센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함

• 대전예술인복지센터의 조직 체계는 ①대전문화재단 내의 조직으로 하는 방안, ②대전문화재단의 조직에 포함되되 외부 독립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③문화재단과는 별도의 외부 조직으로서 독립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부산예술인복지센터는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지원팀에 속해있으며, 별도의 공간도 분리되어 있지 않음[14)]
-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문화사업팀 내에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를 별도조직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같은 건물이지만 분리 층으로 공간적 구별을 두고 있음[15)]
- 경남예술인복지센터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지만, 창원과 진주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전담인력을 파견하고 있음[16)]

• 예술인들의 접근성과 심리적 진입장벽, 사업 추진과 홍보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경남의 사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예산상의 제약이 크다면 전북의 사례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예술인들과 신체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사무실은 가급적 1층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전예술인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 제고

• 근본적으로 현재 수도권 중심의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 예술인복지 지원의 지역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특성화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대전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을 대전예술인복지센터로 이관 받고, 대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등록자 정보를 공유해야 함
- 또한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기획, 기획을 위한 연구, 정책 당사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특성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대전시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 대전예술인복지센터가 대전문화재단에서 수탁 운영할 경우, 대전문화재단 직원들의 업무 중복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 대전예술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역할과 지위를 보장하고, 예술인복지정책 전문 인력을 초빙해야 함

---

14)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지원팀장이 예술인복지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이외에 예술지원팀의 7명 내외의 직원이 예술인복지사업 업무를 겸하고 있음

15)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문화사업팀장이 예술인복지증진사업 총괄을 겸하고 있으며 이 외에 3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음

16) 경남예술인복지센터는 센터장과 4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됨

2)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체계 구축

(1) 예술인복지정책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에서는 2019년 11월, 지역의 문화재단들에게 아래 표와 같은 연계 협력 방안을 제안함

표 6-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연계 협력 제안 내용

예술인복지재단 사업부서	연계 협력 진행 사항	연계 협력 제안 사항	협력(제공) 가능 사항
정책기획팀	지역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예술인복지 지역별 토론회 개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사업 T/F	예술인 이자 지원 방안 사업 홍보협력(홈페이지 게시)	지역 순회 상담 및 접수	
예술인지원팀	지역별 연계 사업설명회 및 홍보		예술활동증명자 대상 홍보 요청시 협력 –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지역재단소식 메뉴와 해당 링크 신설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예술인을 위한 교육 공동개최 (저작권, 계약, 성폭력 예방 등)	찾아가는 예술인 신문고 운영 문화분야 성평등 조력자(성평등 인력) 운영	강사섭외 및 강사료 지원, 교육홍보 전문인력 지원, 계약서 검토, 계약 · 노무 상담 등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 워크숍 운영 등
사회보험팀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 운영		지역 거점 활동 공연예술단체 산재보험 가입 지원
창작준비 지원팀	(지역 예술인 참여확대) 지역문화재단 연계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거동불편 · 장애 예술인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신청접수 대행	지원 사업 소개 및 제도개선 안내포스터, 가이드 배포
예술가치 확산팀	예술인 전문역량 강화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路 사업 협력 검토	

• 전반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들을 지역에 알리는 설명회 성격이 많고, 예술활동증명자의 기초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 그래도 예술인 파견지원과 예술인 전문역량 강화사업이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 되어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대전의 예술복지 지원 조직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갖춰야 함

•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대전예술인복지정책의 목표별 전략과제들 중 특히 생활안전망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임

• 대전복지재단과는 신규 사업 발굴과 큰 틀에서의 사업방향에 대한 조율을 상시적으로 해 나가야 하며, 대전시교육청, 신용보증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과는 사업별로 실무적 협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동반자로서 관계를 높여야 함

- 또한 지역의 금융권과 의료기관 등 민간 기관이나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대전형 예술인 복지정책의 특성과 가치를 알리고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사업별 추진 주체

① 대전예술인복지센터

- 대전예술인복지센터는 대전 예술인 복지정책의 핵심수행기관으로 자체사업과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사업을 연계 수행하며, 대전시가 추진하게 될 각종 예술인 복지업무의 대행 및 중계 역할을 수행하며, 전반적인 행정적 소요들을 전담

② 대전시

- 대전시는 예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예산과 지자체 산하기관의 가용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역할을 맡고 있음. 우선적으로 정책 집행을 위한 예술인 복지예산의 확대와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유관기관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중계자 역할을 수행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각종 예술복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되는 사업들과 지역의 사업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 중앙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의 예술인이 수도권의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이 지닌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 적절한 역할 분담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동반자 사업'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지역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 협력 추진하고, 대전시는 여기에 더해 해당 사업이 종료되고 다음 사업을 수행하기까지의 공백기를 자체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성을 강화
  - '예술인 패스 제휴 확대 사업'의 경우,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휴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여건을 보완하는 개념

④ 유관기관

-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 '예술인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대전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의 지역의 공공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 주요한 협력 주체로서 역할 해야 함
  - '예술인 금융부담 경감'에는 예술인의 신용을 보증해줄 수 있는 역할로 대전신용보증재단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대출을 수행해 줄 지역의 금융기관이 파트너로 필요
  - '예술인 자녀 국공립유치원 입학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대전교육청과의 협조가 필요함

-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 과정에서 대전시는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약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표 6-3. 사업별 추진 주체

	핵심과제 / 단위사업	대전예술인 복지센터*	대전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유관기관
예술인 생활안전망 확보	1. 대전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예술인 동반자 사업	●	◎	◎	◎
	예술 동반 만남의 광장	●			
	2. 대전 예술인의 주거 안정				
	예술인 공공주택 임대 지원		●		◎
	예술인 분양권 인센티브제		●		◎
	3. 대전 예술인의 건강한 생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	◎	
	예술인 헬스 케어		●		
	4. 대전 예술인의 금융 부담 경감				
	예술인 SOS 생활 안정 지원금		●		◎
	예술인 창작 융자 지원		●		◎
	예술인 대출이자 지원		●		◎
	5. 대전 예술인의 자녀 안심 돌봄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	◎		
	국공립 유치원 입학 인센티브제		●		◎
	6. 대전형 예술인 기본소득제		●		
예술인 공동체 활성화	1. 대전 예술인 연결망 촉진				
	예술인 사랑방(공유공간) 운영 지원	●			
	예술인 모임 지원	●			
	예술인 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			
	2. 대전 예술인의 문화 복지 증대				
	버전-업 예술인 패스		●	◎	
	대전 예술인을 위한 복지연수시설 마련		●		◎
	3. 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지원				
	위계적 폭력 예방 · 대응 프로그램	●		◎	
	불공정 행위 고충처리 창구 운영	●		◎	
	4. 대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성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경력단절 예술인 경력이음 사업	●			
	신진 예술인 성장이음 사업	●			
	5. 예술인 공동체의 자구 노력 지원	●			
	6.「대전 예술인 권리 장전」 선포	●			

*현재는 대전문화재단이 예술인복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대전예술인복지센터 출범을 전제로 설정

** ● : 사업 책임 주체 / ◎ : 사업 협력 주체

(3) 대전예술인복지협의체 구축

• 현재의 대전문화예술정책토론광장을 개편하여 대전예술인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전의 예술인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폭넓은 논의테이블로 운영

•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연구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중요성 부여

• 대전의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 예술복지협의체로 발전

- 대전예술인복지센터는 협의체 내에서 단순한 간사역할에 그치지 않고, 민관협의체의 한 축으로 역할 수행
- 참여하는 민간 예술인 단체도 단순한 자문역할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 추진의 한 축이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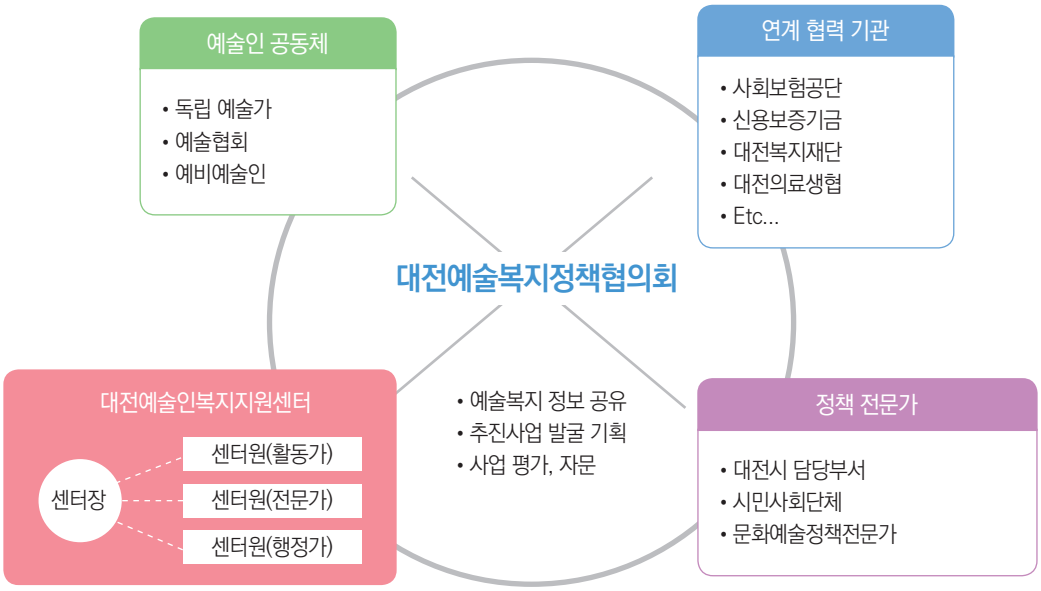

그림 6-2. 대전예술인복지협의체 구성 방안

2절

추진 단계와 투자계획

1. 사업별 추진 단계

(1) 예술인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단계

- '예술인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의 추진 단계는 크게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 예산 · 정책적 제반 수립과정(1단계)과 본격적인 사업 시행 및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시행 및 정착 과정(2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에서는 '예술인 일자리 창출'의 경우, 참여주체로서 파견사업을 원하는 기관 및 기업과 이들과 매칭할 예술인들의 수요를 파악을 진행. '예술인 주거 안정', '예술인 금융 부담 경감'의 경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및 LH토지주택공사, 대전신용보증재단 등의 유관기관 간의 부처협의와 제반 조건 수립이 추진되어야 함. '예술인 건강 생활'과 '예술인 자녀 안심 돌봄'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이 필요
  - 2단계에서는 제반수립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 단, '예술인 기본소득제'와 같이 중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지역의 예술인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식을 마련해야 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2) 예술인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예술복지 사업 추진 단계

- '예술인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예술인복지' 사업 역시 추진단계는 크게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 예산 · 정책적 제반수립과정(1단계)과 본격적인 사업 시행 및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시행 및 정착 과정(2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다만 물적토대의 구축이 핵심인 '생활 안전망' 구축사업과 달리 '예술인 공동체' 구축사업은 예술인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의지가 동반되어야 함. 따라서 사업들은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

- 1단계에서는 '예술인 연결망 촉진'과 '예술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예술활동 이음새' 사업의 경우, 참여 주체가 될 예술인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는 한편, 지역의 가용가능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물색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위계적 폭력 예방 ·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불공정 고충 처리 창구 구축과 같은 제반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
- 2단계에서는 '생활안전망 확보' 과제와 마찬가지로 제반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보완과 예술인들의 의견과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함. 공동체 사업의 경우, 자발적인 공동체의 형성이 일정 수준에 위치하면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공동체 활성화'와 '대전예술인 권리 장전 선포'는 단순히 물적 지원을 넘어선 예술인의 주체적인 역량과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예술인 내부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앞선 사업들의 성과와 함께 연결하여 추진

표 6-4. 사업별 · 단계별 추진전략

	핵심과제		2020~2021	2022~2023	2024 이후
		단위사업			
예술인 생활안전망 확보	1. 대전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예술인 동반자 사업	참여주체발굴	사업시행	사업정착
		예술 동반 만남의 광장	참여주체발굴	사업시행	사업정착
	2. 대전 예술인의 주거 안정				
		예술인 공공주택 임대 지원	부처협의	사업시행	사업정착
		예술인 분양권 인센티브제	부처협의	사업시행	사업정착
	3. 대전 예술인의 건강한 생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수요조사	사업시행	사업정착
		예술인 의료비 지원	수요조사	사업시행	사업정착
		예술인 헬스 케어	수요조사	사업시행	사업정착
	4. 대전 예술인의 금융 부담 경감				
		예술인 SOS 생활 안정 지원금	부처협의	사업시행	사업정착
		예술인 창작 융자 지원	부처협의	사업시행	사업정착
		예술인 대출이자 지원	부처협의	사업시행	사업정착
	5. 대전 예술인의 자녀 안심 돌봄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수요조사	사업시행	사업정착
		국공립 유치원 입학 인센티브제	부처협의	사업시행	사업정착
	6. 대전형 예술인 기본소득제		여론조성	연구조사	시범사업

	핵심과제		2020~2021	2022~2023	2024 이후
		단위사업			
예술인 공동체 활성화	1. 대전 예술인 연결망 촉진				
		예술인 사랑방(공유공간) 운영 지원	수요조사	사업시행	사업정착
		예술인 모임 지원	수요조사	사업시행	사업정착
		예술인 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수요조사	사업시행	사업정착
	2. 대전 예술인의 문화 복지 증대				
		버전-업 예술인 패스	수요조사	사업시행	사업정착
		대전 예술인을 위한 복지연수시설 마련	부처협의	사업시행	사업정착
	3. 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지원				
		위계적 폭력 예방 · 대응 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	사업시행	사업정착
		불공정 행위 고충처리 창구 운영	체계구축	사업시행	사업정착
	4. 대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성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수요조사	사업시행	사업정착
		경력단절 예술인 경력이음 사업	수요조사	사업시행	사업정착
		신진 예술인 성장이음 사업	프로그램개발	사업시행	사업정착
	5. 예술인 공동체의 자구 노력 지원		여론조성	사업시행	사업정착
	6.「대전 예술인 권리 장전」선포		여론조성	사업시행	사업정착

2. 투자 계획

(1) 재정 확보 방안

- 대전예술인복지정책의 제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국비, 지방비(시비, 구비), 민간투자로 나누어 바라볼 수 있는데, 대전예술인복지센터에서 추진할 사업은 국비로만 운영되거나 국비와 시비의 매칭 사업이 많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복지사업의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예술인복지센터 운영을 비롯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관계설정을 전망해 볼 때 지금부터 시비를 증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술인복지정책의 특성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력 사업을 제외하면 국비 유치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 지역문화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 활용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대전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운영을 통해 예술인복지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함
  - 문예진흥기금의 지자체 자율편성으로 인해 문화예술 부문 예산이 오히려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복지 사업비를 고정적으로 할당하여 전체 문화예술 예산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도 필요

- 대전시 문화부문 예산 확대를 통한 재원 확충
  - 민선 7기에서는 '7030 대전, 문화융성도시 대전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전시 예산 내 2.1%를 차지하는 문화예술체육 예산을 임기 내 5%까지 대폭 늘리기로 공약함
  - 따라서 늘어나는 문화예술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예술인복지 예산에 할당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스포츠구단 '대전시티즌'의 운영비가 절감되는 부분도 활용할 여지가 있음

(2) 사업별 예상 소요 예산

- 2019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의 연도별 예상 투자비용은 다음과 같음(국비와 지방비 합산)

표 6-5. 사업별 예상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핵심과제* / 단위사업	2020	2021	2022	2023	2024	소계
예술인 생활안전망 확보	1. 대전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예술인 동반자 사업	300	350	400	450	500	2,000
	예술 동반 만남의 광장**	-	-	-	-	-	-
	2. 대전 예술인의 주거 안정						
	예술인 공공주택 임대 지원	-	-	-	-	-	-
	예술인 분양권 인센티브제	-	-	-	-	-	-
	3. 대전 예술인의 건강한 생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200	200	200	200	800
	예술인 의료비 지원	-	50	100	100	100	350
	예술인 헬스 케어	-	200	250	300	350	1,100
	4. 대전 예술인의 금융 부담 경감						
	예술인 SOS 생활 안정 지원금	-	300	300	300	300	***300
	예술인 창작 융자 지원	-	-	-	-	--	
	예술인 대출이자 지원	-	100	150	200	250	700
	5. 대전 예술인의 자녀 안심 돌봄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	100	100	150	150	500
	국공립 유치원 입학 인센티브제	-	-	-	-	-	
	6. 대전형 예술인 기본소득제	-	-	-	300	600	900
예술인 공동체 활성화	1. 대전 예술인 연결망 촉진						
	예술인 사랑방(공유공간) 운영 지원	-	200	50	50	50	350
	예술인 모임 지원	-	10	15	20	25	70
	예술인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	50	50	50	50	200
	2. 대전 예술인의 문화 복지 증대						
	버전-업 예술인 패스	-	250	300	350	400	1,300
	대전 예술인을 위한 복지연수시설 마련	-	50	60	70	80	260
	3. 평등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지원						
	위계적 폭력 예방 · 대응 프로그램	-	25	25	25	25	100
	불공정 행위 고충처리 창구 운영	-	25	25	25	25	100
	4. 대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성 지원						0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300	300	300	300	1,200
	경력단절 예술인 경력이음 사업	-	50	50	50	50	200
	신진 예술인 성장이음 사업	-	100	110	120	130	460
	5. 예술인 공동체의 자구 노력 지원	-	-	10	15	20	45
	6. 「대전 예술인 권리 장전」 선포	-	10	-	-	-	10
합계		300	2,370	2,495	5,098	5,629	10,945

*대전예술인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별도. **동반자 사업에 포함 ***상환예정 대출금 원금

부록

예술인 복지 관련 법규

예술인 복지관련 법규

□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시행 2020.02.07.]

(제정) 2013-12-31 조례 제 4264호

(일부개정) 2020-02-07 조례 제 5426호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의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제5조(자문 · 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

례」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 ·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264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26호, 2020.2.7.〉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의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2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 · 제작 ·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시행일 : 2020.6.4.] 제2조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

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0. 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 · 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 12. 30., 2018. 10. 1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9. 12. 3.〉]

[시행일 : 2020.6.4.] 제4조의2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 · 갱신 ·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 ·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3.]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9. 12. 3.〉]

[시행일 : 2020.6.4.] 제4조의3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 · 제작 ·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 지연 · 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 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3. 12. 30.]

[제목개정 2016. 2. 3.]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2019. 12. 3.〉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 지연 · 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 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1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3. 12. 30.]

[제목개정 2016. 2. 3.]

[시행일 : 2020.6.4.] 제6조의2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본조신설 2016. 2. 3.]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 ·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 · 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 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 · 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 · 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0.〉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이사장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30.〉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 · 주민등록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소득 · 재산 · 출입국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 ·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 · 관리 ·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 ·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6장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 ·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본조신설 2018. 4. 1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 4. 17.〉]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2. 3.〉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 4. 17.〉]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2. 3., 2019. 12. 3.〉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9. 12. 3.〉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 4. 17.〉]

[시행일 : 2020.6.4.] 제18조

부칙 〈제15821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 정 2014.12.1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2장 신청

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 · 단

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

제4조(협력 협 · 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 · 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 ·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 · 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 · 단체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 · 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제5조(협력 협 · 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 · 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방법) 예술 활동 증명의 심의방법은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행정심의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다.
2.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제1호에 따라 부합된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제9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복합 심의 등)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인정기준

제11조(예술 활동의 범위) 예술 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예술 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최근'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인 미술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일자가 2014년 7월 1일이라면 '최근 5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③ '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④ '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스태프 중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제17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 · 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 · 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 · 계간 · 반연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 · 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 · 계간 · 반연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①'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 · 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 · 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5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 활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6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제27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해당 분야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확인을 근거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 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불공정행위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장 효력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5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예술진흥원(2019).「2019 경남예술인 실태조사」

금성희(2018). "지역문화재단 책임성 분석".「GRI 연구논총」. 20(2): 211-236

김경우 외.『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4

김수갑(2013),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유럽헌법연구」, 14: 99-122

김지영.「국내 예술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태완(2016),「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김태완 · 정희선(2012), "예술인복지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보건복지포럼」, 1월호: 66-75

남경호(2018),「역대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 연구: 전통예술분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문화체육관광부(2012).「예술인 범위기준 및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7).「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2018).「새 예술정책(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2019).「2018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9).「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부산문화재단(2018),「예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인 실태 및 예술인복지 만족도 조사」

서우석 외(2018).「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우석 · 이경원(2019).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정책적 이해: 예술인 복지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중심으로".「문화정책논총」33(1): 213-241

오경미(2018). "예술노동 논쟁 재고찰: 철학적 개념 논쟁을 넘어 현장으로"「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48: 29-51

이동연(2013). "예술과 노동 사이: '예술인복지법'을 넘어선 예술인 복지"「시민과세계」22: 262-274

이동연(2015), 예술노동의 권리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예술행동, 문화과학 84, 62-104

인천연구원(2018).「인천 예술인 복지플랜: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최덕진 외(2019).「2019 청년정책연구 공모사업: 청년 예술인의 근로환경 및 복지 이해도 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최보연 · 안채린(2017). "창의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예술경

영연구」, 42, 65-10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예술로 아름다운 세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8).「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a).「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b).「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 방안 연구」

황승흠 (2017).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法學論叢」, 24(2): 3-36

Abbing, Hans(2002), Why Are Artist Poor?: the exceptional economy of the arts. Amsterdam University Press.

ERICarts, Bonn S. C. & Andreas J. W. (2006), The Status of Artists in Europe. European Parliament

MERJA HEIKKINEN(2003), The Nordic Model for Supporting Artists, the Arts Council of Finland

UNESCO(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UNESCO Legal Instruments.

경남문화예술진흥원(http://www.gcaf.or.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대전문화재단(https://dcaf.or.kr/)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

부산문화재단(http://www.bscf.or.kr/)

서울문화재단(https://www.sfac.or.kr/)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http://www.jbaw.or.kr/)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http://www.gokam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s://www.arko.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 : 한상헌(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윤설민(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양성욱(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찬우(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설문 조사원 : 김진하, 송상우, 안준형, 안주을, 유채하, 이경진

자료 조사원 : 김동희, 김민영, 윤서람, 임유진, 최인호

전문가 자문 :

김영호(새로운대전위원회 문화분과위원장), 김원식(대전사진작가협회장)

노덕일(대전 중구문화원장), 박홍순(대전민예총 사무처장)

복영한(대전연극협회장), 서용석(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무국장)

오세섭(문화정책 독립연구자), 이인복(대전원도심문화예술IN행동 사무국장)

이혜영(문화정책 독립연구자), 이희성(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정선기(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정관(대전연예예술인협회 대표)

최덕진(비오케이 아트센터 실장)